

E 02-2011-04 | 2012.1 |

제13권 제4호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에서 북한의 최근 농업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1, 4, 7, 10월)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2-3299-4359 전송 02-968-7340

- 내용 문의:

김영훈	kyhoon@krei.re.kr	02-3299-4367
권태진	kwontj@krei.re.kr	02-3299-4255
남민지	mj0801@krei.re.kr	02-3299-4359

목 차

1 포커스

- ▶ 2012년 북한의 농업·식량 상황 3

2 2011년 특별기획: 북한법 시리즈

- ▶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 해설 19

3 북한농업 동향

- ▶ 북한매체 보도 동향 79
- ▶ 국내매체 보도 동향 102

4 농업교류협력 동향

-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41
 -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141
 - 2. 대북지원 동향 154
 - 3.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158
-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64
 -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64
 - 2.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기구 동향 175
 - 3. 북중 교역 동향 182

5 북한의 농업관련연구

- ▶ 공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방도 191
- ▶ 사회주의농촌에서 지대들사이의 차이를 해결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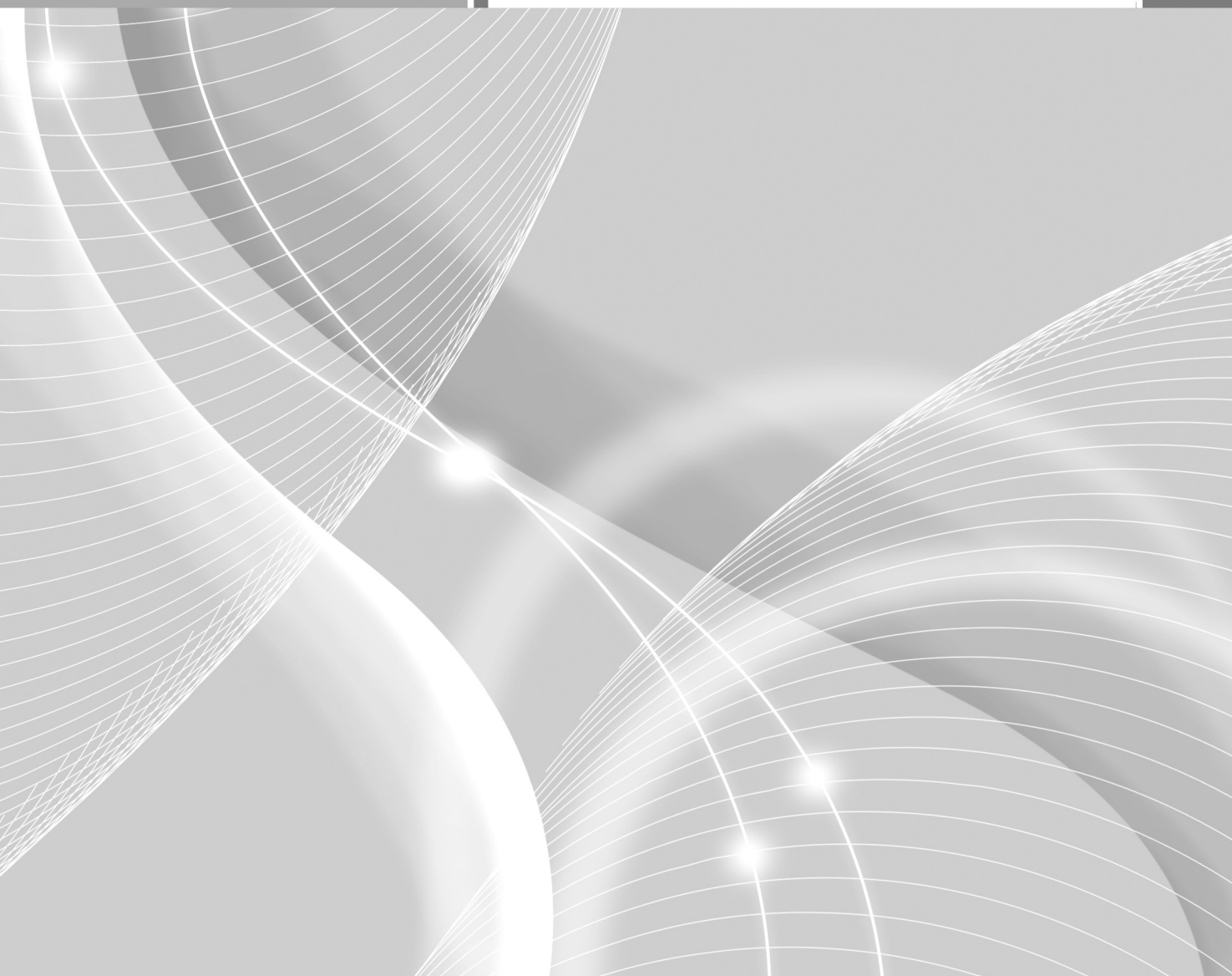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1

포커스



2012년 북한의 농업·식량 상황

김영훈¹⁾

1. 김정일 사망 전후 북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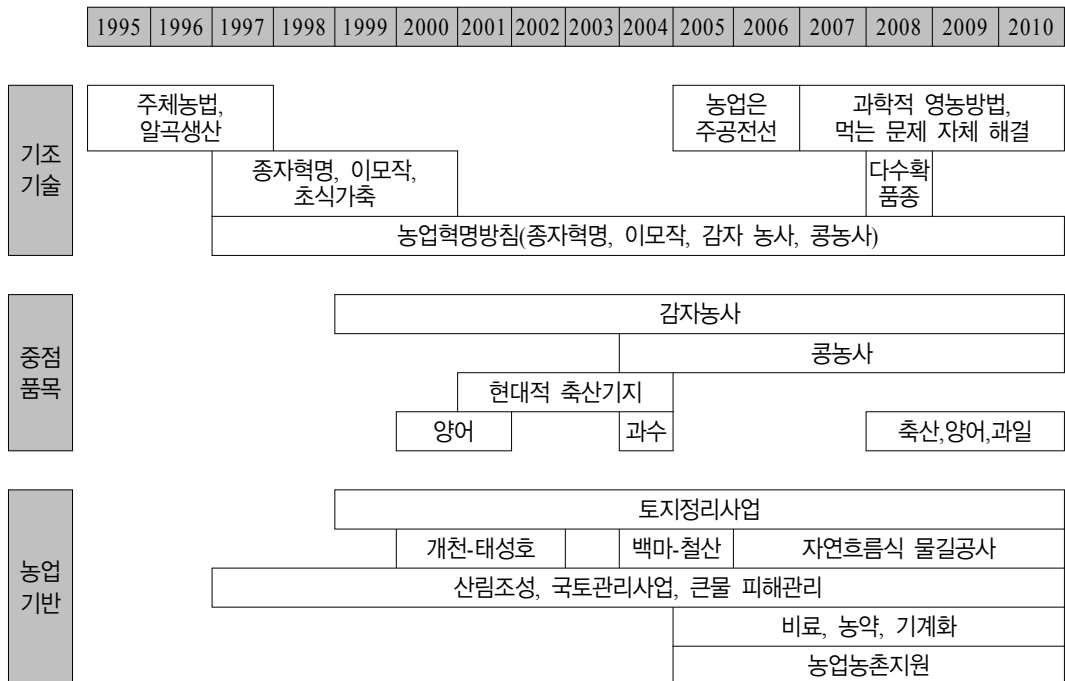
- 김정일 사망 후 북한 내 동향과 주변국들의 반응을 고려할 때, 안정된 상황을 보이고 있음.
 - 사망에서 사망 발표까지 특이 동향 없었으며, 사망 발표 후에도 정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사망 발표 후 주변국들도 안정을 강력히 희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미국도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권력 교체를 원한다는 메시지 표명함.
- 북미 접촉과 한반도 해빙 가능성 높아짐.
 - 김정일 사망 전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잠정 중단과 대북 식량지원(24만 톤) 재개에 관한 협상 성과를 논평하며 곧이어 개최될 베이징 회담(22일)에서의 타결소식을 미리 예고했으며, 김정일 사망 후에도 미국은 조기협상과 타결 의지를 강조한 바 있음.
 - 이 상황은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의 해빙을 점치게 할 수 있을 만큼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김정일 사망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환경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요동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 김정일과 그 후견 세력의 국내 정치 안정 회구와 주변국들의 한반도 안정 회구
- 다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식량부족 상황에 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김정일 사망과 맞물려 어려운 경제상황이 증폭될 우려 있음.
 -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식량부족 문제는 특히 중요한 부분임.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 2000년대 북한 농업 실태와 문제

- 농업에 가용자원을 우선 배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농업부문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식량부족 현상이 15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
 - 비료, 농약, 종자, 비닐, 농기계, 에너지 등 농업생산자재 부족
(가장 중요한 농자재인 화학비료도 소요량의 30% 이하 조달)
 - 농업생산기반과 산림 황폐화로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취약
(전체 산지의 32% 황폐화).
 - 1960년대의 후진적 농업구조가 그대로 유지
(2008년 농가인구비중 북한은 36.8%, 한국은 6.6%)
- 북한은 당면한 농업문제에 대응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농정기조를 농업지도이념 관철에서 실천적 농정시책 추진으로 전환
 - 농업생산부문: 종자혁명, 두벌농사, 감자농사혁명 강조
 - 기반정비부문: 토지정리사업과 대규모 물길공사 추진
 - 축산부문: 곡물 부족을 반영하여 소가축과 초식가축 사육 강조

그림 1. 식량난 이후 북한의 주요 농정시책



- 농정시책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과 외부자본 조달을 추진했으나 실패함.
 - 경제와 농업 회생을 위해 북한 내부의 전면적인 제도개혁과 국제사회의 Big-Push 지원이 필요
 -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

3. 2000년대 대북 지원과 농업협력

- 1995년부터 우리나라는 북한에 식량과 비료를 지원함.
 - 식량지원: 무상지원과 차관지원 이원적으로 추진(총 330만 톤)
 - 비료지원: 1999년부터 인도적 차원의 무상지원으로 추진(총 250만 톤)
 - 식량 및 비료지원은 2000년대 북한의 식량사정을 호전시킨 주된 배경
- 2000년대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시작하면서 NGO와 지자체의 대북 농업지원 사업이 활성화됨.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드비전 등 20여 개 단체
 - 경기도, 강원도, 경남, 전남, 제주도 등이 민간지원단체와 연계하여 추진
 - 북한의 해당 농촌사회에 인도적 지원 효과와 함께 새로운 농업생산기술 및 농자재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이 증대되는 효과도 제공
-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농업부문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합의한 바 있음.
 - 2005년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 5개 농업협력사업 추진을 합의
 - 2007년 12월 남북경협공동위원회 농수산분과위에서 2005년의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사항을 참고하여 농업 및 수산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

표 1. 남북농업협력에 대한 당국 간 합의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남북농업협력위원회 (2005년)	협동농장 협력, 농업과학기술 및 인력 교류 종자부문 협력, 산림자원 보호 협력, 축산·과수·채소·잡곡·특용작물 분야 협력 추진
남북경협공동위원회 농수산분과위 (2007년)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 지원 검역 관련 협력 과수,채소,잡곡,축산농업과학기술 분야 협력

- 2000년대 대북지원과 농업지원의 문제 : 전략적 접근 미흡
 - 식량 및 비료지원: 프로그램이 아닌 상황논리에 따른 접근
 - 민간과 지자체의 농업협력 지원: 심사, 평가, 피드백 체계 미흡
 - 당국 간 농업협력: 북한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협력사업 추진 합의, 남북 양측의 적극적 추진 의지 미약

4. 북한의 식량수급 사정

4.1. 2000년대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 변화

- 2000년대 들어 2007년까지 최소소요량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수급균형을 이루고 있었음.
 - 비료지원과 양호한 기상조건으로 북한 국내 식량생산 호조
 - 한국 및 국제사회의 대규모 식량지원
(2000~07년 기간 총 776만 톤, 연평균 97만 톤 지원, WFP통계)
- 국내 생산과 외부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2007년 이후 식량부족 현상이 확대되고 있음.
 - 국내 생산량은 2005년까지 454만 톤 수준까지 증가했으나 2007년 이후 감소
 -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은 1995~2007년까지 총 1,140만 톤, 연평균 87만 여 톤을 지원했으며, 특히 2000~05년 기간에는 총 665만 톤, 연평균 110여만 톤을 집중적으로 지원했으나, 2008년부터 식량지원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중단됨.
 - 2007년까지는 최소소요량 기준으로 부족량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2008년부터 연간 70만 톤 이상으로 확대

표 2. 북한의 식량수급 추이(2005~11년)

단위: 만 톤

구 분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생산량 ¹⁾	431	454	448	401	431	411	(425)
도입량 ²⁾	115	35	75	27	(20)	(32)	(20)
최소소요량 ³⁾	515	518	521	523	526	529	531
부족량	△31	29	2	95	(75)	(86)	(86)

주 1) 2009/10년까지는 농촌진흥청 자료, 2009/10년은 FAO/WFP 자료

2) 2007/08년까지는 WFP 자료, 2008/09~11년은 상업적수입(중국)과 국제기구지원분

3) FAO/WFP의 1인당 소요량을 북한인구(통계청)에 적용한 수치

4) (괄호)는 불확정 수치임.

자료 : 농촌진흥청, FAO/WFP, 통계청

4.2. 2011/12년의 식량수급 전망

가. 작황 결정 요인

□ 기상여건

- 작년 말과 올해 초 북한의 겨울 기온은 예년에 비해 낮았으며 저온 현상이 봄까지 지속되었음.
 -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 1.2미터까지 토양이 동결
 -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하의 온도가 40일 이상 지속
 - 파종한 밀과 보리가 동결하여 폐사한 지역에서 재식(再植)도 늦어졌으며 작물의 생장은 봄가뭄에 영향을 받음.
- 여름의 기상 여건도 좋지 않았음.
 - 6월말부터 두 달 동안 짙은 구름과 강우가 계속되어 일조량이 감소되었으며, 이 기간의 집중호우는 벼와 옥수수 작황에 영향을 끼침.
 - 또한 태풍 피해는 곡창지대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남. 2011년 7월 강수량은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가 평년에 비해 특히 많았음.

□ 투입요소 조달과 판매

- 종자
 -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감자와 맥류의 종자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씨감자는 보급 과정에서 품질이 많이 저하되고 있음. 채종포나 협동농장의 감자 보관 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임.
- 비료 및 농약
 - 질소비료의 투입은 2011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2010년 대비 55% 증가).
 - 그러나 공급된 비료의 대부분은 질소비료임. 인산 및 칼리비료와 석회를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하나 비료 공급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비료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종별 공급비율이 열악해져 질소비료의 증투 효과는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표 3. 북한의 비료 조달 상황(2008~2011년)

단위: 실중량 톤

비중	연도	국내생산	수입	지원	전년이월	사용량	재고량
N (유안기준)	2011	189,335	548,108		1,500	735,943	3,000
	2010	174,350	274,580	24,670	3,000	475,100	1,500
	2009	170,090	266,817		900	434,807	3,000
	2008	256,800	180,500	657	1,400	438,457	900
P	2011	5,545				5,545	
	2010	11,402				11,402	
	2009	2,776				2,776	
	2008	7,425				7,425	
K	2011	4,477				4,477	
	2010	12,314				12,314	
	2009	8,400				8,400	
	2008	10,415				10,415	
합계 (N,P,K)	2011	199,357				745,965	
	2010	198,066				498,816	
	2009	181,266				445,983	
	2008	274,640				456,297	

자료 : FAO/WFP, 2011.11

○ 농약의 공급

-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 공급은 예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크게 부족함.
- 농약 부족으로 농업노동력이 병충해 방제와 제초 작업에 많이 투입되고 있음.
- 살균제 부족으로 씨감자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감자 작황도 낮아짐.

○ 기계동력 및 에너지 부족

- 경유 공급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트랙터의 가동율이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기계동력의 절대적인 부족 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이모작이나 간작, 수확 후 처리 등에서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 관개 상황

- 주요 관개수로 개설 공사로 자연흐름식 관개체계의 비중이 증가함.
- 이와 함께 최근 관개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다고 전해짐. 저수지 수위는 3년 계속

목표 수위를 웃돌고 있으며 2011년에는 최근 3년 중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나. 주요 식량작물의 작황

- 도정 전 벼 수량은 ha당 4.34 톤으로 작년 4.26 톤에 비해 약 2% 상승하여 248만 톤(쌀 161만 톤)을 기록함.
- 벼 생산량 증가는 주로 비료 투입의 증가, 관개와 농업동력 상황의 호전 등에 기인함.
- 다만, 춥고 건조한 봄 날씨, 황해남도를 비롯한 주요 벼농사 지역의 여름철 집중호우, 일조량 부족, 몇 차례의 태풍 등의 기후요인으로 인해 투입 증가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음.
- 옥수수의 재배 여건 역시 벼와 유사했으며, 평균 수량은 ha당 약 3.7톤으로 예년의 3.3톤에 비해 10% 정도 상승했음.
- 높아진 수량의 결과 올해 옥수수 생산량은 186만 톤으로 작년에 비해 약 11% 증가함.

표 4. 북한의 식량 생산량 비교(2011/12년과 2010/11년)¹⁾

구 분		2011/12		2010/11		증가율(%)	
		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농 장	주 수확기	1,268	4,750	1,224	4,440	3.6	7.0
	벼	571	2,477	570	2,426	0.2	2.1
	옥수수	503	1,857	503	1,683	0.0	10.4
	기타 곡물	29	49	13	19	120	157
	감자	34	121	48	158	-29.2	-23.2
	대두	131	245	90	154	45.7	59.1
	조기 수확기	195	500	187	380	4.3	31.6
	밀과 보리 ²⁾	90	182	85	119	5.9	52.9
	감자	105	318	102	261	2.9	21.9
	농장 소계	1,463	5,250	1,411	4,820	3.7	8.9
부업지	경사지	300	150	300	150	-	-
	텃 밭	25	75	25	75	-	-
	부업지 소계	325	225	325	225	-	-
총 계		1,788	5,475	1,736	5,045	3.0	8.5

주 1) 벼는 도정 전 수확량, 감자와 대두는 곡물환산치로 전환

2) 주로 함경남북도 및 양강도에서 재배된 소량 주작물인 밀과 보리 포함.

자료: 북한 농업성 및 FAO/WFP 실사단.

- 곡물로 환산한 2011년 주수확기의 감자 생산량은 약 12만2천 톤으로 작년에 비해 29% 감소했으며, 2012년 조기 수확은 씨감자 부족으로 전망이 어두운 실정임.
 - 국제기구 조사단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씨감자 공급은 수요의 60% 이하에 불과함.
- 겨울밀에 관한 수치자료는 없지만 2010년에 비해 종자가 부족한 실정임.
 - 2011년 겨울밀 파종도 목표치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봄보리 종자를 수입하여 파종해야 함.

다. 2011/12년 식량수급 추정(FAO/WFP)

- 생산량
 - 2010년에 비해 농용에너지, 비료 등 농자재의 공급이 증가
 - 2011년 7, 8월 일조량 감소와 곡창지대 홍수 피해 발생
 - 2012년 봄작물(밀, 보리, 감자) 종자 부족
- 소요량
 - 인구: 2,457만 명
 - 식용 곡물(가공용 포함): 1인당 174kg(1,640Kcal)
 - 종자용(243,000 톤), 사료용(75,000 톤)
 - 수확 후 손실: 15%(쌀, 옥수수, 감자), 10%(밀,보리,기타), 5%(콩)
 - 도정율: 쌀에만 해당(65%)
- 도입량
 - 상업적 수입 예정 물량 : 325,000 톤(수매양정성)
- 2011/12년 식량수급 물량 전망
 - 2011/12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66만 톤, 곡물 소요량은 540만 톤으로 부족량은 74만 톤으로 추정
 - 북한의 수매양정성은 2012년에 32만5천 톤을 상업적으로 수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다면 올해 식량부족량은 41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

표 5. 북한의 식량수급 추정(2011/12년)

단위: 천 톤

	쌀 ¹⁾	옥수수	밀/보리	잡곡	감자 ¹⁾	콩 ²⁾	총 계
국내생산(정곡)	1,610	2,032	182	49	489	294	4,657
주작물	1,610	1,857	-	49	121	294	3,932
이모작		-	182		318		500
경사지		150			-		150
텃밭		25			50		75
총소요량	1,935	2,185	390	104	502	279	5,396
식용	1,573	1,696	344	74	344	246	4,276
사료용	-	75	-	-	-	-	75
종자용 ²⁾	56	65	13	23	78	8	243
손실	242	279	18	5	66	15	624
재고조정	66	71	14	3	14	10	178
수입 요구량	325	153	208	56	13	-16	739
수입 예상량							325
순부족 예상량							414

주 1) 벼의 정곡환산률 65% , 감자의 곡물전환률 25%, 콩의 곡물환산률 120% 각각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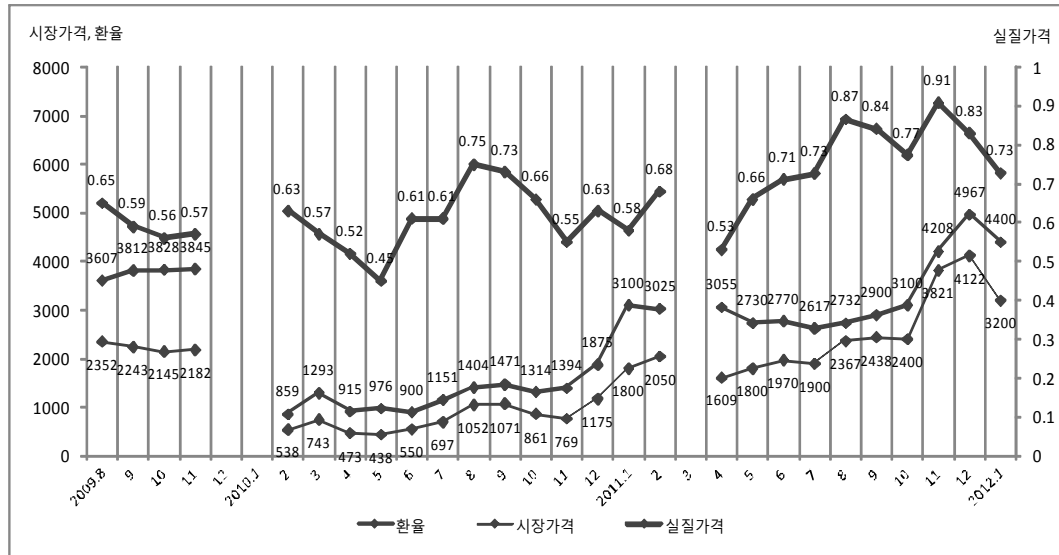
2) 경사지와 텃밭의 종자소요량 15,000톤 계상

자료: FAO/WFP, 2011.11.

라. 기타 요소를 종합한 수급 전망

- 북한의 쌀 가격 변동을 보면 10월 말 주곡 수확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크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 1월에는 다시 급격히 하락하여 예년 동기간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쌀의 실질가격(달러/kg, 평양)은 계절변동을 제외하면 2009년 11월 화폐개혁 이전부터 2011년 4월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했음.
 - 2011년 5월부터 예년에 비해 실질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주곡 수확에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기현상을 보였음(평양의 11월 실질 쌀가격 0.9달러/kg).
 - 2012년 1월 들어 식량가격은 다시 급격하게 하락해 평양에서 쌀이 kg당 0.7달러에 거래(그림2)
- 국제사회(중국,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현실화된다면 예년에 비해 식량 공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은 북한에 24만 톤 상당의 식량지원을 하고, 북한은 우리농농축프로그램(UEP)을 잠정 중단하기로 북미 간에 협의(2011.12.18)

그림 2. 평양의 쌀 가격 추이 (2009.8 - 2012.1)



주: 환율과 시장가격은 관찰기간에 의해 가중 평균한 월평균값임.

자료: 데일리NK, <http://www.dailynk.com>

- 중국은 식량 50만 톤과 원유 25만 톤의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연합뉴스).
- 최근(2012년 1월) 북한의 시장 식량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식량부족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은 낮음.
- 국내 공급물량의 증가(생산증가, 2012년을 위한 식량예비 가능성 등)
-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 북미 접촉의 잠정합의 실현, 김정일 사후 국제사회의 북한 안정 화구에 따른 지원 확대 가능성
- 김정일 사후 통제를 강화할 경우 국가의 양정 기능의 회복 가능성

5. 최근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과 국제기구의 권고

5.1. 인도적 상황

-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배급계획량은 1인당 하루 평균 380g(1,314kcal)이지만 식량이 부족해지는 5~9월에는 200g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WFP).

표 6. 2011/12년 취약계층 식량지원 필요량

취약계층	인 구 (천명)	식량지원 필요량 (톤)
5세 미만 어린이 ¹⁾	965	31,500
임산부 및 수유부	581	43,500
유치원 (5-6세)	395	21,000
국민학생 (7-10세)	856	13,000
독거 노인 ²⁾	178	9,600
고아원 어린이	12	700
소아과 환자	13	700
합 계	3,000	120,000

주 1) 6개월 미만 유아는 제외

2) 노인 인구의 약 10%

자료: WFP/FAO, 2011. 11.

- 그 경우 취약한 지역과 취약 계층부터 식량부족 상황에 노출될 것으로 것으로 전망됨.
 - 취약 지역 : 북부와 북동부지역
 - 취약 계층 :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 등 약 300만 명
- ※ 2011년 600만 명에 비해 개선된 상황을 전망

5.2. 국제기구(FAO, WFP)의 권고

- 식량 및 영양지원에 관한 권고
 - 300만 명에 달하는 취약 계층에게 12만 톤의 식량을 지원할 필요.
 - 취약 지역의 취약 계층을 우선 지원한 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
- 2012년 농업관리에 관한 권고
 - 2010년의 북한 농업생산 조사와 2011년 보완조사의 권고사항은 여전히 유효함(씨감자 저장시설 개선, 곡물 건조 체계의 개선, 콩 생산 증대, 양식과 텃밭에 대한 지원, 유통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확 후 손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농업생산 향상을 위한 농자재 공급과 양질의 종자 확보 등).
 - 봄작물 생산 증대를 위한 종자의 확보, 비닐과 농약의 공급 증대, 환경농업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계 공급 확대

6. 관련 정책 준비 방향

6.1. 식량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안정화

- 대북 지원의 환경이 조성되고 북한에 식량난이 발생하면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이 경우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북 식량지원 프로그램의 준비가 필요함.
 - 인도적 식량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재해나 질병 발생 지역에 대한 긴급지원
 - 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식량지원: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노동력 동원에 소요되는 식량을 지원하는 방식
-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프로그램 지원)
 - 영유아, 아동, 여성, 노인, 환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구호지원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 지원 물량을 국내 쌀 수요의 한 부분으로 계획하여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면, 대북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내 쌀 관리도 안정화 할 수 있음.
 - 북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에 국내 민간지원단체를 활용할 수 있음.
- 긴급구호지원
 - 긴급구호를 요하는 상황은 대개 대규모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됨.
 - 긴급구호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지원요청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정부와 대한적십자사 사이에 이미 갖추어져 있으며, 대한적십자사와 북한의 적십자 간에도 협력 경험이 있음.
 - 이 경험을 토대로 대북 긴급구호지원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개발협력 차원의 식량지원 프로그램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개발지원 수원국에게 각종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발지원을 감당할 수 있는 북한의 준비상태는 미흡함.
 - 개발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 간 정치경제적 장애 제거가 우선 필요함.
 -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북한의 수용능력이 향상되면 개발원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6.2. 지원과 모니터링

-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지원식량의 분배투명성 확보임. 지원 물자 분배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님.
 - 당초 목표한 수혜자에게 지원 물자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 현장의 식량수급 상황과 취약계층에 관한 자료를 수집
 - 물자의 지원 효과를 평가해 물자지원 지속 여부와 물자지원 방법 전환 여부 등을 판단
- 지원물자 분배 상황 현장조사와 관련해 복측과 협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
 - 지원물자 분배상황 조사 방법과 범위
 -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당국의 보장 수준
- 기타 대북 식량지원 시 요구해야 할 사항
 - 신뢰성 있는 식량수급상황 자료의 제공
 - 재해 상황 및 취약계층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자료 제공
 - 분배투명성 제고 방안 제시
 - 국제규범에 입각한 공식적 요청
- 기타 준비 사항
 - 식량지원 프로그램을 규정한 내규
 - 수원국을 위한 안내서 및 지원사업 실무매뉴얼

참고자료

FAO/WFP,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5 Nov. 2011.

FAO/WFP/UNICEF,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4 Mar. 2011.

FAO, 'GIEWS Country Brie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7 Dec. 2011.

데일리NK, <http://www.dailynk.com>

연합뉴스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2

2011년 특별기획

북한법 시리즈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 해설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 해설¹⁾

지난 호에서는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 ‘농장법’, ‘사회주의농촌문제 테제’, ‘농업법’, ‘인민경제계획법’ 등 5개 관련법에 관해 살펴 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주의상업법’, ‘양정법’, ‘산림법’, ‘토지법’을 살펴보고, 그밖에 북한의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민법’, ‘외국인 투자 관련법령’의 재산권 관련 규정을 해설하고자 한다.(편집자)

1. 사회주의상업법

□ 법의 목적과 특징

- ‘사회주의상업법’은 상업 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품 유통과 봉사 사업을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상업법은 기본적으로 국내의 물자 생산과 판매를 규율하고 있으나, 국제경제와의 교류 증대에 대비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 ‘부족의 경제’가 심화됨에 따라 오히려 국가의 시장통제마저 어렵게 되자, 2005년 식량의 시장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등 상업법의 제정이 추구한 가치를 상실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상업법은 여전히 개인 간의 상업 활동에 대한 조문은 거의 없음. 조문의 대부분은 국가가 물자와 서비스를 수매·공급하고 통제·관리하는 방식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어 시장경제체제의 상법과는 이질적임.

□ 중요 조항

- 사회주의 상업법의 기본원칙: 국가가 주체
 - 사회주의 상업은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며 그들의 물질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임을 명시(제1조)

1) 이 글은 국민대학교 북한법제연구센터 박정원 소장,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최은석 박사의 해설을 요약·정리한 것임.

- 국가는 상품공급에서 주문제를 바로 실시하여²⁾ 상품에 대한 수요를 생산에 정확히 맞물리고 생산된 상품을 제때에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원칙을 규정함(제2조).
-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상품원천을 조성하며 수매, 가공사업을 강화하고 상품예비를 동원하여 더 많은 상품을 확보함(제3조).
- 국가는 상업시설의 현대화, 경영활동의 과학화를 실현하며 상업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여 나가도록 함(제4조).
- 국가는 상업에 대한 지도관리체계를 바로 세우고 사회주의 상업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함(제5조).
- 국가는 사회주의상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상품유통 사업을 강화 발전시켜 점차 사회주의 상업으로부터 완전한 공급제로 넘어가도록 함(제6조).
- 외부세계와 교류 증대에 대비하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
 - 상업분야에서 외국, 국제기구들과 교류 협조를 발전시킴(제7조).

□ 법의 개정 내용

- 사회주의상업법은 1992년 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3호로 제정된 후, 1999년 1월 28일(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1호), 2002년 5월 22일(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2호), 2004년 6월 24일(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 개정됨.
- 개정된 상업법은 그간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 중앙과 지방의 양 관리기관이 통제 하던 것을 중앙 당국의 통일적 지도에 의한 것으로 바꿈.³⁾
 - 2004년 개정 상업법에서는 북한은 물자에 대한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극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 상업법의 농민시장 대신에 상설 종합시장을 도입 하면서 국가에 의하여 관리되는 시장질서를 정립하고, 이와 함께 상점, 식당, 서비스업종에 대한 영업허가제를 도입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
 - 하지만 사회주의 상업법은 기본적으로 계획경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북한이 시장

2) 상품주문제는 사회주의 상업의 의미와 결합하여 결국 상업이 개인 간 혹은 개인과 기업 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작용이 아니라 국가의 전면적인 개입 아래 국가가 인민들의 수요를 예측해서 기업을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변질되게 한다.

3) 구 상업법 제63조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주민지역의 특성과 인구수, 인민들의 수요 같은 것을 고려하여 상품품종별, 봉사업종별로 전문봉사망을 널리 조직하며 그 형태별 배치기준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경제체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이러한 일련의 시도들이 전술한 바와 같이 부작용을 야기하자 2004년 상업법에서는 시장경제에서 후퇴하고 계획경제로 일부 회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함.

□ 법조문상 관련 기관 및 단체

-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 상품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인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이 골고루 차례지도록 공급하여야 함(제8조).
-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 상업기관, 기업소
 - 상품주문서 작성, 상품생산과 분배, 공급계획의 작성(제10조)
 - 중앙상업지도기관은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상품총량을 넘겨받아 상품을 도(직할시) 별로 분배, 도(직할시) 정권기관은 그것을 시(구역), 군별로 분배(제10조)
 - 내각의 지도 하에 중앙상업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상업부문 사업을 지도(제81조)
 - 상품공급계약의 이행(제12조)
- 수매기관, 사회급양기관, 편의봉사기관, 무역기관, 상업과학연구기관의 개별업무 추진

□ 경제정책이나 농업정책과의 연관성

- 상업이라는 용어는 북한정권 수립 초기 사용하였고 사회주의 사회 진입을 선언한 이후 사용하지 않다가 사회주의상업법의 제정을 통해 다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일부 시장경제 요소 도입과 개방정책 추진의 일단을 엿볼 수 있음.
- 경제정책 측면에서 이 법 제정으로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오히려 사회주의 통제경제 원칙이 강조되는 규정이 포함됨으로써 개혁과 개방 정책 추진과 거리를 두게 됨.
- 농업정책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며, 계획적 계약에 따른 분배와 유통의 원칙과 내용이 강조되어 있음.

☐ 통일 관련 시사점

- 남북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상품 유통망이 시급히 파악되어야 함.
 - 상업 유통망의 장악: 통일 직후 단기적으로 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유통망이기 때문임.
 - 상업 유통망의 파악: 이는 유통망 민영화에 필수적임. 수매기관, 사회급양기관, 편의봉사기관, 무역기관, 식량창고 및 배급소는 농업부문에서 중요한 민영화 대상 기관임.
 - 관련법 제도의 확보와 참조: 종합시장, 농민시장, 장마당 등 자유시장을 관리하고 규율하는 법제도의 확보가 중요함.

2. 양정법

☐ 법의 목적과 특징

- 양정법은 양곡수매와 보관, 가공, 공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양정사업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제1조) 함을 목적으로 함.
- 양정법은 북한의 ‘수매양정체계’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임.
 - 수매양정체계는 식량과 공업의 원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유일적 수매 및 양곡관리체계를 의미함.
 - 수매양정체계는 양곡의 수매, 보관, 가공, 공급에 대한 유일적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임.

☐ 중요 조항

- 양곡의 계획적 소비원칙(제2조)
 - 양정사업을 식량에 대한 인민경제적 수요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함.
 - 양정사업체계를 바로세우며 양곡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도록 입법 조치함.
- 양곡수매원칙(제4조)
 - 양곡수매를 잘하는 것은 양곡원천을 확보하는 데서 나서는 필수적 요구임을 강조함.

- 양곡수매를 유일적으로 하며 양곡수매에서 당사자들의 이익을 결합시키면서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도록 함.
- 양곡보관원칙(제5조)
 - 양곡보관을 책임적으로 하는 것은 양곡의 손실을 없애기 위한 중요담보임을 규정함.
 - 양곡보관에 필요한 물질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양곡을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보관하도록 함.
- 양곡가공원칙(제6조)
 - 양곡 가공 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질 좋고 영양가 높은 식량을 비롯한 양곡가공 제품을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선차적 과업임.
 - 양곡가공시설을 현대화하며 양곡가공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함.
- 양곡공급원칙(제7조)
 - 양곡을 책임지고 공급하는 것은 당국의 일관된 시책임.
 - 인민들에게 식량을 제때에 공급하고 공업원료와 집짐승먹이를 계획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 양곡예비조성원칙(제8조)
 - 예비양곡을 계획적으로 조성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양곡절약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함.
- 양정분야의 교류와 협조(제9조)
 - 양정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킴.

□ 법의 개정 내용

- 양곡절약 강조를 위해 법 개정(제48조)
 - 양곡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양곡을 낭비하지 말며 극력 절약할 것을 개정함.
 - 양곡을 가지고 암거래, 밀주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2005년 구법에서는 “양곡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량곡을 량비

하지 말고 절약”(제48조) 규정만을 두고 있었음.

- 2009년 11월 법 개정에서는 양곡을 암거래하거나 밀주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신규 조항을 신설하였음.

○ 양곡에 대한 손해보상, 몰수(제55조)

- 정해진 출미를 기준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소유의 양곡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설비의 운영을 중지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도록 함.

○ 이는 북한 사회에서 밀주행위와 암거래가 만연되어 있고 협동농장에서 절도행위가 많이 발생하여 이같은 위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법조문상 관련 기관 및 단체

○ 군행정경제위원회 소속 양정사업소

- 알곡수매 전문기관으로 군행정경제위원회 소속의 양정사업소에서 담당함.

○ 식료수매종합상점

- 양곡 외의 농산물과 축산물의 수매는 군행정경제위원회 소속의 식료수매종합상점(사업소)이 담당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수매한 농산물을 다시 판매함.

□ 경제정책이나 농업정책과의 연관성

○ 식량공급대상의 등록

- 중앙양정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식량공급대상을 정기적으로 정확히 등록하고 식량을 공급하여야 함(제44조).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량공급대상 변동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여 해당 양정기관에 재등록하여야 함.

○ 식량공급소의 배치

- 중앙양정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식량공급대상 인원의 분포상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식량공급소를 배치하여야 함(제45조).
- 식량공급소는 식량공급시설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식량계량을 정확히 하며 식량공급에서 봉사성을 높일 것을 강조함.

- 북한 교육법(2005년)상 식량 배급 보장
 - 북한 당국은 학생들에게 교육단계별에 따르는 식량을 공급하며 학용품과 생활 필수품을 보상하여 낮은 값으로 보장하도록 함(제18조 제1항).
 - 영예군인, 무의무탁 학생에게는 학용품과 생활필수품을 무상으로 보장함(제18조 제2항).
- 어린이보육교양법(1999년)상 식량 공급 규정
 - 모든 어린이는 출생 직후부터 식량을 공급받도록 함(제15조).
- 인민보건법(2001년)상 식량 배급 관련 규정
 - 환자 및 산전산후 휴가를 받은 여성들과 그 부양가족들에게 식량, 보조금 분배 몫을 줌. 이 경우 식량, 보조금 분배몫은 국가와 사회협동 단체가 부담함(제14조).
- 사회주의노동법(1999년)상 식량 공급 규정
 - 국가는 노동자, 사무원들과 그들의 부양가족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식량을 공급하도록 함(제70조).
- 농업법(2002년)상 분배 규정
 - 국영농목장과 협동농장은 농업에 대한 계획화사업과 노력, 재정관리를 잘하고 경제적 공간을 이용하여 생산의 효과성을 높이며 사회주의분배원칙에 따라 분배를 실시해야 함(제74조).
- 북한 사회에서의 식량수급통계 추정의 곤란
 - 국내외 주요기관들은 서로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북한식량수급통계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식량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이는 근본적으로 북한이 발표하는 통계자료의 신빙성 결여에 기인함.
 - 식량과 생필품의 배급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나, 매점매석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권은 계속 발급하며, 군·보위부·보안성과 취학 아동에 대하여는 배급제를 유지하고 있음.

□ 통일 관련 시사점

- 남북 경제통합시에는 통합 직후 긴급지원을 위한 관련기관의 장악, 북한지역

식량수급 통계 자료 확보, 양정사업소와 식료품수매사업소의 통계를 통해 북한 사회인구통계자료 확보, 식량수급기관의 통합과 민영화 과제 수행이 중요함.

3. 산림법

☐ 법의 목적과 특징

- 산림법의 사명
 - 북한은 산림 조성과 보호, 산림자원 이용에서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산림정책을 관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산림과 그 소유권 관련한 조항에서는, 산림에는 산림토지와 그 안에 있는 동식물 자원이 속하며, 산림은 국가만 소유하는 것을 명문화함(제2조).
- 북한 산림법의 입법 배경 및 제정 필요성
 - 북한이 1990년대 들어서 비로소 산림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무리하게 추진하여 온 다락밭 건설과 난방용 화목의 남벌로 대부분의 산림이 황폐화된 상황 때문임.
 - 러시아와의 관계 변화로 목재 수입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산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음.
 - 그동안 산림에 대한 지도통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로인 동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규정하게 된 배경이 있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92년 10월 산림 관련 정무원 결정을 채택하고, 동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4차 회의에서 산림법을 제정하였음.

☐ 중요 조항

- 산림조성 설계작성
 - 나무심기설계는 산림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이 작성하며, 산림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은 삼림조성지역의 립상과 기후, 토양 조건을 조사 분석하고 쓸모없는 산림을 좋은 수종의 산림으로 개조하여 목재림, 섬유 원료림, 기름나무림, 산과 실림, 땀나무림, 풀판 같은 것을 조성할 수 있게 나무심기 설계를 하여야 함(제13조).

○ 약초와 산나물재배

- 국토환경보호기관, 립업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한 산림구역에 약초와 산나물을 계획적으로 심고 가꾸어 산림부원을 늘려야 함(제18조).

○ 산림보호관리의무

- 산림을 잘 보호하는 것은 산림자원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산림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산림보호관리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함(제19조).

□ 법의 개정 내용

- 북한 산림법의 개정 조항은 2005년 8월 개정에서 모두 5개 조항에 손질을 가하였음.

- 제5조(산림조성원칙), 제10조(전망적인 산림조성), 제14조(나무보생산과 나무종자수매), 제38조(산림자원의 수출입), 제47조(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 등 5개 조항이 개정됨.

○ 산림조성원칙

- 산림 조성을 전군중적으로 하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며, 북한 당국은 전체 인민이 산림 조성사업에 적극 참가하고 산림 조성 전문기업소들의 역할을 높여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도록 역설적인 조항을 둠.⁴⁾
- 북한 당국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담당임을 정하여주고 책임적으로 조성관리하도록 함(제5조).
- 과거 2001년 구법에서는 “산림조성을 전군중적으로 하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며, 국가(북한 당국)는 전체 인민이 산림조성사업에 적극 참가하며 산림조성전문기업소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한 바 있었으며, 국가(북한 당국)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담당임을 정하여주고 책임적으로 조성관리하도록 함(구법 제5조).

○ 전망적인 산림조성을 위한 법 개정

- 산림조성은 “나라의 번영을 위한 자연개조사업이다. 국토환경보호기관, 립업기관과 담당임을 가지고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아카시아나무같이 좋은 수종의 산림

4) 북한은 산림법 관련 별도의 「원림법」을 2010년 11월 25일 제정하였다.

면적을 끊임없이 늘여 산림풍경을 개선하며 산림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고 단위당 축적을 늘일 수 있도록 산림조성사업을 전망성 있게 하여야” 함(제10조).

- 2005년 개정법에서는 ‘아카시아나무’라는 예시 규정을 두었음.
- 2001년 산림법에서는 “산림조성은 나라의 번영을 위한 자연개조사업이다. 국토 환경보호기관, 립업기관과 담당림을 가지고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좋은 수종의 산림면적을 끊임없이 늘여 산림풍경을 개선하며 산림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고 단위당 축적을 늘일 수 있도록 산림조성사업을 전망성 있게 하여야” 함을 규정한 바 있음(구법 제10조).

○ 나무모생산과 나무종자수매

- 2005년 개정법에서는 “국토환경보호기관, 립업기관과 담당림을 가지고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육종체계와 채종체계를 바로 세워 벌레가 끼지 않고 빨리 자라면서도 모양이 좋은 나무품종을 육종하며 나무모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나무모 생산을 늘여야 한다. 나무종자의 수매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립업기관이 한다”(제14조)로 개정함.
- 2001년 구법에서는 “국토환경보호기관, 립업기관과 담당림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종체계와 육종체계를 바로세우며 나무모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나무모생산을 늘여야 한다. 나무종자의 수매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립업기관이 한다”(구법 제14조)라고 규정했음.
- 2005년 법 개정에서는 “벌레가 끼지 않고 빨리 자라면서도 모양이 좋은 나무 품종을 육종하며”라는 내용을 개정하여 육종사업에 전념하고 있음.

○ 산림자원의 수출입 규정 개정

-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통나무와 그 1차 가공품, 산짐승과 산새, 산림식물의 종자와 표본 같은 것을 다른 나라로 내가려 하거나 우리나라에 들여오려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들여오는 새품종 나무의 재배와 관련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정확히 알아보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제38조).
- 2001년 구법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통나무와 그 1차 가공품, 산 짐승과 산새, 산림식물의 종자와 표본 같은 것을 다른 나라로 내가려고 하거나 우리나라에 들여오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38조).

○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

- 2001년 개정법에서는 “나무심기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거나 심은 나무의 사름률을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허가 없이 산림자원을 람벌, 채취하였거나 산불을 일으킨 것 같은 산림조성, 보호, 리용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제47조)로 하여 수정 보충되었음.
- 1999년 9월 구법에서는 “나무심기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거나 심은 나무의 사름률을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허가 없이 산림자원을 채취하였거나 산불을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제47조)고 규정하고 있었음.

□ 법조문상 관련 기관 및 단체

- 북한의 임야관리는 1960년 12월 임업성이 신설되기 전까지 농림국 산림부에서 관장하였음.
 - 1946년 6월 ‘임야관리 경영결정서’에서 농림국에 산림부를 신설하고 산림의 국유화 및 국유림과 민유림의 임야관리 업무를 담당토록 해 왔음.
 - 북한은 6.25전쟁 이후 엄청난 건설자재 부족과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목재의 적기공급을 위해 1958년 4월 24일 농림국 산하의 산림부, 임산부 및 임업부를 건재공업부 산하에 두기도 하였음.
 - 그 후 약간의 변화과정을 통해 1996년 정무원 산하에 국토환경보호부를 신설하고, 사회안전부 국토관리총국 산림관리국에서 관리하던 국토보호림을 관리하게 하였음.
- 산림토지의 이용허가 및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 또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임.
 - 내각과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산림토지를 이용하려는 목적, 규모 같은 것을 따져보고 이용 허가를 하여야 함(제30조).
- 산림경영 사업 조건의 보장
 - 국가계획기관과 노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농업지도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산림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에 필요한 노력, 설비, 자재, 자금을 보장하여야 함(제42조).

□ 경제정책이나 농업정책과의 연관성

- 산림정책을 환경문제로 확대 전환
 - 북한은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주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1993년 6월 평양에서 북한 최초로 ‘세계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96년 9월에는 ‘국토환경보호부문 및 연관부문 일군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이래 매년 계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음.
 - 또 1996년 10월에는 기존의 ‘모범산림군’(시·구역) 칭호를 폐지하는 대신 ‘국토환경보호 모범군’(시·구역) 칭호를 제정하였으며 10월 23일을 ‘국토환경보호절’로 제정하였음.
 -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한편으로는 수년에 걸친 수해를 비롯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황폐화된 국토의 복구·재건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동원으로 구체화되었음.
 - 이에 따라 정권수립 50주년을 맞았던 1998년에는 각 기관은 물론 공장·기업소·가정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환경정비사업을 벌인 바 있음.
 - 종전의 ‘식수월간’(4~5월, 10~11월)을 ‘국토환경보호월간’으로 바꾸어 조림사업 이외에 도로관리, 준설공사, 주거 및 환경개선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으며, 1999년에는 식수절을 종전의 4월 6일에서 3월 2일로 변경하였음.
- 북한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각 지역마다 산림 감시원을 동원하여 산불 예방과 남벌 및 불법 개간을 단속하여 성과를 거두었으며 산림자원을 늘리기 위한 나무심기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1995.10.30 평성방송)
- 북한은 1992년 10월 ‘산림조성·보호 및 이용 등 임업발전에 관한 정무원 결정’을 채택한 데 이어 12월에는 산림자원의 보호관리와 지도 통제를 전반적으로 규정한 ‘산림법’을 제정하였음.
 - ‘임업발전에 관한 정무원 결정’은 1992년 8월 임업노동자절을 기해 김정일이 제시한 과업(“임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관철을 위한 행정적 조치임.
- 이에 따라 북한은 최근 산림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 지리적 특성과 현실적인 조건에 맞는 조림계획 수립, 조림사업소와 조림작업반의 역할 증대, 녹화 근위대 활동 강화, 기관·기업소들의 담당림제 실시 등

- 임업의 현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 임업 과학연구사업의 강화, 임업부문 기술인재 양성, 외국과의 임업과학기술교류 확대 등을 중점적인 산림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정책하에서 대내적으로는 학생과 사회단체 중심으로 나무심기 궤기 모임을 잇따라 개최하는 가운데 산림조성 사업에 주력하고 대외적으로는 시베리아 벌목사업을 통해 부족한 목재공급과 외화벌이를 추진해 오고 있음.
- 1995.2.24 평양에서 '1995~1998년 러시아 영토 내의 통나무 생산, 목재의 종합적 가공, 산림복구 및 협조에 관한 협정'을 조인함.
-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배경은 그동안 각종 산업용재 및 신탄재(땃감) 생산을 위한 남벌과 농경지 확장을 위한 다락밭 건설 등으로 산림자원이 황폐화되었기 때문임.
- 최근에는 극심한 식량난으로 북한주민의 불법적인 땃기밭 개간이 성행함에 따라 산림 훼손이 더욱 심화된 점을 발견할 수 있음.
- 북한 보도를 통해 산림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산업목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림 남벌 방지용 주민통제 목적과 황폐해진 산림을 회복하기 위한 나무심기를 독려하기 위한 의도 외에 북한의 주요한 외화벌이 수단인 송이버섯 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통일 관련 시사점

- 남북한의 산림법제 통합
 - 남한의 산림법이 산림을 이용 목적에 따라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로 구분하여 산림의 보전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반면, 북한의 산림법은 나무베기, 약초, 산열매 등 채취 및 산점송의 사냥 시에 국토관리기관 등에게 허가받도록 하는 등 단편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 벌칙 관련한 규정에서도 남한의 산림법은 산림절도죄, 산림실화죄, 벌금, 과태료 등 벌칙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반면, 북한의 산림법에서는 허가 없이 산을 일군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벌금을 물리는 등 산림의 불법적 이용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함.

- 그러나 묘목 생산의 중요성, 산불의 예방, 산림기술의 개발 등에 관하여는 남북한 산림법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산림법제 통합에는 용이할 것으로 사료됨.

4. 토지법

□ 법의 목적과 특징

○ 토지법의 목적

-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방침이 철저히 수행되어 농촌에서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와 온갖 착취관계가 영원히 없어졌으며 사회주의적 토지소유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제2조)되었음을 강조함.
- 공화국 북반부(북한)에서 이룩한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전국적 농업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함(제2조).
- 국토를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발이용하고 정리미화하며 나라의 전반적 살림살이를 전망성 있게 계획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국토건설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을 둔 법률임을 강조함(제14조).
- 강하천 정리, 산림조성 등 토지보호 사업을 힘있게 벌려 토지유실을 막으며 나라의 물질적 부를 늘리고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률임을 규정함(제19조).
- 토지건설사업을 전망성 있게 조직진행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다그치고 농업생산을 늘리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하기 위한 것임(제43조).
- 토지관리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국토를 철저히 보호하고 농업토지를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임(제63조).

□ 중요 조항

○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임을 강조

- 국가는 토지개혁에서 이룩한 성과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관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공고발전시키며 국토를 보호개발하고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이용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함(제4조).
-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국토를 개발하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특히 토지를 개량하며 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인재를 전망성 있게 양성함(제6조).

○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

- 나라의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음(제9조).
- 북한 당국은 “국가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높일 수 있도록 국토건설총계획을 적극적이며 동원적으로 세우고 그를 철저히 실현”(제14조 제2항)하도록 역설함.
- 국토건설총계획의 전망기간은 30~50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전망기간을 이보다 짧게 정할 수도 있음(제16조).

○ 강하천정리사업 및 토지 보호 규정

- 강하천 정리사업은 큰물피해로부터 농경지를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규정함(제20조).
-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저수지를 건설하고 저수지제방을 더욱 보강완비하며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등 더 많은 물을 확보하며 관개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정상적으로 하여 물의 도중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함(제45조).

○ 토지이용 및 승인에 대한 토지관리 허가 규정

- 기관, 기업소, 단체가 논밭을 부업지로 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목을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제67조).

○ 특수토지의 관리 및 이용 규정

- 특수토지에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문화유적지, 보호구역, 군사용 토지 등 특수한 목적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특수토지의 관리는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정권기관 및 그것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군부대가 담당함(제75조).

□ 법의 개정 내용

○ 토지관리기관의 내용 변경 규정

- 구토지법 제7조에서 “국가는 토지를 리용하는 데 맞게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림토지, 산업토지, 수역토지, 특수토지를 가르고 관리한다. 토지관계와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각급 인민위원회와 정무원 및 행정위원회의 지도 밑에 국토관리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를,

- 현행 토지법 제7조에서는 “국가는 토지를 리용하는데 맞게 농업토지, 주민지구 토지, 산림토지, 산업토지, 수역토지, 특수토지로 가르고 관리한다. 토지관리와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의 지도 아래 국토관리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음.
- 변경된 내용은 ‘토지관계’를 ‘토지관리’로 하였으며, 감독통제기관도 각급 인민위원회와 정무원, 행정위원회로 두었던 것을 내각과 지방정권기관 지도 아래 국토관리기관으로 개정하였음.

○ 1998년 헌법 개정으로 인한 국가주권기관 개편

- 구토지법 제18조에서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은 최고인민회의 또는 중앙인민위원회, 지역국토건설총계획은 도인민회의 또는 도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한다.”를,
- 현행 토지법 제18조에서는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국토건설총계획은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지역국토건설총계획은 도인민회의 또는 도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한다.”로 개정하였음.
- 개정된 내용은 단순한 자구 수정임. 1998년 헌법 개정으로 인한 국가기구 개편에 따른 ‘중앙인민위원회’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기능과 역할을 이관함에 따른 수정임.

○ 강하천과 제방 기술상태 사회안전기관의 검열

- 구토지법 제23조에서 “국토관리기관은 강하천의 통일적인 보수관리체제를 세우고 강하천 보수관리 전문기업소의 역할을 높여 보수관리를 전문화, 과학화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 현행 토지법 제23조에서 “국토관리기관은 강하천의 통일적인 보수관리체계를 세우고 강하천 보수관리 전문기업소의 역할을 높여 보수관리를 전문화, 과학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은 강하천과 제방의 기술 상태를 정상적으로 검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로 개정함
- 북한 당국은 사회안전기관을 통해 강하천과 제방의 기술 상태에 대한 철저한

검열 작업을 실시하고자 한 것임.

□ 법조문상 관련 행정기관 및 단체

- 농업 토지 관리기관
 - 농업토지의 관리는 농업지도기관과 그것을 이용하는 해당 협동농장 및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함(제64조).
- 주민지구 토지 관리기관
 - 주민지구토지의 관리는 중앙의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이 하며, 주민지구 토지를 이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도인민위원회 또는 내각의 토지 이용 허가함(제69조).
- 수역토지 관리기관
 - 수역토지의 관리는 대상에 따라 국토관리기관 또는 농업지도기관이 함(제74조).

□ 경제정책이나 농업정책과의 연관성

- 북한 토지소유제도의 형성과정과 모습
 - 해방 직후 북한에서는 반제·반봉건의 기치 아래 진행된 사회주의 혁명의 일환으로 농업부문에서 철저한 토지개혁이 단행되었음.
 - 토지개혁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⁵⁾(위원장: 김일성)의 명의로 진행되었음.
 - 토지개혁을 위하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⁶⁾을 제정·공포하였음.
 - 이 법령에 따르면, 일본국가·일본인·민족반역자 소유의 토지, 면적이 5정보 이상인 조선인 소유의 토지 등⁷⁾은 무상으로 몰수하여 무산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함.⁸⁾

5)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전신으로서 1948년 9월 9일 설립된 북한정부의 모태이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류길재, 『북한정권의 성립과정,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p.41 이하 참조.

6) 이 법령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정경모·최달곤, 『북한법령집』 제2권, 대륙연구소, 1990, pp.273-274 참조.

7) 몰수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 제2조 및 제3조가 정하고 있다.

8) 무상몰수된 토지의 규모는 1,000,325정보이고 그 중 98.1%인 981,390정보가 농민에게 무상분배되어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었다(법원행정처, 『북한의 부동산제도』, 1997, p.324).

- 이들에게 분배되지 않은 나머지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그 처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하였음.⁹⁾
- 1947년 3월 22일에는 ‘산림에 관한 결정서’와 ‘대지 및 잡종지에 관한 결정서’가 공포되어 묘지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림과 일체의 잡종지(풀밭, 하천부지 등)를 몰수하여 국유화하였음.
- 1953년 한국전쟁의 휴전 이후 북한은, 1946년의 토지개혁에 의하여 무산농민에게 분배하였던 토지를 협동농장을 만들어 농민으로 하여금 자신 소유의 토지를 출자하도록 하고 그 협동농장에서 노동을 하여 그 수입을 분배하는 생산체제로 전환하였음.¹⁰⁾
- 이에 따라 농촌에 있어서 개인경리는 급속히 사라지게 되었음.
- 1958년부터는 협동농장의 규모를 확대재조정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1958년 10월에 농업협동조합은 말단 행정단위인 ‘리’ 단위로 통합되어 규모가 확대되었고, 협동농장의 관리책임자는 리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이 맡았음.¹¹⁾
- 그 후 1961년에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협동농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였음.¹²⁾
-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제10조)라고 규정하여 농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일체 부인하였음.
- 그 후 토지법(1977. 4. 29.)을 제정하여 토지부문에서의 사회주의적 소유권의 이념을 명확하게 법제화함으로써 북한식의 토지소유제도를 완성하였음.
- 북한에서의 토지는 국가 또는 협동단체의 소유(토지법 제9조)로 북한 당국은 소유의 토지는 전체 인민의 소유(토지법 제10조)이며, 협동단체 소유의 토지는

9) 북한 당국은 남한의 토지에 대해서도 북한에서와 같은 식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공화국 남반부의 토지개혁실시를 위한 법령기초위원회 조직에 관한 결정서’(1949년 내각결정 제46호)와 ‘공화국 남반부지역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에 관하여’(1950. 7. 4. 상임위원회 결정) 등이 그 예이다.

10) 이와 같은 농업정책 전환의 계기가 된 것은 ‘농업협동경리의 강화·발전 대책에 관하여’(1954. 3. 11. 내각결정 제40호)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경모·최달곤, 『북한법령집』 제2권, 대륙연구소, 1990, pp.316-318 참조.

11) 이진욱, “통일 후 북한의 토지정책”, 『토지연구』, 1993, pp.94-95; 신도철, “북한에서의 재산권 구조”, 『경제체제의 변화와 재산권』, 한국경제교육연구소, 1992, p.114.

12) 류해웅, “통일후 북한의 토지이용과 개발에 대한 기본구상”, 『토지연구』 제4권 제2호, 1993, pp.119-120 참조.

협동경리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토지법 제11조)임을 법률로 규정하였음.

□ 통일 관련 시사점

- 남한과 북한은 극단적으로 상이한 토지소유제도를 채택·운용해 왔음.
 - 북한에서 토지는 가장 근원적인 생산수단이므로 토지소유제도의 통합은 통일의 완성을 위한 기본전제라 할 것임.
- 북한법에 의하면 북한의 모든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임을 천명하고 있음.
 - 국가 소유 토지는 전체 인민의 소유(토지법 제10조)
 - 협동단체 소유 토지는 협동경리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토지법 제11조)
 - 모든 토지는 누구도 매매하지 못하고 개인의 소유로 만들 수 없음(제9조)을 규정하여 사회주의적 소유권과 이용권을 강화하고 있음.
- 남북한 경제통합시 한편으로는 북한의 토지개혁과 소유권 제도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토지소유제도 개편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효율 제고를 위한 사유화와 민영화를 시급히 정착시켜야 함.
- 토지 사유화는 우선 국유 토지와 협동적소유 토지를 구분해 달리 처리해야 함. 그러나 농업부문 내에서 국영부문과 협동부문의 토지 처리를 달리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함. 국영농장과 협동농장의 소유제도는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사실상의 운영 실태는 구분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5. 헌법, 민법, 외국인투자관련법상의 재산권

□ 법의 목적과 특징

- 헌법
 - “국가사회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국가주권의 조직 및 실현과 관련된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법”으로서 “국가의 기본법”이라고 함.
 - 2009년 개정헌법은 여전히 1998년 개정헌법과 같이 ‘김일성헌법’이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일적 영도체제 확립과 선군정치의 헌법적

제도화를 공고히 하는 특색을 가짐.¹³⁾

○ 민법

- 재산 관계에 대한 민사적 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함(제1조).

○ 외국인투자법

-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라고 하고,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가들이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원칙을 규정함(제1조).
- 이 법은 외국투자가들의 투자를 보호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리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 외국투자관계의 기본법임(제2조).

□ 중요 조항(경제조항, 재산권 중심)

○ 헌법

- 1992년과 1998년에 걸친 헌법 개정을 통하여 경제관련 조항의 일부분을 개정함.¹⁴⁾
- 경제난 타개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경제질서의 주요 부분에 대한 변화를 시도함.
- 경제건설촉진을 위해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의 실현(제26조), 기술발전문제의 최우선과제선정 및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의 강조(제27조), 농촌기술혁명을 통한 농촌공업화(제28조) 등을 규정, ‘식·의·주’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민복지조항(제25조)을 신설, 북한 내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 보장(제16조), 외국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장려조항(제37조)을 신설함.
- 특히 1992년 헌법상 “자기영역 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제16조)고 하고,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제37조)고 하여 북한이

13) 2010년에도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그 개정내용은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를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로 개칭하는 것에 국한됨.

14) 북한헌법의 1992년과 1998년 개정내용에 관해서는 張明奉, “北韓의 社會主義憲法 改正의 背景과 內容”, 『公法研究』, 제22집 제3호, 韓國公法學會, 1994; 張明奉, “최근의 북한사회주의헌법 개정(’98.9.5)의 분석: 배경·내용·평가 및 정책전망”, 『統一研究論叢』, 제7권 2호, 민족통일연구원, 1998 참조.

대외경제부문에서 정책변화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 1998년 헌법은 소유구조의 조정과 개인소유의 범위 확대, 경제의 자율성 확대, 대외경제개방의 확대 등과 관련한 진일보한 내용을 규정함.
- ‘특수경제지대’¹⁵⁾에서의 다양한 기업창설·운영의 장려를 추가함(제37조).

○ 민법

-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민사 법률 관계에서 당사자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보장(제2조)
-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제3조)
- 계획적인 재산거래원칙(제4조)
-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생활의 기초, 협력하고 방조하는 집단주의원칙에서 재산관계를 설정 실현(제8조)
- 국가, 사회이익의 존중원칙(제9조)
- 소유권 제도(제2편 제1장)는 일반규정(제37조~제43조), 국가소유권(제44조~제52조), 사회협동단체소유권(제53조~제57조), 개인소유권(제58조~제63조)으로 구분 등.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에 대한 개념 규정(제2조)
- 외국투자는 공화국령역 안에 합작기업, 합영기업과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음(제3조).
-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경영활동조건을 보장함(제4조).
- 다른 나라 기관, 기업체와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들은 공화국령역 안에 투자할 수 있으며, 해외조선동포들도 해당 법규에 따라 공화국령역 안에 투자할 수 있음(제5조).

□ 법의 개정 내용

○ 헌법(1998년 개정헌법상 경제질서 변화, 현행 헌법과 동일)

- 소유구조의 조정과 개인소유의 범위 확대, 경제의 자율성 확대, 대외경제개방의

15) 이른바 ‘경제특구’를 말함.

확대 등의 변화

- 생산수단의 소유주체를 ‘국가와 협동단체’에서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로 규정하여 (제20조),¹⁶⁾ ‘사회단체’를 추가
- 국가소유의 대상을 축소하고(제21조, 예: 종전의 ‘교통운수’ 부문을 ‘철도·항공 운수’로 한정), 사회·협동단체 소유의 대상을 확대(제22조, 예: 종전의 ‘농기구’, ‘고기배’에서 ‘농기계’, ‘배’로 규정)
- 개인소유의 주체를 ‘근로자’에서 ‘공민’으로 바꾸고(제24조), 동시에 개인소유의 대상 중에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로 수정(제24조)
-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¹⁷⁾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옹계 이용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 (제33조). 독립채산제는 국영공장·기업소 중심에서 농업부문과 비생산적 부문인 유통부문으로 확대,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시장경제개념을 도입

○ 민법

- 1990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호로 민법 제정, 1993년 9월 23일(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34호), 1999년 3월 24일(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0호), 2007년 3월 20일(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161호) 수정 보충함.
- 1999년 개정민법은 1998년 헌법 개정에 따른 소유권 및 경제관련 조항의 수정에 따라 개정함(헌법 개정 내용 참조).

○ 외국인투자법제

- 외국인투자를 위한 기본법으로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외국인기업법」·「합

16)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협동단체는 “일정한 집단의 성원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소유와 공동로동에 기초 하여 관리운영하는 공동경리의 한 형태”라고 하고 협동농장, 생산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편의협동조합 등이 있다고 한다. 한편 사회단체(법인)는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자격을 가진 사회단체”이며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기자동맹, 조선적십자회 등이 속한다고 한다.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p.340, p.690.

17)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업부문의 관리형태로 출발하였으나 모든 경제분야의 경영관리체제로 발전하였으며, 각 개별법률에서도 반영되었다. 예컨대 ‘재산관계의 설정과 실현에서 요구되는 원칙’(민법 제5조), ‘상업에 대한 지도관리체계’(사회주의상업법 제6조), ‘노동조직의 원칙’(노동법 제26조)으로 규정되어 있다. 신용식·안성조,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한국무역협회, 1998, p.32.

작법」 등을 제정(1992.10.5),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외화관리법·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의 제정(1993.1.31), 지하자원법(1993.4.8) 및 토지임대법의 제정(1993.10.27), 외국인투자은행법(1993.11.24),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1993.11.29), 외국인투자기업 노동규정(1993.12.30) 등을 제정함.

- 1999년 일부지만 주요한 외국인투자관련 법규를 개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1999.2.26)으로 외국인투자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국인기업법, 합작법, 합영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외국투자은행법, 토지임대법 등 9개의 법률을 개정하고, 이후 같은 해 5월까지 내각 결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노동규정 등 5개의 규정을 개정함.
- ‘외국인투자’로부터 ‘해외조선동포의 투자’를 분리: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라는 대목을 ‘해외조선동포’라고 변경하여 규정함(외국인투자법 제5조).

□ 법조문상 관련 기관 및 단체

- 헌법상 국가주권기관
 -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지방인민회의, 재판소, 검찰소 등
- 민법
 - 기관, 기업소, 단체, 도매상업기업소, 소매상업기업소, 수매기관 등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기업: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 경제정책이나 농업정책과의 연관성

- 경제개방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 사회주의계획경제, 민족자립경제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일부 시장경제의 요소를 수용하고, 제한적으로 시장질서를 용인함으로써 경제개혁과 개방을 추진함.
 - 외국인투자법제 및 대외경제법제를 통해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인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함.

- 다만,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경제개방을 하고 있으며, 다방면의 당국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에 의해 대폭적인 경제개방을 통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보이지 않음.
- 농업정책과의 연관성
 - 농업의 현대화 내지 과학화의 강조를 통해 만연된 식량난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법제화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음.
 - 농업분야에서도 독립채산제 등에 의한 수익을 인정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제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농업부문에서의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자세를 읽을 수 있음.

□ 통일 관련 시사점

- 재산권분야의 법제 변화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소유제의 변화를 통해 전개되고 있음.
 - 전반적으로 국가소유의 범위를 축소하는 경향이며, 경제활동의 다양성에 의해 협동단체 외에 사회단체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개인소유의 범위도 확대하는 조치에 의해 다소 개인영역의 경제활동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남북한의 통일과 관련하여 재산권 분야의 통합을 위한 법제마련이 상호 소유권 원칙과 내용의 차이에 의해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북한의 경제질서에 관한 변화에 의해, 다시 말해 북한경제가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나마 받아들임으로써 다소 그 점점의 가능성을 크게 하는 효과가 있음.
- 북한의 대외경제부문의 정책변화와 법적근거의 마련은 대내적인 입법조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면에서 경제체제의 변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남북한의 경제통합의 길을 넓혀 나아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
 - 구체적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의 법제정비(경제특구 법제)는 북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부적인 관련 입법에서 매우 유사한 발전과정을 답습하고 있다는 면을 고려할 때 북한의 경제관련 법령의 변화에 대한 지원과 방향유도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

주체81(1992)년 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3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1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5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2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6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제1장 사회주의상업법의 기본

제1조 사회주의상업은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며 그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은 상업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품류통과 봉사사업을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국가는 상품공급에서 주문제를 바로 실시하여 상품에 대한 수요를 생산에 정확히 맞물리고 생산된 상품을 제때에 수요자에게 공급하도록 한다.

제3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상품원천을 조성하며 수매, 가공사업을 강화하고 상품예비를 동원하여 더 많은 상품을 확보하도록 한다.

제4조 국가는 봉사혁명을 힘있게 벌려 상업조직과 기술, 봉사방법을 개선하고 상업시설의 현대화, 경영활동의 과학화를 실현하며 상업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여나가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상업에 대한 지도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사회주의상업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사회주의상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상품류통사업을 강화발전시키며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점차 완전한 공급제에로 넘어가도록 한다.

제7조 국가는 상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상품공급

제8조 상품공급은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에 맞게 상품을 확보하고 공급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상품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인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이 골고루 차례지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제9조 도매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주문을 받아 생산에 맞물리고 상품의 확보와 지역간 교류를 잘하며 소매상업기관, 기업소에 상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소매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을 정확히 인수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품공급은 주문제에 의한 공급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 상업기관, 기업소는 인민들의 수요를 연구하여 상품주문서를 작성하며 그에 따라 상품생산과 분배, 공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을 국가계획대로 생산하여 해당 단위에 골고루 공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중앙상업지도기관은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상품총량을 넘겨 받아 상품을 도(직할시) 별로 분배하며 조(직할시)정권기관은 그것을 시(구역), 군별로 분배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관본위로 상품분배단위를 내올수 없다.

제12조 상업 및 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의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그것을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생산된 상품에 대한 인수 및 출하는 상품공급계획에 딸 도매상업기관, 기업소가 한다.

제13조 지방정권기관과 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료기지를 꾸리고 생산한 원료원천으로 여러 가지 식료품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상업기관, 기업소는 수산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주민공급용 수산물을 넘겨받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공급하여야 한다.

제15조 국가계획기관과 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가 정하여준 일용잡화, 견제상품, 농촌상점에 갖추어놓아야 할 상품같은 상비상품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비상품을 떨구지 말고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16조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정권기관, 상품생산 및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양식료품 같은 어린이용상품을 선차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총량가운데서 중요상품의 일부를 남겨두었다가 협동농장 결산분배시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촌에 보내줄 상품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상업기관, 기업소는 탄광, 광산을 비롯한 중요대상에 상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노동보호물자와 우대상품은 기준에 따라 정확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방정권기관과 상업기관, 기업소는 여러 가지 부식물과 어린이옷, 일용세소상품 같은 상품에 대한 자체가공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상업기관, 기업소는 여행자들을 위한 상품을 확보하며 주요 역구내와 정류소에 매대를 꾸려놓고 손님들에게 여행용상품과 지방특산물, 청량음료 같은 것

을 정상적으로 팔아주어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팔아주기 위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민수용연료를 계획에 맞물려 생산하며 주민세대와 비생산부문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골고루 공급하여야 한다.

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민수용연료를 제때에 실어날라야 한다.

제22조 국가는 전기용품, 전자제품 같은 일상용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제를 실시한다.

신용보증제를 실시할 상품품종과 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3조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정권기관,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류통에 대한 장악지휘체계를 세우고 중요상품확보, 공급사업을 정기적으로 장악지휘하여야 한다.

상품의 지역간 교류와 체화되었거나 못쓰게 된 상품 같은 것은 제때에 조절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자연피해와 특수하게 제기되는 대상에 필요한 상품예비를 조성하여야 한다.

조성한 상품예비는 해당 상업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공급한다.

제25조 중앙기관이 운영하는 직매점에서는 자기 부문 기업소에서 새로 만든 상품을 위주로 하여 팔아주면서 인민들의 수요를 연구한데 기초하여 상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직매점에서는 주민들에게 기준에 따라 공급하게 된 상품과 다른 부문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생산한 상품을 팔수 없다.

제26조 운수기관과 체신기관은 상품을 수송계획에 따라 수송, 송달하여야 한다.

제27조 중앙상업기관의 승인없이 회의, 강습, 경쟁, 지원 같은 명목으로 기관, 기업소, 단체가 주민용상품을 빼내거나 안면 또는 직원을 탐용하여 판매공급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장 수매

제28조 수매를 잘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 생산과 소비를 련결시켜 주민들의 식료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며 공업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상업지도기관과 수매기관, 기업소는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농업생산물과 공업원료원천을 동원하여 수매하여야 한다.

제29조 수매기관, 기업소는 수매사업에서 국가와 수매시키는 자의 이익을 옹계 결합시키고 자원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제30조 수매는 계획수매와 자유수매로 한다.

수매기관, 기업소는 지표별 수매계획에 따라 농업생산물을 수매하며 주민들로부터 농부산물, 축산물, 약초, 고자재 같은 것을 자유수매하여야 한다.

제31조 해당 중앙기관은 수매품을 쓰는 기관, 기업소에서 직접 수매하는 방법으로 수매사업을 다각화하며 수매원천을 최대한 탐구동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해당 기관과 수매기관, 기업소는 수매원천의 분산성과 수매품종의 특성에 맞게 계약수매, 현물교역수매, 위탁수매, 예약수매, 순회수매 같은 방법으로 수매사업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제33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매기지와 원천을 조성하고 늘이며 수매원천을 조사장악하여 수매품종액 및 지표별, 시기별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34조 주민공급, 봉사를 하는 상업기관, 기업소는 국영 및 협동농장 공동경리에서 생산한 남새, 축산물 같은 식료농산물을 수매계획에 따라 생산단위와 계약을 맺고 수매하여야 한다.

상업기관, 기업소와 국영 및 협동농장은 수매계약을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제35조 해당 기관과 수매기관, 기업소는 농촌상점을 거점으로 하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수매품을 수매하며 그것을 제때에 실어가야 한다.

제36조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산나물과 산과일이 많이 나는 시기에 채취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여 그것을 더 많이 수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국가계획기관은 해당 중앙기관별로 수매품의 품종과 규격을 정해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수매선전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매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38조 상업기관, 기업소는 수매상점을 지역별로 꾸리고 주민들이 여유로 가지고 있는 물건을 수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매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물건의 출처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제4장 사회급양

제39조 사회급양은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부담에서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의 기호와 위생영양학적요구에 맞는 음식물을 만들어 공급하여야 한다.

제40조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이 즐기는 대중식사와 요리 같은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과 지방적특색을 잘 살리는 원칙에서 음식물의 가지수

를 높여야 한다.

제41조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음식물생산을 전문화, 과학화하며 요리강습과 경연, 경험교환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음식물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42조 사회급양 및 청량음료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로 청량음료를 만들어 공급하여야 한다.

청량음료는 필요한 곳에 청량음료점과 간이매대, 이동매대 같은 것을 꾸려놓고 판매하여야 한다.

제43조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와 로동자구, 농촌리에 밥공장, 국수공장, 빵공장을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꾸리고 주식물을 가공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44조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당의 주방설비와 비품, 도구 같은 것을 그 특성에 맞게 갖추고 음식물생산과 공급에서 위생문화적요구를 지켜야 한다.

보건기관은 사회급양일군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5조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역별로 수요에 맞는 려관을 꾸려놓아야 한다.

려관에서는 봉사조직을 잘하여 손님들의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6조 지방정권기관과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반제품공장을 꾸리고 1차가공제품과 반제품을 생산하여 식당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47조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사회급양 및 식료가공원료기지를 꾸리고 식당과 식료상점에 여러 가지 원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상업 기관, 기업소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비경지를 원료기지로 리용할수 있다.

제5장 편의봉사

제48조 편의봉사를 바로하는 것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도움을 주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위생편의, 가공편의, 수리편의, 리용편의 같은 편의봉사망을 꾸리고 업종을 정해주며 앞선 봉사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 국가는 편의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가정문화용품 같은 것의 수리봉사에서 신용보증제를 실시한다.

신용보증제를 실시할 품종과 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상업지도기관이 한다.

제50조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봉사시설을 인민들의 편리를 보장할수 있게 관리 운영하며 편의봉사에서 문화위생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1조 지방정권기관과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수매상점을 지역별로 꾸리고 주민들이 수매시키려는 소비품을 수매하여 팔거나 다시 수리가공하여 팔아주어야 한다.

제52조 지방정권기관과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봉사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봉사원을 널리 운영하여야 한다.

편의봉사가내작업반, 가내편의봉사원의 조직과 배치는 상업지도기관이 한다.

제53조 국가계획기관과 무역기관, 해당 기관은 편의봉사용자재와 부속품을 계획에 맞물려 보장하여야 한다.

상업지도기관은 편의봉사용자재, 부속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6장 상품보관관리

제54조 상품보관관리는 상품을 질량적으로 검수선별하고 정확히 보관하며 상품의 손실을 없애고 품종구색을 갖추어 인민들에게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업지도기관과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보관관리에 필요한 창고를 기준으로 갖추고 상품을 그 특성에 맞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기준재고를 가지고있어야 하며 상품류통조직을 개선하여 상품회전률을 높여야 한다.

상품기준재고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상업지도기관이 한다.

제56조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검수와 입출고를 정해진대로 하고 현물에 의한 경상경리를 잘하여 상품류통과정에 사고를 없애야 한다.

상품의 손실과 검수과정에 발견한 사고는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7조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생산지와 소비지에 저장, 랭동시설을 꾸리고 식료품보관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식료품저장, 랭동시설에는 식료품보관에 피해를 줄수 있는 물건을 둘수 없다.

제58조 상업기관, 기업소는 자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상품품종별 포장용기를 마련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포장용기는 회수하여 다시 리용할수 있다.

제59조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상품실사에서 나타난 부족점은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제60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과 상업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필요한 곳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경비성원을 배치할수 있다.

제61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업부문의 상품을 비롯한 재산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며 그것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7장 상업의 문화성, 봉사성

제62조 상업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는 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상업의 본성적요구이다.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봉사망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알뜰히 관리하며 인민들에게 편리한 봉사를 하여야 한다.

제63조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주민지역의 특성과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전문, 종합봉사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봉사업종을 실정에 맞게 정해주어야 한다.

제64조 상업기관, 기업소는 봉사구역담당제를 바로 실시하여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원만히 보장하며 상점매대에 상품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인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팔아주어야 한다.

제65조 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을 물리화학적특성과 용도, 규격에 맞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포장하며 상표와 가격표를 문화성있게 만들어 붙여야 한다.

제66조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진렬, 광고와 조명을 문화성있게 하여야 한다.

상품광고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67조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아침, 저녁봉사와 순회봉사, 주문송달봉사, 자체봉사 같은 여러 가지 봉사형식과 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경우 봉사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지켜야 한다.

제68조 상업일군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인민의 총복이다.

상업일군은 상품수요장악과 공급에서 《우리 가정수첩》을 리용하여 얻은 경험을 본받아 주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공급하며 언제나 인민들에게 문화성있고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제8장 상업시설의 현대화, 상업경영의 과학과, 합리화

제69조 상업시설을 현대화하고 상업경영을 과학화, 합리화하는 것은 나라의 상업을 인민대중을 위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상업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상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봉사건물과 설비, 비품, 도구를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하며 상업경영활동을 과학화, 합리화할수 있는 물질기술적수단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0조 국가계획기관과 건설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살림집을 건설하려 할 경우 봉사망건설을 예견하며 연간살림집건설계획가운데서 일정한 비율에 따라 봉사망건설을 계획하여

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이미 건설하여놓은 봉사망을 잘 꾸려야 한다.

제71조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업부문 작업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 로보토화하며 식료상점, 식당에 랭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기계공업지도기관, 상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상업설비, 비품생산기지를 꾸리고 상업시설의 현대화에 필요한 계산, 랭동, 판매설비, 진렬도구 같은 설비, 비품을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72조 지방정권기관과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망의 업종별 특성과 규모에 맞게 간판, 전기장식 등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 설치하여야 한다.

제73조 국가계획기관과 노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상업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74조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봉사건물과 설비 같은 것을 정확히 등록하고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상업봉사건물과 구조물, 설비 같은 것을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의 승인없이 다른 목적에 리용할수 없다.

제75조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컴퓨터 같은 것을 받아들여 상업경영을 현대화하여야 한다. 상업부문에서는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제때에 받아들여야 한다.

제76조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을 현대화하고 상품을 정확히 계량하여야 한다. 계량수단은 정기적인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77조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부문의 노동정량을 바로 정하며 상업일군들속에서 기술학습을 정상화하여 그들의 기술시능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78조 상업과학연구기관은 상업과학기술발전계획에 따라 과학연구사업을 전망성있게 하며 상업부문에서 제기되는 긴절한 문제를 푸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상업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실험기구, 시약 같은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9조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보수체계를 세우고 정상적으로 정비, 보수하여야 한다.

제9장 상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80조 상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상업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상업부문에 대한 지도사업과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 제81조** 상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상업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상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상품류통과 인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책임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상점, 식당, 봉사소를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활동을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 한다.
- 제82조**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상품류통계획을 비롯한 상업부문 계획을 인민경제발전 계획에 맞게 세우고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상품생산, 공급계획은 마음대로 삭감조절할수 없다.
- 제83조**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에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고 류통비를 체계적으로 낮추며 재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제84조** 중앙상업지도기관과 해당 교육기관은 상업부문의 기술자, 전문가양성체계를 바로세우고 이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 제85조** 상업지도기관과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부문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
- 제86조**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시장을 꾸리고 잘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시장관리운영에 대한 지도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이 한다.
- 제87조** 상업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상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상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상품류통과 봉사활동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88조** 상품을 계획과 계약에 따라 공급하지 않고 비법적으로 다른 용도에 썼을 경우에는 계획수행평가를 하지 않으며 위약금을 물리거나 거래한 상품과 돈을 몰수한다.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점, 식당, 봉사소는 운영을 중지시키고 벌금을 물린다.
- 제89조** 이 법을 어겨 상품류통과 봉사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정법

주체86(1997)년 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4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

주체94(200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37호로 수정보충

제1장 량정법의 기본

제1조(량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정법은 량곡수매와 보관, 가공, 공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량정사업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량곡의 계획적소비원칙)

량정사업은 식량을 비롯한 량곡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량정사업체계를 바로세우며 량곡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도록 한다.

제3조(량정부문 성과의 공고화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정확한 량정정책에 의하여 인민적인 식량공급제도가 마련되었으며 량정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꾸려졌다.

국가는 량정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나간다.

제4조(량곡수매원칙)

량곡수매를 잘하는것은 량곡원천을 확보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량곡수매를 유일적으로 하며 량곡수매에서 당사자들의 이익을 결합시키면서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도록 한다.

제5조(량곡보관원칙)

량곡보관을 책임적으로 하는것은 량곡의 손실을 없애기 위한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량곡보관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을 갖추고 량곡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하도록 한다.

제6조(량곡가공원칙)

량곡가공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질 좋고 영양가 높은 식량을 비롯한 량곡가공제품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과업이다.

국가는 량곡가공시설을 현대화하며 량곡가공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량곡공급원칙)

량곡을 책임지고 공급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시책이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식량을 제때에 공급하고 공업원료와 집집승먹이를 계획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

제8조(량곡예비조성원칙)

국가는 예비량곡을 계획적으로 조성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량곡절약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9조(량정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량정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량곡수매

제10조(량곡수매조직)

량곡수매는 생산된 량곡을 국가가 사들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량정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량정기업소는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량곡을 제때에 수매하여야 한다.

제11조(량곡수매방법)

량곡수매는 계획수매와 자유수매로 나누어 량정기관, 기업소가 한다. 그러나 공민이 가지고있는 량곡에 대한 자유수매는 해당 기관, 기업소에 위탁하여 할수 있다.

제12조(량곡수매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은 해마다 량곡수매계획을 세워야 한다.

량곡수매계획은 생산할 량곡가운데서 생산자가 소비할 량곡을 내놓고 수매하는것으로 세워야 한다.

제13조(량곡생산정형의 장악)

농업지도기관과 통계기관, 량정지도기관은 량곡생산정형을 대상별, 곡종별로 장악하여야 한다.

량곡을 생산하는 토지를 사금채취같이 다른 목적에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리용계약에 따르는 량곡을 해당 단위에 넘겨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량곡을 제때에 등록하고 해당 기관에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량곡수매대상)

량곡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의 수매, 자체소비와 관련한 문건을 만들어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수매계획에 따르는 량곡을 먼저 수매시켜야 한다.

부엽지, 원료기지, 실습지 같은데서 생산한 량곡은 용도별 계획과 정해진 기준에 따르는

소비량을 내놓고 나머지를 량정기관에 수매시켜야 한다. 그러나 량곡을 수매시키지 않게 된 경우에는 생산한 량곡을 해당 지방정권기관에 등록하고 국가량곡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정해진대로 소비하여야 한다.

제15조(량곡의 계량)

량정기업소는 량곡을 정확히 계량하여 수매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량곡계량수단을 수요대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량곡의 잡질률, 물기률)

량곡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매하려는 량곡의 잡질률과 물기률을 정한 기준아래로 보장하여야 한다.

량정기관, 기업소는 수매하는 량곡의 잡질률과 물기률을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제17조(량곡의 품질검사)

수매량곡에 대한 품질검사는 국가품질감독기관이 한다.

국가 품질감독기관의 위임에 따라 량정기관도 품질검사를 할수 있다.

품질검사에는 량곡을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을 립회시킨다.

제18조(수매량곡의 포장)

량곡은 포장한것으로 수매한다. 그러나 곡종에 따라 포장하지 않고 수매할수 있다.

량곡을 수매시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을 정해진 용기에담고 규격대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3장 량곡보관

제19조(량곡의 장악)

량곡보관은 량곡의 손실을 막으며 그것을 질량적으로 보존하는 사업이다.

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을 정확히 장악하고 그 특성과 용도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량곡의 보관기관)

량곡보관은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수매한 량곡을 국가창고에 실어나를 때까지의 보관은 내각이 정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할수 있다.

제21조(량곡창고의 배치)

중앙량정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량곡창고를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한곳에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한 량곡창고를 없애려 할 경우에는 중앙량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2조(량곡창고의 건설)

국가계획기관과 량정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량곡보관량에 맞게 량곡창고를 건설하며 량곡을 신고부리는 장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창고구역에 울타리, 도랑 같은 량곡보호구조물을 정해진대로 만들며 량곡창고구내길과 량곡을 신고부리는 장소를 포장하여야 한다.

제23조(보관량곡검사, 국가예비량곡보관)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관하는 량곡을 정상적으로 검사하고 바꾸어쌍기와 쌀벌레잡이소독, 짐승피해막이 같은 것을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화학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쌀벌레잡이약품 같은것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보관하는 국가예비량곡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새로 생산한 량곡과 바꾸어야 한다.

제24조(량곡창고구역보호)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창고구역에 량곡보관과 관련이 없는 건물을 짓거나 폭발성, 인화성물질을 두지 말며 량곡창고에 불끄기시설과 기재를 갖추어놓아야 한다.

량곡창고구역에서는 불을 일으킬수 있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5조(량곡보관용기, 보호재)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량곡보관에 필요한 마대, 가마니, 방수포 같은 용기와 보호재를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보관용기를 정해진대로 관리하며 그 회수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제26조(량곡의 수송)

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을 유개시설이 갖추어진 수단으로 실어날라야 한다.

유개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수단으로 량곡을 실어나를 경우에는 방수포 같은것을 씌워 눈비를 맞지 않게 하여야 한다.

역한 냄새가 나는 물질이나 독성물질 같은것을 량곡과 함께 실어나를수 없다.

제27조(량곡의 입출고, 실사)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창고에서 량곡의 입출고를 정해진대로 하며 현물에 의한 경상정리를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실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그 정형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야 한다.

량곡의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 따라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량곡경비조직)

량곡을 보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경비체계를 바로 세우고 경비조직사업을 짜고 들어 사건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중요량곡경비초소를 내오거나 없앨수 없다.

제4장 량곡가공

제29조(량곡가공의 기본요구)

량곡가공은 식량을 먹기 편리하게 하고 공업원료로 리용되는 량곡을 용도에 맞게 만드는 사업이다.

량곡을 가공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을 인민들의 기호와 영양학적요구, 공업부문의 수요대로 가공하여야 한다.

제30조(량곡가공기업소)

국가량곡가공은 량정기업소가 한다. 그러나 량정지도기관의 승인밑에 기관, 기업소, 단체도 국가량곡을 가공할 수 있다.

제31조(량곡가공능력의 조성)

중앙량정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량곡을 가공하는 기업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곡종별 수요에 따라 가공능력을 조성하여야 한다.

량곡가공기업소를 없애려 할 경우에는 도정권기관 또는 중앙량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2조(출미률, 실수률)

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앞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량곡가공공정과 설비를 개조하여 량곡의 가공손실을 없애고 출미률과 실수률을 높여야 한다.

국가품질감독기관과 중앙량정지도기관은 해마다 량곡의 출미률과 실수률기준을 정해주어야 한다.

제33조(가공제품의 질제고)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가공제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

량곡가공시설과 제품은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가공부산물회수)

량곡을 가공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가공과정에 나오는 쌀겨, 강냉이눈을 회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따로 정해진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강냉이눈을 회수하지 않을수 있다.

제35조(가공시설의 보수)

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가공시설에 대한 계획적예방보수체계를 세우고 보수주기에 따라 보수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보수한 량곡가공시설은 대상에 따라 해당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6조(가공설비생산기지)

중앙량정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량곡가공설비, 부속품생산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제37조(가공전력보장)

전력공급기관은 량곡가공에 필요한 전력을 수요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장 량곡수급과 공급**제38조(량곡수급지휘)**

량곡수급과 공급은 량곡에 대한 지역사이의 소비균형을 맞추고 인민들의 식량과 인민경제부문에 요구되는 량곡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량정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량곡수급지령체계를 세우고 량곡수급지휘에서 기동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며 량곡공급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9조(국가량곡종합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량정지도기관은 량곡생산량과 수매량에 기초하여 식량년도 국가량곡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가량곡종합계획에 대한 승인은 내각이 한다.

제40조(량곡수급계획)

중앙량정지도기관은 국가량곡종합계획에 따라 량곡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41조(량곡수급기지)

중앙량정지도기관과 도정권기관은 량곡수급계획에 따르는 량곡수급기지를 바로 정하고 주고받는 지역을 맞물려주어야 한다.

해당 지방정권기관과 량정기업소는 소비지로 보내게 된 량곡을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42조(량곡운수수단 보장)

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량곡을 제때에 수송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은 식량수송이 긴장할 경우 관할지역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운수수단을 동원시킬수 있다.

제43조(량곡공급기준량)

로동자, 사무원의 식량은 로동의 힘든 정도와 직종, 대상에 따라 공급기준량과 곡종을 정

하여 공급한다.

식량공급 기준량과 곡종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44조(식량공급대상의 등록)

중앙량정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식량공급대상을 정기적으로 정확히 등록하고 식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량공급대상변동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여해당 량정기관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45조(식량공급소의 배치)

중앙량정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식량공급대상인원의 분포상태, 지역적특성에 따라 식량공급소를 배치하여야 한다.

식량공급소는 식량공급시설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식량계량을 정확히 하며 식량공급에서 봉사성을 높여야 한다.

제46조(부업지, 비알곡생산단위의 종업원식량)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부업지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식량은 자체 생산한 량곡으로 보장한다. 남새, 공예작물 같은 비알곡작물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종업원식량을 해당 단위에서 보장할수 없는 경우 량정기관이 공급한다.

제47조(공업원료, 집집승먹이)

량정기관, 기업소는 공업원료, 집집승먹이량곡을 용도별 계획에 따라 해당한 곡종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량곡재고량과 용도, 소비기준을 따져보고 필요한 량만큼 공급하여야 한다.

제48조(량곡절약)

량곡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량곡을 낭비하지 말고 절약하여야 한다.

제6장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9조(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량정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량정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0조(량정사업에 대한 지도)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량정 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량정지도기관은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량정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 지도하여야 한다.

제51조(량정지도기관의 임무)

량정지도기관은 량곡수매, 보관, 가공, 공급, 소비정형을 늘료해하고 량곡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52조(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자, 전문가양성)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량정지도기관, 교육기관은 량정 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량정부문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53조(향정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량정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수매용상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54조(량정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량정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 기관이 한다.

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량정사업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5조(손해보상)

정해진 출미률기준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소유의 량곡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설비의 운영을 중지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6조(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

이 법을 어겨 량정사업과 인민생활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

주체81(1992)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9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호로 수정보충
주체88(1999)년 9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12호로 수정보충
주체90(2001)년 10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26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8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35호로 수정보충

제1장 산림법의 기본

제1조(산림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은 산림조성과 보호, 산림자원 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산림정책을 관철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산림과 그 소유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산림에는 산림토지와 그안에 있는 동식물자원이 속한다.
산림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3조(산림의 분류)

산림은 그 사명에 따라 특별보호림, 일반보호림, 목재림, 경제림, 땔나무림으로 나눈다.

제4조(산림건설총계획의 작성과 실행원칙)

산림건설총계획은 산림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조성하고 보호관리하며 산림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산림건설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이다.
국가는 산림건설총계획을 적극적이며 동원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정확히 실행하도록 한다.

제5조(산림조성원칙)

산림조성을 전군중적으로 하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이 산림조성사업에 적극 참가하고 산림조성전문기업소들의 역할을 높여온 나라를 수립화, 원림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담당림을 정하여주고 책임적으로 조성관리하도록 한다.

제6조(산림보호원칙)

국가는 산림보호체계를 세우며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산림보호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7조(산림자원의 리용원칙)

국가는 산림자원리용질서를 바로세우고 산림자원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8조(산림경영의 현대화, 과학화원칙)

국가는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산림경영의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산림경영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인다.

제9조(산림경영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산림경영분야에서의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를 적극 발전시킨다.

제2장 산림조성**제10조(전망적인 산림조성)**

산림조성은 나라의 번영을 위한 자연개조사업이다.

국토환경보호기관, 립업기관과 담당림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아카시아나무같이 좋은 수종의 산림면적을 끊임없이 늘여 산림풍경을 개선하며 산림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이고 단위당 축적을 늘일 수 있도록 산림조성사업을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식수월간)

국가는 산림조성을 적기에 균중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하여 식수월간을 정한다.

식수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2조(나무심기, 심은나무가꾸기)

국가계획기관은 나무심기, 심은나무가꾸기계획을 바로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정확히 주어야 한다.

나무심기, 심은나무가꾸기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무심기를 정해진 기간안에 끝내며 심은나무가꾸기를 책임적으로 하여야한다.

제13조(산림조성설계작성)

나무심기설계는 산림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이 작성한다.

산림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은 산림조성지역의 립상과 기후, 토양조건을 조사분석하고 쓸모없는 산림을 좋은 수종의 산림으로 개조하여 목재림, 섬유원료림, 기름나무림, 산과실림, 딸나무림, 풀판 같은것을 조성할수 있게 나무심기설계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나무모생산과 나무종자수매)

국토환경보호기관, 립업기관과 담당림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육종체계와 체종체계를 바로 세워 벌레가 끼지 않고 빨리 자라면서도 모양이 좋은 나무품종을 육종하며 나무모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나무모생산을 늘여야 한다.

나무종자의 수매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립업기관이 한다.

제15조(나무종자와 나무모의 검사)

국토환경보호기관, 립업기관과 담당림을 가지고있는 기관은 산림조성에 쓸 나무종자와 나

무모를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나무종자와 나무모는 산림조성에 쓸수 없다.

제16조(나무심기설계)

나무심기는 나무심기설계에 따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나무심기설계의 요구대로 나무를 심어야 한다.

제17조(심은나무의 사름률보장)

나무를 심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심은나무가꾸기, 덧심기를 진행하여 사름률을 정해진 기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약초와 산나물재배)

국토환경보호기관, 립업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할 산림구역에 약초와 산나물을 계획적으로 심고 가꾸어 산림부원을 늘여야 한다.

제3장 산림보호

제19조(산림보호관리업무)

산림을 잘 보호하는것은 산림자원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산림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산림보호관리사업에 주인공이 참가하여야 한다.

제20조(산불방지기간)

국가는 산불피해를 막기 위하여 산불방지기간을 정한다.

산불방지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1조(입산, 불놓이허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산림토지의 리용, 산림부원의 채취 같은 목적으로 산림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구역과 그 변두리에서 불을 놓으려 할 경우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없이 불을 일으킬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산림구역에 들어갈수없다.

제22조(산불감시 및 산불끄기)

국토환경보호기관, 립업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불막이선을 치고 잘 관리하며 산불감시체계를 세워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산불이 일어난 지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불끄기에 필요한 인원과 설비, 수단을 의무적으로 동원하며 산불을 제때에 꺼야 한다.

제23조(산림병해충구제)

국토환경보호기관, 립업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병해충예찰체계를 세우며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해당 기관의 허가없이 병해충이 발생한 산림구역에서 나무와 풀, 흙 같은것을 내갈수 없다.

제24조(산림병해충구제수단의 연구도입)

산림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병해충을 없애기 위한 효능높은 농약과 생물학적방법, 현대적인 기술장비 같은것을 연구도입하여야 한다.

제25조(산림구역에서 건설, 채벌, 채취작업)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허가없이 산림구역에 도로, 건물, 시설물 같은것을 건설하거나 나무를 찍을수 없으며 산림구역에서 산을 일구거나 돌을 캐거나 흙을 파내여 산림보호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6조(사방야계공사, 그 시설물의 보수정비)

국토환경보호기관, 립업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더기비, 사태 같은 자연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할수 있게 사방야계공사를 계획적으로 하고 그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제27조(전형적인 산림생태지역 보존과 동식물자원보호)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립업기관은 자연보호림구에서 전형적인 산림생태지역을 보존하고 희귀한 동식물자원을 보호증식시켜야 한다.

자연보호림구가 아니라도 동식물자원을 보호증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입산금지구역을 정하고 일정한 기간 해당 산림구역에서 짐짐승의 방목과 동식물의 사냥, 채취를 금지시킬수 있다.

제28조(유용동식물의 보호증식)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산림구역에서 리로운 동물과 식물이 잘 자랄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고 그것을 적극 보호증식시켜야 한다.

제4장 산림자원의 리용

제29조(산림자원의 계획적, 효과적리용)

산림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립업기관은 산림자원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 장악하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산림토지의 리용허가)

산림토지의 리용허가는 내각 또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이 한다.

내각과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산림토지를 리용하려는 목적, 규모 같은것을 따져보고

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순환식채벌에 의한 목재생산)

순환식채벌은 목재자원을 늘이고 통나무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합리적방도이다.

해당 기관은 산림자원탐사자료에 기초하여 순환식채벌총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실행하며 목재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

제32조(나무베기허가)

나무베기허가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립업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립업기관은 국가로부터 나무베기계획을 받은 단위에만 나무베기허가를 하여야 한다. 산림조성과 관리, 산림과학연구, 땔나무 같은 주민들의 일부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나무의 베기 허가는 나무베기계획이 없이도 할수 있다.

제33조(나무베기허가사항준수)

나무베기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나무를 벨수 없다.

나무베기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무베기허가중에 지적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4조(벤 나무의 반출)

벤 나무는 해당 기관이 발급한 나무반출증에 의해서만 실어갈수 있다.

국가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통나무는 나무반출증이 없이도 실어갈수있다.

제35조(나무, 잔디, 약초, 산열매의 채취)

나무, 잔디, 약초, 산열매 같은 산림자원을 뜯거나 채취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으며 정해진 시기, 장소, 방법, 수량을 지켜야 한다.

제36조(산림토지, 벤 나무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리용허가를 받은 산림토지, 국가계획에 따라 벤 나무 같은 것을 해당 용도에 맞게 리용하며 그것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개별적공민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제37조(산짐승, 산새의 사냥)

산짐승, 산새를 사냥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허가를 받으며 제정된 사냥질서를 지켜야 한다.

제38조(산림자원의 수출입)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통나무와 그 1차가공품, 산짐승과 산새, 산림식물의 종자와 표본같은것을 다른 나라로 내가려 하거나 우리 나라에 들여오려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들어오는 새품종나무의 재배와 관련한 과학기술적문제를 정확히 알아보아야 한다.

제5장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9조(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장악지도)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내각이 한다.

내각은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전국의 산림경영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0조(산림건설총계획에 따르는 산림경영)

국가는 산림경영사업을 산림건설총계획에 따라 하도록 한다.

전국적인 산림건설총계획의 비준은 내각이 한다.

제41조(산림자원의 리용, 변동정형등록)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산림자원을 조사하고 그 리용, 변동정형을 정상적으로 등록하며 산림자원의 리용사업을 조직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산림을 자체로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내야 한다.

제42조(산림경영사업조건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농업지도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산림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산림부문의 교육, 과학연구사업)

산림부문의 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를 더 많이 키워 내며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어야 한다.

제44조(산림경영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나무 한대를 베고 열대를 심는 원칙에서 산림을 조성하고 산불, 병해충, 사태, 산림토지개간, 람도벌에 의한 피해를 막으며 산림토지리용, 나무베기, 통나무소비 같은 산림자원리용질서를 바로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5조(산림자원리용중지)

나무심기계획과 심은나무가꾸기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거나 심은 나무의 사름률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리용을 중지시킨다.

제46조(원상복구, 벌금, 손해보상금, 몰수)

허가없이 산을 일구었거나 나무를 찍은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벌금 또는 피해보상금을 물리며 비법적으로 얻은 생산물, 위법행위에 리용된 도구와 수단은 몰수한다.

제47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나무심기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거나 심은 나무의 사름률을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허가없이 산림자원을 람벌, 채취하였거나 산불을 일으킨것 같은 산림조성, 보호, 리용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

주체66(1977)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9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6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3-1호로 수정

제1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토지는 전체 농민들이 조선로동당과 인민정권의 현명한 령도밑에 《발같이하는 땅은 발같이하는 농민에게로》라는 원칙에서 실시한 위대한 토지 개혁법령에 의하여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이룩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방침이 철저히 수행되어 농촌에서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와 온갖 착취관계가 영원히 없어졌으며 사회주의적토지소유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었다.

국가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룩한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전국적 농업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에는 토지개혁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혁명선열들의 붉은피가 스며있으며 외래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인민들의 혁명정신이 깃들어있다.

국가는 안팎의 온갖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인 토지를 보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4조 국가는 토지개혁에서 이룩한 성과와 사회주의적토지소유관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공고발전시키며 국토를 보호개발하고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5조 국가는 토지보호, 토지건설사업 등 국토를 개변하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업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한다.

제6조 국가는 우리나라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국토를 개발하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특히 토지를 개량하며 그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양성한다.

제7조 국가는 토지를 리용하는데 맞게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림토지, 산업토지, 수역토지, 특수토지로 가르고 관리한다.

토지관리와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의 지도밑에 국토관리기관이 통

일적으로 한다.

제8조 토지는 우리 인민의 귀중한 생활밀착이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나라의 재부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 국가기관일군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토지를 잘 보호관리하고 알뜰히 다루도록 한다.

제2장 토지소유권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제10조 국가소유토지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토지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제11조 협동단체소유토지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토지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12조 국가는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농업경리제도의 발전과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의 토지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킬수 있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오직 국가만이 지배할수 있으며 그것을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협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이 여러 방면으로 리용할수 있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리용은 협동농장규약에 의하여 20~30평으로 한다.

제3장 국토건설총계획

제14조 국토건설총계획은 국토를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고 정리미화하며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를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국토건설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이다.

국가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높일수 있도록 국토건설총계획을 적극적이며 동원적으로 세우고 그를 철저히 실현하도록 한다.

제15조 국토건설총계획을 세우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국토건설과 자원개발에서 농경지를 침범하지 말며 그것을 극력 아끼고 보호하도록 한다.
2. 도시의 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며 작은 도시형태로 많이 건설하도록 한다.
3. 나라의 각이한 지대들의 기후풍토적특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4. 나라의 인민경제발전방향과 각이한 지역들의 경제발전전망에 맞게 과학적으로 세우도

록 한다.

제16조 국토건설총계획의 전망기간은 30~50년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전망기간을 이보다 짧게 정할수도 있다.

제17조 국토건설총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잘 꾸리며 보호하기 위한 대책
2. 토지를 정리, 개량하고 보호하며 새땅을 얻어내며 간석지를 개간리용하기 위한 방향과 대책
3. 산림조성방향과 보호 및 그 리용과 리로운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4. 강하천, 호소, 저수지의 건설 및 정리방향,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물들의 배치 및 물의 종합적리용대책
5. 교통운수, 전기, 체신망과 그 시설물의 합리적배치
6. 지하자원의 개발구역과 공업, 농업기업소들을 배치할 위치와 규모
7. 도시와 마을, 휴양지, 료양지의 위치와 규모, 명승지, 천연기념물 및 문화유적유물의 보호대책
8. 연안, 령해를 종합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방향과 연안을 아름답게 정리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9. 공해현상을 미리 막기 위한 대책

제18조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국토건설총계획은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지역국토건설총계획은 도인민회의 또는 도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제4장 토지보호

제19조 국가는 강하천정리, 산림조성 등 토지보호사업을 힘있게 벌려 토지류실을 막으며 나라의 물질적부를 늘이고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킨다.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토지리용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토지보호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20조 강하천정리사업은 큰물피해로부터 농경지를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강하천건설을 해당 지대의 자연지리적조건과 특성에 맞게 관개공사와 병행하여 진행하며 큰 강과 중소하천정리를 다같이 밀고나간다.

제21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은 강하천정리사업을 설계에 근거하여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큰 강과 중요강하천의 정리와 관리는 국토관리기관이 하며 중소하천의 정리는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이 한다.

강하천정리는 큰물피해가 심한 중요산업지구, 주민지구, 농경지보호면적이 많은 지대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 국토관리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해마다 국가가 정한 시기에 담당하고있는 강하천의 변동정형과 제방, 시설물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등록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3조 국토관리기관은 강하천의 통일적인 보수관리체계를 세우고 강하천보수관리전문기업소의 역할을 높여 보수관리를 전문화, 과학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은 강하천과 기술상태를 정상적으로 검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4조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무더기비에도 토지가 류실되지 않도록 강바닥파기와 강줄기바로잡기, 제방공사, 호안공사, 옹벽공사, 모래잡이언제공사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국토관리기관은 강하천, 호소, 저수지와 제방을 비롯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곳에 보호구역을 정한다.

보호구역안에서는 강하천의 제방과 그 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6조 강하천과 호소, 저수지에 더러운 물, 독이 있는 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내려보내거나 오물을 버릴수 없다.

제27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및 지방정권기관은 강하천의 종합적인 리용계획을 세우고 물을 관개용수, 수력발전, 공업용수, 음료수, 강하운수, 담수양어, 류벌 등 인민경제 부문과 근로자들의 문화휴식에 다방면적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업소는 논밭이 물에 잠길수 있는 지대에 고인물빼기시설을 완비하며 그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29조 국영 및 협동농장은 토지가 류실되지 않도록 강기슭의 논밭머리에 벼들을 심거나 돌담을 쌓으며 산경사지의 발머리에는 돌림물길을 만들어야 한다.

제30조 산림건설사업은 토지를 철저히 보호하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사업이다.

국가는 토지류실을 방지하며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이기 위한 산림건설사업을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한다.

제31조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설계에 따라 해당 지대의 자연경제적조건에 맞게 제지림, 기름나무림, 섬유원료림, 산과실림, 땃나무림 등을 조성하여 림상

을 개조하며 빨리 자라고 쓸모있는 수종을 배치하고 밀식하며 침엽수 및 활엽수의 혼성림을 만드는 등 산림의 단위당 축적을 높여야 한다.

산림설계기관은 이에 맞게 산림설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32조 국토관리기관은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조직진행하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담당구역을 설정한다.

기관, 기업소, 학교, 단체 및 국민들은 봄과 가을에 나무심기에 적극 참가하며 산림을 잘 보호관리하여 온 나라의 산을 푸른 락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33조 국가는 목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목재에 대한 기관, 기업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림산공업림과 기관, 기업소의 자체림을 설정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여기에 나무를 계획적으로 심고 잘 관리하여 튼튼한 목재생산기지를 꾸려야 한다.

제34조 국가는 농촌주변의 산림을 울창하게 만들며 산림자원과 땃나무에 대한 협동농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협동농장림과 땃나무림을 설정한다.

협동농장은 여기에 나무를 많이 심고 보호관리하면서 이를 무상으로 리용한다.

제35조 국토관리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조성전망계획에 맞게 양묘장을 꾸리며 나무모생산을 앞세워야 한다.

양묘장에서는 인민경제적의의가 크고 빨리 자라는 나무모를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제36조 산림은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요구에 맞게 전망적으로, 계획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산에서 나무를 벨 때에는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 나이먹은 나무, 다 자란 나무, 여러 가지 피해를 받은 나무를 먼저 베야하며 통나무의 순환식채벌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무를 벨 구역과 끌어내린 길에는 나무를 제때에 심어야 한다.

제37조 국가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가 있는 지역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림을 정한다.

산림에 대한 학술연구를 위하여 자연보호림구를 정할수 있다.

특별보호림과 자연보호림구안에서는 나무를 벨수 없다.

제38조 국토관리기관은 산불에 대한 감시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곳에 산불막이선을 치거나 인원과 설비의 동원체계를 세우는 등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39조 국토관리기관은 송충을 비롯한 병해충에 의한 산림의 피해를 막을수 있도록 산림을 제때에 소독하며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는 유익한 동물을 보호증식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40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방풍림, 사방림, 위생풍치림, 수원함양림 등 보호림을 조성하며 사방야계구조물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토를 보호하며 나라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여야 한다.

제41조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에서 농경지를 비롯한 국토와 자원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버력처리장과 미광침전지를 먼저 건설하여야 하며 농경지 또는 건물과 시설물밑에서 지하자원을 캐 때에는 땅이 내려앉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탄광, 광산들에서는 버력과 박토를 버린 자리와 지하자원을 캐 자리를 제때에 정리하여 농경지 또는 림지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토지건설

제43조 국가는 토지건설사업을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다그치고 농업생산을 늘이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한다.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건설사업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4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수리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었다.

국가는 논수리화체계를 공고발전시키면서 밭관개체계를 완성한다.

제45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저수지를 건설하고 저수지제방을 더욱 보강완비하며 지하수를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등으로 더 많은 물을 확보하며 관개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정상적으로 하여 물의 도중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 토지정리사업은 새땅을 많이 얻어내어 알곡생산을 늘이며 농촌정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정리사업을 년차별 토지정리계획과 토지정리설계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제47조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정리에서 건물과 시설물을 산기슭으로 규모있게 옮기며 필요없는 논두렁과 밭취뜰을 없애고 논밭을 크고 규모있게 만들며 여기에 맞게 관수로, 배수로, 포전도로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48조 논밭을 기름지게 개량하는 것은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군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토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의 비옥도 및 매 토층에 대한 분석사업과 토양조사사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필지별

토층표본과 토양분석표, 토지대장을 갖추고 과학적리치에 맞게 토지를 개량하여야 한다.

제49조 다락밭을 만드는 것은 농작물의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협동농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탈진 밭을 다락밭으로 만들며 여기에 반드시 관수체계와 배수체계를 세워야 하며 짐나르기를 적극 기계화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 국가는 새로운 경지면적을 늘이며 나라의 면모를 크게 전변시키는 간석지개간사업에 큰 힘을 넣는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지리적조건이 좋고 개간에 유리한 지대의 간석지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개간하여야 한다.

개간된 간석지에는 시루식관수체계, 화학적방법 등을 적극 도입하며 물갈아넣기를 하여 소금기를 빨리 없애고 농작물을 심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닷물에 의하여 농경지와 소금밭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 지대의 특성에 맞게 해안방조제를 건설하며 그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2조 국가는 도시와 마을을 현대적이며 문화적으로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준다.

지방정권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적생활문화의 요구에 맞게 도시와 마을에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 도로 등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의 모든 지역을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방면에 걸쳐 골고루 발전시키도록 도시와 마을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53조 도시경영기관은 도시와 그 주변에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를 곳곳에 잘 꾸리며 꽃과 나무를 많이 심어 주민들의 훌륭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협동농장은 마을과 그 주변에 과일나무, 기름나무 등을 심어 마을을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

제54조 지방정권기관은 도시와 마을을 어지럽히거나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건물과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물이 완공되거나 건설재료의 채취가 끝나는데 따라 파헤친 자리를 알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제55조 도로는 인민경제동맥의 중요구성부분이며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국가는 나라의 모든 지역들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적연계를 원만히 보장하며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무하는 원칙에서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제56조 도로는 그 규모와 사명에 따라 고속도로와 1급부터 6급까지의 도로로 나눈다.

도로의 건설과 보호관리는 도로의 등급과 사명에 따라 국토관리기관, 도시경영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이 한다.

제57조 나라의 모든 도로는 세멘트, 아스팔트, 돌 등으로 포장하여 로면의 강도를 높이고 전반적도로의 기술상태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 도로의 문화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58조 도로기관은 도로량옆에 주의표식, 지시표식, 금지표식, 거리표식 등 여러 가지 표식물을 문화성있게 설치하여야 하며 길가에 생활력이 강하고 빨리 자라며 쓸모있는 나무와 과일나무 등을 심으며 잔디를 입히고 꽃밭, 문화휴식터를 꾸려 길을 항상 알뜰하게 거두어야 한다.

제59조 국토관리기관과 지방정권기관 및 도시경영기관은 계절별, 로선별, 구간별에 따르는 교통량의 변화상태를 정확히 조사장악하여 도로와 다리를 비롯한 구조물과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계획을 세우고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일정한 구간의 길을 정해주어 책임적으로 늘 보호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은 도로와 그 구조물 및 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길가의 나무를 마음대로 찍는 등 도로보호관리에 지장을 줄수 있는 일을 할수 없다.

제61조 국가는 연안, 령해를 개발하고 정리하며 항만을 새로 건설하고 확장하며 수로를 개척하는 등 연안, 령해건설을 추진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수상운수를 발전시킨다.

연안령해관리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연안, 령해건설을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며 연안, 령해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바다기슭을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

제62조 연안령해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안, 령해의 수산자원을 보호증식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6장 토지관리

제63조 토지관리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국토를 철저히 보호하고 농업토지를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토지를 리용하는 협동농장과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64조 농업토지에는 오직 경작할수 있는 토지가 속한다.

농업토지의 관리는 농업지도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해당 협동농장 및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65조 논밭은 허가없이 묵이거나 버릴수 없으며 논밭을 묵이거나 버리며 농업생산밖의 목

적에 리용하려고 할 때에는 그 규모와 대상에 따라 해당 국토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은 다음 중앙농업지도기관 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항의 경우에 대토확보는 국가계획에 맞물려 할수 있다.

제66조 논밭을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해에 쓸수 있는 면적을 타산하여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논밭을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던 기관, 기업소, 단체가 그 토지를 더 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과종시기전까지 논밭으로 정리하여 해당 농장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67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논밭을 부업지로 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목을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8조 협동농장은 논밭을 경작에 편리하게 서로 바꾸어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상급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9조 주민지구토지에는 시, 읍, 로동자구의 건축용지와 그 부속지, 공공리용지와 농촌건설대지가 속한다.

주민지구토지의 관리는 중앙의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이 한다.

주민지구토지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도인민위원회 또는 내각의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0조 산림토지에는 산림이 조성되어있거나 조성할것이 예정되어있는 산야와 그안에 있는 여러 가지 리용지가 속한다.

산림토지의 관리는 국토관리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산림토지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각 또는 해당 국토관리기관의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1조 국토관리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속에서 산림을 람벌하거나 화전을 일구는 일이 없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2조 산업토지에는 공장, 광산, 탄광, 발전시설 등 산업시설물이 차지하는 토지와 그 부속지가 속한다.

산업토지의 관리는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가 한다.

제73조 산업토지를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는 공장, 기업소와 산업시설물의 부지를 필요이상 넓게 잡아놓고 토지를 람용하는 일이 없도록하며 산업토지의 보호관리사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4조 수역토지에는 연안, 령해, 강하천, 호소, 저수지, 관개용수로 등이 차지하는 일정한 지역의 토지가 속한다.

수역토지의 관리는 대상에 따라 국토관리기관 또는 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수역토지를 개발리용하거나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대상에 따라 내각 또는 국토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5조 특수토지에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문화유적지, 보호구역, 군사용토지 등 특수한 목적에 리용되는 토지가 속한다.

특수토지의 관리는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정권기관 및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군 부대가 한다.

제76조 토지리용을 허가하여준 기관은 새로운 국가적요구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할수 있다.

제77조 국토관리기관은 나라의 모든 토지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등록하며 토지관리 및 리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토지를 국토건설총계획에 의하여 전망성있게 리용하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농업지도기관은 새로 일군 땅과 토지를 정리하여 얻은 땅을 제때에 등록하며 토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의 변동정형을 해당 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79조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서는 토지문건을 갖추고 그것을 철저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0조 토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 국가기관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 국가기관일군들은 토지를 보호하고 건설하며 관리하는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토지보호건설 및 관리질서를 어긴 경우 책임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그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법적책임을 진다.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3

북한농업 동향

북한매체 보도 동향

국내매체 보도 동향

북한매체 보도 동향

1. 농업정책

□ 신년공동사설

- 신년공동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를 게재 (민주조선 12.1.1, 로동신문 12.1.1)

경제부문 주요 내용

- 강성국가건설의 주공전선인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에서 합남의 대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해야 함.

[경공업부문]

- 경공업부문에서는 현대적인 생산기지가 커다란 성과를 내는데 힘을 기울여야 함. 인민의 기호에 맞고 인민의 인정을 받는 질 좋은 경공업제품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함.
- 경공업 부문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북한의 자원과 원료원천으로 해결하며 지방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

[농업부문]

- 현시기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의 해결은 강성국가건설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임.
-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별방지대이건, 산간지대이건 어디서나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함.
- 농산과 축산을 결합하는 고리형순환생산체계와 우리식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농업생산 목표수행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설비를 제때에 보장해야 함.

- 인민생활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대적인 축산기지와 가금기지, 대규모 과수농장과 양어기지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야 함.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

- 부족한 전력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함.
- 전력공업 부문에서는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며, 기존의 발전소의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여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야 함.

[석탄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철도부문]

- 화력발전소와 화학공장, 금속공장에 필요한 석탄을 보장하는데 힘을 집중하며 새 탄밭을 적극 개발해야 함.
- 주체철 생산능력을 더 높이고 북한의 연료에 의한 고온공기연소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압연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함.
- 철길을 일신시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철도수송능력을 높이고 철도의 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해야 함.
- 주체비료생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생산능력을 높이며, 비닐론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화학섬유, 합성수지생산을 정상화해야 함.

[과학기술부문]

- 최신식CNC공작기계생산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개척정신, 창조기풍으로 기술장비수준을 높은 단계로 올려야 함.
-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체의 새 기술, 새 제품개발능력을 높이며 경제의 면모를 기술집약형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함.
- 과학연구기관에서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기초기술과 중요부문 기술공학발전에 더 큰 힘을 넣으며 세계 일류 수준의 연구성과를 더 많이 배출해야 함.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 1995~2012

연도	경 제 전 반	농 정 방 향
1995	· 혁명적 경제 전략의 관철을 통한 인민생활의 획기적 향상	· 협동적 소유, 전인민적 소유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고 주체농법의 관철로 알곡생산목표 달성
1996	· 혁명적 경제전략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 인민생활 향상 및 자립적 경제토대 구축	· 주체농법에 따라 농사를 주인답게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에서 결정적인 전환 달성
1997	· 자력갱생의 구호 하에 경제적 밀천을 최대한 동원이용하여 먹는 문제를 해결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토건설로 부강한 조국의 토대 구축	· 주체농법에 따라 농민들의 지향, 자체의 실정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고 쌀 풍년, 고기풍년 마련. 초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초식가축 사육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계속 전개
1998	· 경제건설은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할 주전선임. 농업과 석탄공업, 전력공업과 철도운수, 금속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고 민족경제의 위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함.	· 농업생산의 증대, 먹는 문제 완전 해결 - 종자문제해결, 2모작 확대 - 농업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민의 의사와 자체 실정에 맞게 수행 - 초식가축을 기본으로 축산업의 대대적인 발전
1999	· 경제건설은 강성대국 건설의 가장 주요한 과업. 정치사상적, 군사적 위력에 경제적 힘이 밀받침될 때 명실 공히 강성대국 지위에 올라설 수 있음.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경제전반을 자기의 궤도에 확고히 올려 세우며 인민생활의 안정, 향상	· 농사에 전 국가적인 힘을 넣어 먹는 문제 해결 - 감자농사혁명 - 적지적작·적기적작 원칙에서 농업구조개선 - 2모작 확대와 종자혁명의 계속적 추진 - 토지정리사업의 대대적 전개
2000	· 올해 보다 큰 힘을 넣어야 할 전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임. · 당의 경제정책을 옹호 관철해 나가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하나씩 추켜세워야 함. 모든 부문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여 경제적 타산을 앞세우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여야 함.	· 주체농법의 철저한 관철 -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 2모작 확대, 초식가축 사육 증대 - 양어사업을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 - 토지정리와 산림조성을 비롯한 국토관리사업의 지속적 추진 - 개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의 적극적인 추진
2001	· 경제건설의 중심 과제는 경제토대를 정비하고 경제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개선하는 것임. ·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가장 중요한 부문은 전력, 석탄, 금속 및 철도운수부문임. -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고, 석탄생산 증대 - 금속공업의 설비 현대화를 통해 철강재 생산의 활성화	· 농업생산을 늘이는 것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정적 고리임. -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의 지속적 추진 - 2모작 면적의 확대 - 메기를 비롯한 생산성이 높은 물고기를 위주로 양어 확대 - 현대적인 축산기지 건설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계속), 1995~2012

연도	경 제 전 반	농 정 방 향
	- 철도운수를 정비 보강하여 증가하는 수송 수요 보장 - 경공업부문에서는 1차 소비품과 기초식품의 생산 증대	-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과 개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2002	- 제도 제일주의 구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촉진하여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임. - 채취,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 -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 - 경제 관리의 개선 및 완성 - 제도 제일주의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과 교육사업 발전에 전 국가적인 관심 증대	-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여 농업생산 증대 -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과 개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의 조속한 완료
2003	-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게 경제를 관리 운영해 나가야 함. - 국방공업을 중시하고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바탕으로 한 인민경제활성화 - 경공업의 현대화를 통한 인민소비품의 대대적인 생산 -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진기술을 배우고 최첨단과학기술을 받아들임 - 모든 부문, 단위에서 현대화의 뚜렷한 전망 목표를 세우고 기술개건사업을 추진해나감.	-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함. -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며 혁명의 수도 평양을 새 세기 맛이 나게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려야 함.
2004	- “경제와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라의 국력을 백방으로 다지자!”라는 구호를 들고 힘찬 투쟁을 벌여야 함. -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에 주된 힘을 넣어야 함. - 화학발전소와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중소형발전소들을 쓸모 있게 건설하여 전력생산을 높여야 함. - 석탄공업과 금속공업발전에 힘을 집중하고, 철도운수부문에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체계적으로 세워나가야 함.	-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하여 종자혁명을 기본고리로 감자혁명과 두벌농사를 발전시켜야 함. - 콩농사와 과수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고, 축산기지들과 개건현대화된 닭공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함. - 토지정리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백마-철산 물길공사를 다그쳐야 함. - 평양시와 도, 시, 군 소재지들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함.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계속), 1995~2012

연도	경 제 전 반	농 정 방 향
2005	-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은 농업 전선임. -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의 문제해결은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 있음. - 전체 인민은 혁명적 각오로 농업부문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보장해주어야 함. -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을 발전시키며, 대규모수력발전소 건설을 앞당기고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며 화력발전설비들의 능력을 높여 전력생산을 늘여야 함. - 경공업부문에서는 경공업공장들을 개건현대화하고 갖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공급해야 함. - 평양시를 더 잘 꾸리고 도시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많이 건설하여야 함.	- 농업부문에서는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콩 농사 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들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함. - 다수확품종을 심고, 비료와 농약을 보장해주며,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의 기계화비중을 높여야 함. - 농업지도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농업과학발전에 힘을 넣어야 함. - 백마-철산물길공사를 앞당겨 끝내며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게 하여야 함. - 전당, 전국, 전민이 농촌을 노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여야 함.
2006	-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 보장해 줘야 함. - 전력공업부문의 전력문제를 풀어나가야 함. 석탄공업과 금속공업은 인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건적 고리임. - 채취, 기계, 화학, 건재공업과 임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초적인 것부터 해결하면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새로운 생산적 양상을 일으켜야 함. 경공업 부문에서 생산공정을 적극 현대화하여 질 좋은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려야 함. - 경제부문 지도일꾼들은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가지고 실리를 따져가며 경제사업에 대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해야 함.	- 올해에도 농업전선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우고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야 함. ‘쌀은 곧 사회주의다’라는 말을 지침으로 온 나라가 농업전선에 펼쳐나서야 함. 농업 부문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함. -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 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콩농사방침 관철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함. -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답게 농사일을 간지게 하며 모든 지원자들은 지난해처럼 농촌을 적극 도와줘야 함. - 미루벌을 비롯한 도처에서 물길(수로)공사와 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며 토지관리를 잘해야 함. 기계화, 화학화를 적극 다그쳐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함.
2007	-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경제문제를 푸는데 국가적 힘을 집중해야 함. - 주된 과업은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우리 경제의 현대화를 위한 기술개선을 다그치는 것임.	지난 시기와 다름없이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함. 농업부문 일꾼과 근로자들은 당의 농업혁명 방침관철에서 주인다운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자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계속), 1995~2012

연도	경 제 전 반	농 정 방 향
2007	· 경공업에서는 인민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함. 축산기지, 양어기지, 기초식품생산기지가 은을 내게 하여야 함. · 인민경제의 4대 선행부문인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부문이 경제강국 건설의 전초선을 튼튼히 지켜야 함. 전기, 석탄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하며, 금속공업은 철강재 생산을 늘려야 함. 철도운수부문은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함. · 에너지 및 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채취, 기계, 화학, 건재, 임업부문들에서 생산을 활성화해야 함.	· 체로 농사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함. · 농업발전의 전망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알곡생산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농업생산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자재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함. 미루벌을 튼튼한 알곡생산기지로 꾸려야 함.
2008	· 강대국건설의 주공전선은 경제전선임 · 인민경제의 주체성 강화,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를 통해 자립민족경제를 발양시켜야 함 ·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워야 함 ·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는 내각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함.	·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음. · 다수확품종을 많이 심고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함. · 지난 10년간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 관철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하며 인민군대에서처럼 공농사를 잘해나가야 함. · 농사에 필요한 영농설비와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함. · 자체로 농사를 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함. · 현대적인 축산기지, 양어기지, 과일생산기지를 잘 운영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함.
2009	·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생산정상화와 현대화를 밀접히 결합시켜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고 생산수준을 결정적으로 돌파해야 함. · 금속공업의 선차적 발전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함.	· 자체의 힘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 하는데 총력을 집중해야 함. ·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공농사방침의 생활력을 더 높여 발양시키며 농촌에 대한 물질기술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 농산과 축산을 배합하고 농촌경리를 다각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며 전군중적으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함. · 농업근로자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함.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 1995~2012

연도	경 제 전 반	농 정 방 향
2010	· 4대선행부문에서는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이 중공업의 발전에 달려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높은 생산적 양상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를 힘있게 추진해야 함. · 경제지도일군들은 진취적이며 현실성있는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우고 오늘의 대고조진군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가야 함. 계획규율, 재정규율, 노동행정규율을 철저히 확립하여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이 뚜렷이 나타나게 하여야 함. · 일군들은 경제관리지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지녀야 하며, 여러 가지 경제적 공간을 윤택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함.	·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공농사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빛나게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함. ·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주체적인 육종체계가 서고 실리주의 원칙이 구현된 현대적인 축산, 양어, 과일생산기지가 현실에서 커다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함.
2011	·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공격전 해로 구현해야 함. · 경공업은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으로 해야 함. · 4대 선행부문은 인민생활 대고조 불길의 ‘밀불’이 됨 · 화학공업기지를 생산정상화 해야 함. · 농업은 인민생활 문제 해결의 생명선으로 인식해야 함. · 자력갱생 원칙 철저히 구현 강조	·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 · 농업부문에서는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공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유기농법을 비롯한 선진 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 알곡 정보당수확고를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한 경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함. ·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기어이 해결하려는 당의 의도를 받들고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려야 함.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농사에 필요한 물자들을 영농공정에 앞세워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함.
2012	· 강성국가건설의 주공전선인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에서 함남의 대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해야 함. · 경공업 부문에 필요한 원료를 자체로 해결하며, 질 좋은 경공업제품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함. · 인민들의 먹는문제,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함. · 부족한 전력문제를 선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함. · 석탄을 제때에 보장하는 동시에 새 탄밭을 개발해야 함. · 평양시의 면모 일신	· 인민들의 먹는문제, 식량문제의 해결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핵심사항 ·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함. · 농산과 축산을 결합하는 고리형순환생산체계와 우리식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 농업생산 목표수행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설비를 제때에 보장해야 함. · 현대적인 축산기지, 가금기지, 대규모과수농장, 양어기지가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해야 함.

□ 농업정책

- 올해 알곡증산을 위한 과업 (로동신문 1.3)
 - 농업성에서는 당의 농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벌방지대이건, 중간지대이건, 산간지대이건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올해 농업생산지도의 방향으로 정하였음.
 - 농사에서는 종자가 기본임. 농업성에서는 올해에 비료를 적게 쓰면서도 높은 소출을 낼 수 있는 새로 연구된 다수확품종의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1.3배 이상 늘릴 목표를 세웠음.
 - 현대의 농사는 과학농사이며 모든 영농작업이 기술작업임.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해 재배기술과 방법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음. 논벼농사에서 밭랭상모에 의한 모기르기 면적을 대대적으로 늘리며 겹재배방법을 밭두벌농사에 받아들이는 목표를 세움.
 - 또한 농산과 축산을 결합하는 고리형순환생산체계에 기초하여 유기질비료로 농사짓는 비중과 우렁이 도입면적도 늘릴 목표를 세웠음. 큰모재배, 앞그루감 자잎줄기와 밀, 보리짚의 록비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하여 유기농법실현을 실천할 것임.
 - 또한 부침땅의 지력 제고, 토지개량, 농기계수리정비, 관개체계 개선도 위의 사업과 더불어 함께 진행될 것임.
- 농업전선에서 양양을 일으켜 당의 강성부흥전략실현에 이바지하자(로동신문 1.15)
 -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올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쫓기모임이 각지 농장과 과수, 축산, 양어부문, 농기계, 비료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에서 진행됨.
 -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농장원 쫓기모임에서 보고자 및 토론자들은 현시기 인민의 식량문제, 먹는문제의 해결을 강성국가건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농업생산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함.
 - 이를 위해 포전별 특성에 맞는 우량품종을 심고 모든 영농작업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며 두벌농사를 실속있게 하여 앞뒤그루에서 소출을 내야할 것이라고 말함.
 - 또한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받아들여 논밭을 기름지게 하며 농작물비배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리식의 유기농법을 도입하고 영농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여 정보당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을 강조함.

- 장강군 읍협동농장 농장원들은 쉼기모임에서 산간지대에서 세벌농사의 본보기를 창조한 단위답게 토지이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 농작물생산을 늘리며 땀받비배관리와 누에치기를 과학화해 나갈 것을 다짐함.
-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로동신문 1.15)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에서는 1,000여 개의 후민산 생산기지를 꾸려놓고 새해농사차비를 열심히 하고 있음.
 - 강원도당위원회에서는 알곡생산을 늘리는 방법의 하나를 유기농법을 비롯한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는데서 찾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도의 농업일꾼들은 지난해 유기농법을 받아들여 알곡생산에서 좋은 결실을 얻은 단위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도의 협동농장에서는 유기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음.
 - 안변군에서는 많은 유기질복합비료를 생산하여 논밭의 지력을 높이고 있으며, 회양군에서는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유기질복합비료생산을 늘리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음.

2. 벼농사

□ 농사차비

- 적기에 질적으로 (로동신문 11.21)
 - 올해농사를 빨리 결속하고 다음해 농사차비에 힘을 집중해야 함. 농사차비를 잘하는 것은 알곡생산을 늘리는데 매우 중요함.
 - 각지 농촌에서는 논밭갈이와 거름생산, 모판준비, 농기계와 중소농기구준비를 비롯한 농사차비를 실속있게 하여 다음해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 가을갈이는 당의 물리적 화학성질을 좋게 하며 김과 병해충이 생겨나는 것을 막도록 하는 농사차비의 중요한 공정임. 가을갈이 계획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세우고 전격적으로 추진해야 함.

- 모판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함. 땅이 얼기 전에 모판만들기를 다그치며 모판에 덮을 흙도 충분히 마련해야 함. 바람막이바자와 나래, 말장 등 모판자재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함.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협동농장일꾼들은 농사차비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날 계획은 그날로 수행해야 함. 또한 농장, 작업반, 분조들의 농사차비정형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함.
- 다음해 농사차비를 다그친다 (로동신문 12.6)
 -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받들고 다음해 농사차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도 안의 모든 협동농장에서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여 화학비료를 적게 쓰면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의 연계하에 도안의 모든 협동농장에서 필지별 토양성분과 작물배치에 따라 논밭에 낼 유기질비료의 종류와 양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무조건 생산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또한 위원회에서는 올해 염주군과 동림군에서 논벼재배에 우렁이를 대대적으로 도입하여 얻은 경험에 토대하여 다음해에는 도안의 모든 농장에 이 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음.
- 가을갈이 성과 확대 (로동신문 12.6)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는 다음해 농사에서 논갈이가 가지는 중요성을 농장원들에게 해설하는 한편 땅이 얼기 전에 전면적으로 논을 갈아엎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
 - 특히 농장에서는 포전별, 날짜별 같이계획을 세우고 그날 계획은 그날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논갈이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기계화초병들을 널리 소개선전하는 한편 그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벌려 성과를 날로 높이고 있음.
- 땅이 얼기 전에 와다닥 (로동신문 12.8)
 - 천안군 내 협동농장에서 가을갈이가 힘있게 벌어지고 있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땅이 얼기 전에 많은 면적의 논밭을 갈이할 목표

를 세우고 이를 위한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의 실정에 맞게 가을같이 면적을 명확히 주고 트랙터와 부림소를 적합하게 배합하여 실적을 올리도록 하고 있음. 또한 트랙터 부속품 보장을 비롯한 조건보장대책을 세우고 있음.
- 보잡이들 또한 부림소의 영양관리를 잘하고 기술지표를 철저히 준수하며 매일 많은 면적의 논을 갈고 있음.

○ 농사차비에 힘을 넣자 (로동신문 1.6)

- 한해 농사의 성과여부는 농사차비를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됨. 농업부문 일꾼들은 농사차비를 위해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함.
-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함. 농장에서는 벼짚과 복데기를 이용하여 생물활성퇴비생산을 질적으로 하며 진거름도 모아들여야 함. 가능한 모든 원천을 총동원하여 여러 가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해야 함.
- 토지개량사업에도 큰 힘을 넣어야 함. 흙갈이와 소석회뿌리기를 하여 모든 토지를 생산성이 높은 옥토로 만들어야 함.
- 모판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함. 모판부식토와 모판나래, 말장 등 모판자재준비를 겨울동안에 끝내며 박막도 넉넉히 마련해야 함.
- 농사에서 기본은 종자임. 종자소요량과 확보정형을 품종별로 따져보고 대책을 세워야 함. 두벌농사앞그루감자종자의 확보 및 보관정형을 알아보고 넉넉히 마련하며 봄밀, 보리종자확보대책도 시급히 세워야 함.

○ 올해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로동신문 1.9)

- 강서구역 협동농장에서 연일 일정계획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질 좋은 거름을 논밭에 실어내고 있음.
- 잠진, 보산협동농장의 일꾼, 농업근로자들은 거름더미가 곧 쌀더미라는 것을 명심하고 열심히 거름실어내기를 실시하여 매일 맡겨진 계획을 200% 넘쳐 수행하였음.
- 태성, 약수, 삼표협동농장에서도 거름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많은 거름을 생산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포전에 실어냈음.

○ 농사차비 항목별 계획을 90% 이상 수행 (로동신문 1.22)

- 곡산군에서는 20일 현재 농사차비 항목별 계획을 90% 이상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곡산군의 일꾼, 농장원들은 “거름더미는 쌓더미다. 더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모든 논밭을 옥토로 만들라!”는 구호에 따라 연초부터 매일 거름생산과 실어내기계획을 12% 이상 넘쳐 수행하였음.
- 평암, 룰리협동농장에서도 지난해 보다 2배로 높이 세운 거름생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20일 현재 거름생산계획을 100% 수행하고 실어내기를 90% 이상 수행하였음.
- 그리하여 군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근 4만 톤의 흙보산비료원료를 확보하고 17만 여 톤의 거름을 생산함. 또한 1만여 톤의 열두바닥흙을 비롯하여 유기질비료 총생산량의 90%를 달성함.

□ 낱알털기

- 낱알털기를 마감단계에서 (로동신문 11.15)
 - 평안북도의 협동농장에서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낱알털기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실시하고 있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수많은 협동농장에서 낱알털기를 끝냈으며 도안의 대부분의 시, 군에서 낱알털기가 마무리단계에 있음.
 -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도송배전부를 비롯한 전력공급단위에서 협동농장에 전기를 제때에 보장해주도록 조직사업을 실시하였음. 도안의 시, 군 협동농장에서는 운반수단을 총동원하여 가을한 벼단을 탈곡작에 실어들이는 족족 탈곡하여 성과를 확대하고 있음.
 - 정주시와 도립, 곡산군의 농업근로자들은 낱알털기에 전력하고 있음. 태천, 피현, 의주, 염주, 운전군을 비롯한 도안의 다른 시, 군에서도 탈곡기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실속있게 하면서 전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낱알털기 실적을 올리고 있음.

3. 축 산

□ 축산동향

- 두단오리공장의 현대화 (로동신문 11.3)
 -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집단이 두단오리공장 현대화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음. 교원, 연구사들은 짧은 기간에 모든 생산공정을 현대화, 컴퓨터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음.
 - 발효먹이생산공정이 새롭게 꾸려져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오리배설물로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체계가 확립되고 유기질복합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음.
 - 연구집단은 지열로 오리호동의 냉난방을 보장하고 오존에 의한 소독체계를 철저히 세웠음. 또한 알깨우기실을 현대화하여 알깨우기률을 높였으며 자동적으로 먹이의 양과 질을 정확히 측정하고 혼합될 수 있게 배합먹이생산공정을 개조하였음.
- 성과를 내는 종축생산체계 (로동신문 1.19)
 - 공동구호와 공동사설에 따라 각지 현대화된 돼지공장에서 우리식의 종축생산체계를 확립하여 고기생산을 늘리는 사업에서 혁신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사리원돼지공장에서는 삼원교잡에 의한 고기생산체계를 세워 우량품종의 새끼 돼지생산을 늘리고 육성률을 높이고 있음. 이들은 기후풍토에 맞고 먹이를 적게 먹으며 새끼생산성이 높으면서도 빨리 자라는 우량품종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집중하고 있음.
 - 공장에서는 더 많은 고기를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이의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종전보다 마리당 새끼돼지생산량을 1.5배로 늘리고 육성률도 높이게 되었음. 또한 새해벽두부터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고기생산을 1.2배로 높여나가고 있음.
 - 함주돼지공장에서는 자체로 우량품종의 새끼돼지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원종체계를 확립하였으며, 평북돼지공장에서는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새끼생산을 늘릴 수 있는 종축생산체계를 확립하였음.

○ 사육관리방법을 혁신하여 (로동신문 1.19)

- 각지 현대화된 닭공장에서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 사육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높임으로써 고기, 알생산에서 혁신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
- 927닭공장에서는 우리식의 과학적인 사육관리방법을 완성하여 축산물생산을 늘리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비육닭기르기 방법을 완성하여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더 많은 닭고기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둠.
- 신의주닭공장에서는 우리식 종금체계를 확고히 세워 자체로 우량품종의 종자를 생산함으로써 올해 생산준비를 빈틈없이 하였음. 또한 적은 먹이를 가지고 육성률을 1.5배 이상 높이면서 알낱이률도 계속 높여가고 있음.
- 사리원닭공장에서는 미생물먹이와 가공먹이, 클로렐라생산기지를 세우고 단백질 먹이를 비롯한 영양가 높은 여러 가지 먹이를 자체로 보장하고 있음. 특히 대용먹이 생산에 힘을 넣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그 생산량을 3.5배로 늘려 닭알생산을 높이고 있음.

○ 고기와 알생산에서 높은 실적 기록 (로동신문 2.2)

- 각지 축산기지에서는 올해 더 많은 축산물을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리원돼지공장에서는 과학적이며 현대적인 우리식의 종축생산체계를 세워 새끼생산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그리고 먹이생산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육성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새끼돼지 생산이 1.3배, 고기생산이 1.2배 증가했음.
- 신의주닭공장에서는 섬유소분해균을 이용하여 집짐승배설물, 강냉이숙을 먹이로 이용하여 알곡먹이 비중을 낮추면서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고기와 닭알생산을 늘리고 있음.
- 자강도 축산기지에서도 생산토대를 마련해놓고 축산물 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함경남도의 돼지공장, 닭공장, 오리공장, 목장과 황해남도 계남목장에서도 자연지리적 특성에 맞는 종축생산토대를 구축하고 육종과 사육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에 역량을 쏟고 있음.

4. 농업기반

☐ 토지정리

- 3단계 토지정리공사를 끝냈다 (로동신문 11.5)
 - 고산과수농장 현대화공사에 동원된 618건설돌격대의 일꾼과 돌격대원들이 3단계 토지정리공사를 두달이나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특히 일꾼과 돌격대원들은 10월 한달동안에만 3단계 토지정리공사의 50%를 완성하여 고산과수농장의 면적을 더욱 늘릴수 있는 전망을 확고히 하였음.
 - 618건설현장지휘부에서는 양양된 대중의 열의에 맞게 정치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조직과 지휘를 짜임새있게 계획하였음. 특히 현장에 내려가 당면 문제들을 알아보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주면서 겨울철전으로 공사를 끝내도록 지휘하였음.
 - 평안남도려단, 남포시려단, 강원도려단에서는 모두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토지정리를 힘있게 추진하여 공사과제를 기한전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함경북도려단, 황해북도려단을 비롯한 다른 련단에서도 공사를 앞당겨 끝내는데 적극 기여하였음.
- 미루벌토지정리에 역량을 집중 (로동신문 11.21)
 - 황해북도에서 미루벌토지정리사업이 힘있게 실시되고 있음. 사업이 시작된지 한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벌써 수백정보의 토지를 정리하는 성과가 이룩됨.
 - 돌격대지휘부에서는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전투계획을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음. 또한 연유와 부속품, 후방물자 보장을 확고히 하여 사업이 중단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수안군대대에서는 가을걷이날짜를 포전별로 장악하고 기계설비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여 토지정리시작부터 기세를 올리며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 은파군대대에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적은 연유를 가지고 더 많은 토지를 정리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수립하여 토지정리실적을 올리고 있음.

☐ 물길공사

- 자연흐름식 물길공사 마지막단계 (로동신문 1.28)
 - 대동군에서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음.

- 개천-대성호 물길로부터 대동군의 6개 농장에 물길을 뿔어야 하는 이 공사는 수십만㎡의 토량을 처리하고 수십 개의 구조물, 물길굴을 건설해야 하는 공사임. 이 공사가 완공되면 수천 정보의 논에 물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전기를 절약하게 됨.
- 군의 당원, 근로자들은 20여 만㎡의 성토 및 절토, 굴뚝기 등 방대한 공사와 제를 수행하고 물길형성을 40여 일만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함.
- 특히 암거와 잠관을 비롯한 구조물공사를 맡은 근로자들이 매일 계획된 공사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여 짧은 기간에 구조물공사의 60% 이상을 완수하는 성과를 거둠.

5. 산림

□ 통나무 생산

- 년간계획수행단위가 늘어난다 (로동신문 11.17)
 - 올해 임업성에서는 통나무생산에서 양양을 일으킬 목표 하에 능력있는 일꾼을 여러 생산단위에 내려보내어 그들이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면서 필요한 대책들을 적극 세워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추진함.
 - 계획수행단위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지난해 가을부터 겨울철통나무생산을 위한 림지를 바로 정하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하여 정초부터 높은 성과를 이룩함.
 - 벽동림산사업소의 통나무생산자들은 통쏘이를 비롯한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매달 높은 실적을 기록함. 동창림산사업소의 노동자들은 채벌조건이 좋은 겨울철에 류벌원천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해 앞선 나무베기방법을 받아드리며 산지통나무생산에서 놀라운 혁신을 창조함.
 - 평안남도임업관리국 아래 북창과 덕련, 덕천갱목생산사업소의 일꾼, 노동자도 통나무 생산을 늘림. 강원도임업관리국 아래 통천갱목생산사업소와 함경북도리업관리국 아래 수성제재공장에서도 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함.
- 겨울철통나무 생산준비를 빈틈없이 (로동신문 11.25)
 - 평안북도임업관리국 아래 임산사업소에서 겨울철통나무 생산준비를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음.

- 관리국의 당일군들은 임산사업소를 맡고 내려가 당면 문제를 해결해주고 겨울철통나무 생산준비를 잘하도록 일꾼, 종업원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겨울철통나무 생산준비에서는 벽동임산사업소가 앞서나가고 있음. 사업소에서 성하작업소의 산지합숙을 본보기로 꾸려놓고 모든 작업소에 일반화하면서 겨울철통나무 생산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태천임산사업소, 대관산림개조사업소, 운산산림개조사업소에서도 유리한 채벌 조건을 갖추는데 기초하여 산지합숙건설을 비롯한 겨울철통나무생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있음.
- 대고조건설장에 더 많은 통나무를 (로동신문 1.14)
- 새해에 들어서도 자강도림업관리국에서는 통나무생산에 필요한 많은 설비와 자재를 시급히 마련하여 림산사업소와 갯목생산사업소에 보내주었음.
 - 림산사업소별, 갯목생산사업소별, 작업소별, 소대별 경쟁 속에 통나무 생산실적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3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8일 현재 강계림산사업소, 송학작업소, 동신갯목생산사업소 서양작업소, 희천갯목생산사업소 극성작업소에서는 맡겨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제일 먼저 끝내는 업적을 달성함.
 - 겨울철 통나무생산에서는 강계림산사업소와 희천갯목생산사업소, 양계림산사업소, 위원림산사업소가 앞장서고 있음.
- 2만^m 이상의 통나무를 증산 (로동신문 1.27)
- 림업부문에서 정초부터 산지통나무 생산에 힘을 기울여 25일 현재 계획보다 2만^m 이상의 통나무를 더 생산하는 혁신을 창조함.
 - 양강도림업관리국 아래 연암갯목생산사업소와 풍서, 갑산림산사업소에서는 통나무생산을 끊임없이 늘리는 동시에 나무베기와 사이나르기계획을 매일 넘쳐수행하고 있음. 특히 풍서림산사업소에서는 나무모으기와 나르기 등 작업공정간 연계를 강화하여 혁신에 앞장서고 있음.
 - 자강도림업관리국 아래 강계, 랑림, 룡림림산사업소와 희천, 동신갯목생산사업소에서도 나무베기에 힘을 집중하면서 운반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산지통나무 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함경남도림업관리국 아래 장진, 도안림산사업소와 허천갯목생산사업소, 함경북

도림업관리국 아래 유선, 연상림산사업소, 회령갱목생산사업소에서도 나무베기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지형조건을 합리적으로 이용한 통쏘이방법을 받아들여 산지통나무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나무심기

- 농근맹일꾼과 농근맹원들 나무심기 진행 (로동신문 11.17)
 - 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에서 16일 각지 농근맹일꾼, 농근맹원들이 나무심기를 함.
 - 농근맹중앙위원회와 평양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북도의 20여개 시(구역), 군농근맹일꾼, 농근맹원들은 11중에 9,000여 그루의 나무와 6중에 1만 2,500여 개의 꽃뿌리를 마련함.
 - 이날 농근맹일꾼과 농근맹원들은 4중에 1만 7,500여 점의 물자도 넘겨줌.

☐ 나무모 생산

- 현대화된 나무모생산기지 (로동신문 12.13)
 - 최근 각지 양묘장이 현대적으로 개건되어 나무모 생산을 더욱 늘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
 - 중앙 양묘장을 보면 채종구, 풍토순화구, 품종보존구, 과종구로 나뉘어져 있어 계절에 관계없이 식수를 보장할 수 있음. 또한 겨울철에는 강질유리온실을 통해 여러 가지 나무모를 키울 수 있음.
 -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건설된 현대적인 강질유리온실에서는 나무모를 종합 조종실의 컴퓨터로 온도와 습도, 빛세기 등을 조절하면서 키움. 원형분무삽목장과 야외재배장의 나무모 생산도 과학화, 집약화되어 있음.
 - 평안북도에서도 나무모생산을 공업화, 과학화, 집약화하여 나무모생산을 더욱 늘릴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음. 도에서는 신의주지구에 영양단지성형공정과 태양열온실, 부식토가공장 등을 건설하고 수종이 좋은 여러 가지 나무모를 키우고 있음.

6. 기타 작물

□ 과수

- 북청군에 현대적인 과수원이 건설된다 (로동신문 11.22)
 - 북청군에서 수천 정보의 현대적인 과수원건설이 시작되었음.
 - 과수련합총회사 과수설계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능력있는 설계가들이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합쳐 방대한 건설의 총계획도를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음.
 - 북청군을 현대화된 대규모과일생산기지로 꾸리기 위한 건설은 수천정보의 토지정리와 수십만대의 콘크리트지대세우기, 도로와 물길건설, 하천정리를 해야 하는 매우 방대한 공사로서 여러 단계로 나뉘어 진행됨.
 -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성, 중앙기관에서 과수원건설에 필요한 자재보장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군에서는 수백정보의 토지정리와 도로, 물길을 건설하고 유기질비료실어내기, 전호식구덩이파기를 비롯한 키낮은사과나무심기준비를 끝낼 계획을 세우고 있음.
- 과일가공품 생산에서 연일 혁신 (로동신문 1.15)
 -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의 일꾼, 종업원들이 공동구호 및 새해공동사설에 따라 과일가공품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 참모부에서는 생산정상화의 중심고리를 설비관리를 잘하는데서 찾고 매일 설비관리와 기술관리에 힘을 넣는 한편 종업원들의 창조적 지혜를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음.
 - 과일즙작업반의 종업원들은 공정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요구를 철저히 지켜 과일가공품의 질을 높이면서도 매일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음. 단물작업반원들은 설비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병포장작업반원들도 가공품의 질보장을 위하여 책임을 다하고 있음.
- 맛있는 뽕족감이 널리 퍼진다 (로동신문 1.20)
 - 감 중에서 제일 맛이 좋은 것은 뽕족감임. 북한에서 재배되고 있는 대표적인 뽕족감은 긴물감, 긴찰감, 고종감 등임.
 - 과수련합총회사 아래 과수농장에서는 최근 감나무밭을 뽕족감나무밭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각지 농촌에서도 수십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여 그 면적을 늘렸음.

- 각지에 뽕죽감을 생산하기 위한 나무모 생산기지가 세워지고 있음. 강원도 안변군과 통천과수농장, 황해남도 해주시, 황해북도 사리원시, 함경남도 함주군, 남포시 와우도 구역에서 나무모를 대대적으로 생산하고 있음.
- 과수연합총회사에서는 올해 생산되는 9만 5천여 그루의 나무모를 과수원에 심기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하고 있음. 각지 농촌에서도 수백 정보의 밭에 심은 감나무를 품종갱신하며 농촌살림집에 심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실시하고 있음.
- 첨단조직배양기술로 키낮은사과나무모 대량생산 (로동신문 1.26)
 -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에서 키낮은사과나무모를 대대적으로 생산하고 있음.
 - 과학자들은 이미 첨단조직배양기술을 받아들여 무균싹의 유도과 배양방법, 시험관 안에서 싹증식과 뿌리유도방법, 조직배양모의 효율 높은 순화방법 등을 연구완성하고 우량종식물의 대량증식기술을 새로 확립함으로써 모생산을 집약화, 공업화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었음.
 - 식물조직배양실에서는 새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배양모의 증식율을 2배로 높였음. 과학연구온실에서도 효율 높은 방법으로 시험관에서 키운 모를 기후풍토에 순화시키고 있음.

□ 남새

- 규모가 큰 새 남새온실 건설 (로동신문 11.30)
 - 남포시에서 4만 수천㎡의 부지에 갖가지 남새를 생산할 수 있는 15개의 온실 호동과 새 건물, 휴게실, 창고, 양수장과 차고 등이 갖추어져 있는 남새온실을 건설하였음.
 - 현재 모든 호동에서는 오이와 토마토, 고추, 가지를 비롯한 갖가지 남새가 자라고 있음.
 - 지금 겨울철에도 시민들에게 신선한 남새를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 과중한 여러 가지 남새에 대한 비배관리와 온도보장에 힘쓰고 있음.

7. 기타 보도 동향

☐ 농기계

- 트랙터수리를 힘있게 (로동신문 1.9)
 - 공동구호와 공동시설에 따라 증산군농기계작업소의 일꾼, 근로자들이 매일 트랙터 수리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음.
 - 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소재작업반원들은 가동률을 높여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더 많은 주물, 주강소재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공무동력작업반과 트랙터 수리작업반의 기술자, 노동자는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많은 소재를 마련하여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 있음.
 - 그리하여 작업소에서는 짧은 기간에 1,000여 점의 부속품을 생산하여 트랙터 대수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태양열 온실

- 온실능력확장공사 빠른 속도로 추진 (로동신문 1.30)
 - 평양화초연구소 온실능력확장공사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음. 수십만 m²의 넓은 부지에 자리잡은 120여 동의 박막온실과 여러 동의 보조건물이 세워지고 있음.
 - 태양열을 이용하는 박막온실은 보온효과가 매우 높아 겨울에도 난방조건이 없이 여러 가지 화초를 생산할 수 있음. 이미 박막과 나래를 씌운 수십 동의 온실에서는 여러 종류의 화초가 자라고 있음.
 - 박막온실 건설을 맡은 군인건설자들은 온실골조 콘크리트치기와 내부미장을 먼저 끝낸데 이어 트라스조립과 보온재 붙이기 등 마감공정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 화초전시장과 종합청사를 비롯한 보조건물공사를 맡은 군인건설자들도 골조공사를 마감하는 것과 동시에 내부미장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살림집

- 10여 동의 살림집 및 공공건물외부미장과 타일붙이기를 끝냈다 (로동신문 11.21)
 - 11월 20일 현재 만수대지구건설에 참가한 10여 개 시공단위들이 맡은 고층

- 및 초고층살림집과 공공건물의 외부미장 및 타일붙이기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함.
- 건설지휘부의 지휘밑에 여러 시공단위에서는 현장방송수단과 직관선동을 배합한 화선식경제선동으로 건설자들의 열의를 불러일으켜 미장 및 타일붙이기를 비롯한 마감공사를 연이어 끝내고 있음.
 - 조선인민군 김창섭소속부대의 지휘관, 전투원들은 45층까지의 지상골조공사를 단숨에 추진한 성과에 토대하여 다음 공정도 입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였음.
 - 11월 20일 현재 만수대지구 살림집들의 외부미장은 80%, 내부미장실적은 60%에 이르렀으며 각종 문틀들이기와 수지창설치, 내외부 타일붙이기와 급배수공사를 비롯한 마감공사 실적도 나날이 높아져 거리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음.
- 새 문화주택이 훌륭히 세워졌다 (로동신문 12.4)
- 김정숙군 강하리에 새집이 세워졌음. 수십 동의 현대적인 새 살림집이 들어섬.
 - 새로 세워진 살림집에는 아랫방, 윗방이 있고 부엌, 세면장과 창고가 있음. 뜨락에는 집집승우리와 김치웁, 창고가 있음.
 - 집집마당에는 북방의 자연기후에 맞게 풍토순환시킨 회령백살구, 사과, 배, 추리나무를 비롯한 5그루 이상의 과일나무가 심어져 있음.
 - 마을에는 탁아소, 유치원, 목욕탕을 비롯한 공공건물도 잘 세워졌으며, 마을 앞을 지나는 도로가 새로 건설됨.
 - 군에서는 신파식료공장의 노동자들이 건설한 살림집에 대한 보여주기를 진행한 다음 그 경험을 일반화하도록 하고 있음.
- 100여 세대의 살림집 건설, 새집들이 진행 (로동신문 12.8)
- 자성군에서 100여 세대에 달하는 노동자의 살림집을 짧은 기간에 건설함.
 - 여러 칸의 살림방과 거실, 부엌, 야외창고 등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꾸며졌으며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잘 꾸려져있음.
 - 살림집건설에 동원된 일꾼, 건설자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앞선 건설공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추진함.
 - 또한 모든 살림집에 대한 상수도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냄으로써 주민들의 먹는 물 문제도 원만히 해결함.

□ 현지도

- 황해남도 과일군을 현지도 (로동신문 11.28)
 - 김정일은 김정은, 리영호, 김경희, 장성택, 김정각, 김경옥, 한광상, 김원홍, 박재경, 현철해 동지와 황해남도 과일군을 현지도 함.
 - 선군시대 본보기과일생산기지로 전변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처럼 과일군을 새롭게 일신시키기 위하여 군안의 당원, 근로자들은 많은 면적에 달하는 과수원의 토지정리를 진행하고 새 품종의 과일나무심기를 비롯한 현대화공사에서 성과를 거둬.
 - 과일군은 해발높이와 해비침률, 적산온도, 토양상태 등 자연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일생산의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현지도 함.

국내매체 보도 동향

1. 경제일반

☐ 北 5세 미만 아동 43% 정상 키에 미달

-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의 절반 가까이가 발육부진이며, 5명 중 1명은 체력저하 상태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유엔개발계획(UNDP)의 '2011 인간개발보고서'를 인용해 전함.
- UNDP가 지난 2일 발표한 '2011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2000~2009년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 중 43.1%가 영양실조로 국제기준의 권장키보다 작은 발육부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또 키에 비해 몸무게가 상대적으로 덜 나가는 체력저하 상태의 5세 미만 어린이도 전체의 20.6%로 집계됨.
- 북한의 산모 사망률은 2008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250명이었고, 북한인구 2,450만 명의 평균 나이는 2011년 현재 32.9살이었지만 전체인구 중 어린이와 노인 비율은 47.4%에 달함. 노동 참여율에서는 근로연령대의 북한 남성 77.5%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여성 참여율은 55.1%에 그쳤으며, 북한 의회에 참여하는 여성비율도 15.6%에 불과함. 문맹률은 0%임.
- 이밖에 2001~2010년 매해 100만 명 중 7,500여 명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봤고, 사망자는 100만 명 당 5명에 달함. 또 수질오염 등으로 발생하는 수인성 질병으로 100만 명 당 191명이 사망했으며, 호흡기 질환, 폐암 등 외부 공기의 오염에 의한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100만 명 당 242명이었음.

연합뉴스, "北 5세 미만 아동 43% 정상키에 미달", 2011.11.3

☐ 美의회, 대북식량지원 분배감시 강화 명시

- 미국이 북한에 식량지원을 재개할 때 분배감시 체제를 강화하도록 명시한 법

안이 미 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2일 전함. 미국 상하원은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2012 회계연도 농업세출 법안을 의결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날 이 법안에 서명함.

- 법안은 미국의 인도적 식량 해외원조 프로그램인 '평화식량 프로그램'에 14억 6,600만 달러를 승인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충분한 감시와 통제 체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함. 특히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고려할 때 적절한 분배 감시 등으로 프로그램이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하고, 과거 식량지원에서 남은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돼야 한다고 명시함.

연합뉴스, "美의회, 대북식량지원 분배감시 강화 명시", 2011.11.22

□ 평양국제상품전람회 '해마다 규모 확대'

- 북한에서 봄과 가을에 열리는 평양국제상품전람회가 해마다 참가업체가 늘어나고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22일 “지난 10월 17일부터 열린 평양국제상품전람회 기간 동안 조선(북한)과 외국의 기업들 사이에 수백 건의 상담이 진행돼 평균 50여 건, 1천만 달러 규모의 무역계약과 투자합의가 맺어졌다”고 전함.
- 조선신보는 “초기에 국내외 참가기업은 100개에 출품제품도 수백 종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참가 기업이 300여개에 출품제품도 수천 종에 이른다”고 말함.
- 조선신보는 “중국에서는 가정용전자, 전기제품으로 유명한 하이얼, 기계와 전자설비로 유명한 신비, 텔레비전 수상기로 유명한 창흥회사들이 해마다 참가하고 있다”고 전함. 또, “유럽지역은 종이가공회사인 도이칠란드(독일)의 그라테나우 유한회사, 건물바닥의 기술설비를 다루는 프랑스의 커피로회사, 광산설비로 유명한 스웨리에(스웨덴)의 GIA산업회사 등이 있다”고 소개함.

연합뉴스, "평양국제상품전람회 '해마다 규모 확대'", 2011.11.22

□ 유럽연합 "北 고려항공 운항 엄격 제한"

- 북한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이 유럽연합 회원국 취항이 엄격히 제한되는 항공사로 또 다시 분류되었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1일 발표한 역내 운항금지 항공사 명단 18차 개정판에서, “고려항공이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아 역내 취항을 엄격히 제한하는 항공사로 분류했다”고 밝힘.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교통 부문의 데일 키드 공보관은 “고려항공의 러시아제 TU-204 항공기 두 대를 제외한 나머지 항공기들은 계속 유럽연합 회원국 취항이 금지된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함. 키드 공보관은 그러나 “고려항공 관계자들이 운항제한 완화를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밝힘.
- 고려항공은 유럽연합이 역내 취항금지 항공사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6년부터 계속 전면 운항금지 항공사로 분류되다가 4년 만인 지난 2010년, 엄격한 제한 속에 유럽연합 회원국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로 조정되었음.

노컷뉴스, "유럽연합 "北 고려항공 운항 엄격 제한", 2011.11.22

☐ ‘만월대 사업’ 1년 반만에 사실상 재개

- 지난해 5·24 대북제재 조치로 발굴작업이 중단됐던 고려 왕궁터인 개성 만월대를 긴급보호하는 작업이 이달 24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만월대 사업은 정부 예산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회문화 교류사업으로, 5·24 조치 이후 1년 6개월 간 중단됐던 사회문화 교류사업도 재개수순을 밟게 됨.
-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현재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방북해 만월대 유적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벌이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조치(보호작업)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힘. 역사학자협의회는 만월대 보호작업을 위해 11월 24일~12월 23일 한달간 방북을 통일부에 이미 신청했으며, 통일부 측도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
- 통일부는 특히 “유적지 진단 및 보호조치, 복구 등의 비용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2억 7천만원을 지원하기로 이미 의결한 상황”이라고 전함.

연합뉴스, "만월대 사업' 1년 반만에 사실상 재개", 2011.11.22

☐ 北, 세계 3번째로 산림황폐화 심각

- 영국의 위기관리 전문기업 ‘메이플크로프트’가 24일 발표한 ‘산림 황폐화 지수’에서 북한이 전 세계 180여 개국 가운데 세번째로 산림 황폐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함.

- 이 기업은 북한과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볼리비아 등 4개국을 ‘극단적인 산림 황폐화 국가’로 분류하고 산림보호와 나무심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함.
 - 유엔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북한의 전체 산림 899만ha 중 284만ha(31.6%)가 황폐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다락밭(계단밭) 개간과 무분별한 땔나무 채취를 산림 황폐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음.
- 연합뉴스, "北, 세계 3번째로 산림황폐화 심각", 2011.11.25

☐ 美 "대북지원 영양보조식품에 한정해야"

- 미국이 북한에 식료품을 지원할 경우 ‘영양보조식품’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과 일본에 전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함.
 - 이 신문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지난 17일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한미일 협의 당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여부와 관련 ‘식량지원’이라는 말 대신 ‘영양 보조를 위한 지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이는 쌀이나 밀가루 등을 지원할 경우 북한의 군용 식량 등으로 전용될 것을 우려해 유아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보조식품을 염두에 둔 것임.
 - 한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약 8.5%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연합뉴스, 美 "대북지원 영양보조식품에 한정해야", 2011.11.27

☐ 北화폐개혁 2년..정부 당국 '실패' 평가

- 정부 당국은 1일 2주년을 맞은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해 물가와 환율 급등 등의 부작용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함.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의 주민과 시장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한 것으로 풀이함.
- 쌀값은 화폐개혁 직후인 2009년 12월 1kg당 20~40원에서 11월 현재 3천원 안팎으로 급등함. 이는 화폐개혁 이전의 2,300원 수준보다 더 오른 것임. 달러당 북한 원화의 환율도 2009년 12월 35원에서 11월 현재 화폐개혁 이전 수준인 3,800원까지 치솟았음. 중국 위안화에 대한 환율도 최근 1위안화 당 400원 안팎으로 달러 환율 수준으로 급등했다고 통일부는 밝힘.

- 통일부는 북한이 화폐개혁과 시장통제로 시장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부유층을 견제하는 데는 일정한 효과를 거뒀지만, 시장통제는 오히려 무력화됐다고 분석함.

연합뉴스, "北화폐개혁 2년..정부 당국 '실패' 평가", 2011.12.1

□ 유엔 "내년 北 기아주민 300만 명으로 감소"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에 굶주릴 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이 3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함.
- 이 수치는 올해 북한에서 굶주림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된 600만 명의 절반 수준으로, WFP와 FAO가 올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8.5% 증가할 것이라는 추산치를 반영한 것임.
- 유엔 산하 인도주의조정국(OCHA)은 지난 8월 북한에서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난이 심화돼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610만 명이라고 밝힌 바 있음.

연합뉴스, "유엔 '내년 北 기아주민 300만 명으로 감소'", 2011.12.1

□ 北, 황금평 개발 본격화...경제특구법 제정

- 북한이 최근 북중 경제특구인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법을 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함. 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해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이 채택되었다”고 밝혔지만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 북한은 효율적인 외자 유치 조달방안과 구체적인 세무절차 등을 담은 새로운 경제특구법 초안을 만들어 중국의 정·관계, 경제계 인사에게 법안을 회람한 것으로 알려짐. 특히 이 법안은 주요내용은 선전 등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특구에 적용해 큰 성공을 거둔 법들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전해짐.
- 황금평·위화도 특구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 6월 북·중 공동개발 착공식 이후 지지부진했던 특구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北, 황금평 개발 본격화...경제특구법 제정", 2011.12.8

□ 北환율 ‘출렁’…1주일새 20% 이례적 급락

- 최근 1천원대까지 폭등했던 중국 위안화에 대한 북한 원화 환율이 1주일 만에 800원대로 급락한 것으로 알려짐. 북한 돈의 가치가 그만큼 급등하고 있다는 뜻임. 북한의 경제여건을 볼 때 북한의 원화 가치가 올라갈 요인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런 현상은 이례적임.
- 북한 외환시장에 밝은 대북소식통은 16일 “현재 위안화 대비 북한 돈 환율은 혜산 지역에서 780~800원, 청진 지역에서는 800원대”라며 “불과 1주일 전에는 위안화 환율이 1천원까지 올랐지만 지금은 갑자기 내려간다”고 전함.
- 한 탈북자는 “평양에는 북한 환전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큰손’들이 몇 명 있다”며 “환율이 지나치게 상승하면 이 큰손들이 각 지역에 있는 자신의 심복들을 통해 ‘내년 외화사용 금지’와 같은 유언비어를 퍼뜨려 환율을 떨어뜨린다”고 전함.
- 이 탈북자는 “북한의 거물급 돈장사꾼(환전상)들은 강력하게 조직화 된 데다 권력층까지 매수해 루머를 생산·유포한다”며 “영세 환전상들은 이런 ‘시장통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자그마한 변화나 소문에도 큰 폭의 환율 파동이 일어난다”고 설명함.

연합뉴스, "北환율 ‘출렁’…1주일새 20% 이례적 급락", 2011.12.16

□ 北, "경제 목표 초과 달성 연일 선전"

- 북한 당국이 2012년 강성대국 원년 선포를 앞두고 관영 매체를 통해 연일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음. 북한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북한 측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등 매체들은 연말을 맞아 최근 ‘올해 조선의 경제건설사업에서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도처에서 려이 어 일어났다’,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일대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목표달성을 선전하고 있음.
- 북한 당국은 특히 “올해는 지난 10월 김 원장의 함경남도 기업소 시찰을 계기로 선전매체들이 '함남의 불길'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룡성기계련합기업소와 대흥청년영웅광산, 룡양광산, 단천마그네사공장, 룡전과수농장 등에서도 커다란 변혁이 일어났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함.

- 북한 매체들의 이러한 보도는 2011년 1월 1일 신년사설에서 발표한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지도력을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노컷뉴스, "경제 목표 초과 달성 연일 선전", 2011.12.19

☐ 北원정리-라진 도로 개통

-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통로로 부상한 북한 원정리~라진항 구간의 포장도로가 최근 개통됐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도 원활히 소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시에서 대북사업을 하는 중국인 H씨는 2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원정리~라진항 구간의 2차선 포장도로가 70% 가량만 완공됐으나 최근 차량통행을 허용, 양쪽의 물자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힘.
- 중국의 대북 교역 거점인 취안허 통상구의 두만강 대교에서 원정리를 거쳐 라진항까지 53km의 2차선 도로를 포장하는 이번 공사는 지난 4월 착공돼 이달까지 완공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길이 험하고 너무 구불구불해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훈춘시 관계자도 이날 전화통화에서 원정리-라진항 구간 도로 보수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내년이나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중국은 지난 1월 처음으로 1만 7천톤을 라진항에서 상하이로 운송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10만 톤 가까운 훈춘산 석탄을 남방으로 수송했으며 원정리-라진항 도로 보수가 끝나면 운송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北원정리-라진 도로 개통", 2011.12.23

☐ 北라선특구 m²당 30달러에 분양

- 북한 사정에 밝은 중국 지린(吉林)성의 소식통은 2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라선특구에서 위치가 좋은 곳의 땅을 m²당 30달러에 50년간 임대하고 있다고 말함. 라선특구는 그러나 기초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전력난이 심각하고 입주 기업을 모집하지 못해 어려움이 큰 것으로 전해짐.

- 라선특구 개발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남. 소식통은 러시아 극동 자루비노에서 라진까지 철도가 이어졌다면 러시아 철도의 궤도폭이 북한보다 넓어 북한 철도 궤도를 수정하는 작업이 이뤄졌다고 밝힘. 러시아는 이번 철도 현대화 사업을 위해 2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짐.
 - 그는 이어 중국은 훈춘(琿春)시의 취안허(圈河)통상구에서 북한 원정리~라진항까지 53km의 2차선 도로포장 공사를 최근 70%가량 완공한 후 개통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미완성 공사구간은 내년 초중반까지 완공할 것이라고 밝힘.
- 연합뉴스, "北라선특구 m당 30달러에 분양", 2011.12.24

□ 北, 김정은 지시로 옛새만에 시장 정상 운영

- 김정일 사망 직후 폐쇄됐던 시장이 25일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소식통들에 따르면 당국은 이번 조치가 주민들의 식량수급을 걱정한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음.
- 소식통들은 “장마당 관리소 일꾼은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들이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하는데 애도행사 기간에 시장 문을 닫으면 어디에서 식량을 구입하겠는가’라면서 시장을 정상 운영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함.
- 이 같은 조치는 북한 당국이 애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매체들을 동원해 김정은의 위대성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김정은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높이고 내부 결속을 빠르게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됨.

데일리NK, "北, 김정은 지시로 옛새만에 시장 정상 운영", 2011.12.26

□ 북중 교역 사상 첫 50억 달러 돌파

- 올해 북한과 중국 간 교역액이 급증, 사상 처음으로 5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한국무역협회가 29일 밝힘.
-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북한의 대중 수출은 29억 2천만 달러, 수입은 22억 6천만 달러로 총 5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함. 이는 작년 동기(31억 달러)에 비해 약 70% 증가한 것임.

- 북중교역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북한이 석탄과 철광석 등 지하자원을 중국에 대거 수출하고 석유제품과 원유 등을 많이 수입했기 때문이라고 무역협회는 설명함.
 - 무역협회 관계자는 “양국 교역이 2009년 큰 폭으로 감소(33%)한 뒤 2010년 이후 2년째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등 지하자원 수출이 크게 늘었고, 남성의류 등 경공업 제품의 수출 급증도 눈에 띈다”고 말함.
- 연합뉴스, "북중 교역 사상 첫 50억 달러 돌파", 2011.12.29

□ 김정일 유훈?..."北, 외화사용금지령"

- 함경북도 소식통은 2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상부에서 ‘유훈관철 내용’으로 일체의 달러와 위안화를 비롯한 외화를 시장에서 유통하면 마약보다 엄중히 처벌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함.
 - 이 소식통은 “김정일 장군님의 유훈 방침이고 어떤 이유도 통하지 않는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철저히 집행하라는 분위기”라고 설명함.
 -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유훈 관철 명목으로 법기관(보위부, 보안서)의 충성경쟁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외화사용이 보편화 된 조건에서 강제적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임.
- 데일리NK, "김정일 유훈?..."北, 외화사용금지령", 2012.1.2

□ 북한 사치품 유입 지난 5년간 대폭 늘어

-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북한의 사치품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함.
- WSJ이 유엔 자료와 중국의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북한의 자동차와 랩톱 컴퓨터, 에어컨 수입량은 4배로 증가함. 특히 휴대전화 수입은 43배로 뛰었음.
- WSJ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사용됐던 3대의 링컨 리무진 차량을 비롯해 많은 사치품이 북한 지도부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이는 유엔의 대북한 제재조치에 큰 구멍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함. 또한 다른 나라들이

이런 대북 수출을 단속하는 와중에 중국은 사치품의 주요 공급처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고 신문은 분석함.

- 한편 이런 사치품 수입 동향은 북한에서 이런 수입품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은 기업가 계층이 출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 계층이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으며 잠재적으로는 김정일 일가의 지배체제를 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WSJ은 지적함.

연합뉴스, "북한 사치품 유입 지난 5년간 대폭 늘어", 2012.1.8

☐ 김정일 사후 …北시장 정상화

- 북한 당국이 김정일 사망에 따른 애도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일시 중단 조치했던 시장이 지난 6일경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신의주 소식통은 11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김정일 사망)애도기간 장마당이 정상 운영되지 않으면서 (주민 생활이)아수라장이 됐다”면서 “주민들이 ‘이제는 잡아 죽인대도 장사는 해야겠다’며 장마당에 나오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함.
- 북한 당국은 김정일 사망을 공식 발표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9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시장을 폐쇄 조치함. 그러나 생필품 수급에 따른 주민 불만이 고조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12월 25일부터 장사를 부분적으로 허용했음.
- 현재 시장에서는 김정일 생일(2월16일)을 맞아 식량을 공급한다는 소문도 나돌아 쌀 장사꾼들이 가격을 내리는 눈치라고 소식통은 전함. 여기에 당국이 시장에서 달러나 위안화(元)로 거래하는 것과 불법 환전상인들을 단속하고 있어 환율도 내림세임.

데일리NK, "김정일 사후 …北시장 정상화", 2012.1.11

☐ 北 2010년 휴대전화 수입량 전년比 6배 증가

- 북한이 2010년 중국에서 수입한 휴대전화 단말기는 43만 대로 2009년 6만 8천 대에 비해 6배 넘게 늘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함.
- 유엔 통계국이 최근 내놓은 전 세계 교역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휴대전화

기 수입에 지출한 비용도 2009년 500만 달러에서 2010년 3,500만 달러로 7배 증가함.

- 북한에서 2008년 휴대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뒤 가입자 수는 2009년 말 9만여 명, 2010년 말 43만여 명으로 늘었고, 작년 3분기 현재 80만 명을 넘는 등 급증하고 있음.

연합뉴스, "2010년 휴대전화 수입량 전년比 6배 증가", 2012.1.11

☐ 北, "4월에 105층 류경호텔 개관 한다"

- 북한 당국이 평양의 상징인 류경호텔을 오는 4월 김일성 주석 생일에 맞춰 일부를 개관하기로 하고 내부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소식통은 “북한이 자금부족과 대규모 관광객 유치 문제로 류경호텔 105층 전체 내부 공사는 어렵게 되자 절반에 가까운 46층까지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함.
- 북한은 지난 1987년 프랑스와 합작으로 평양직할시 보통강구역에 1백5층(지하 4층 지상 101층) 높이의 류경호텔 건설에 들어가 2년 뒤인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맞춰 공사를 끝낼 예정이었지만, 자금 부족으로 여러 차례 공사가 지연된 끝에 결국 1992년 60% 완공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음.
- 그러나 2008년 4월에 북한의 이동통신회사를 합작 운영 중인 이집트의 국영 통신사인 오라스콤 그룹이 2억 1,500만 달러를 투입해 중단됐던 류경호텔의 공사가 재개돼 아랍에미리트의 에마르 디벨롭트사가 호텔 외벽의 유리공사를 맡아 2011년 7월 외부 공사를 마쳤음.

연합뉴스, "北, "4월에 105층 류경호텔 개관 한다"", 2012.1.11

☐ 北, 유기농법 관심..."안내서 전국에 배포"

- 북한에서 화학비료 부족과 토양의 산성화 등으로 유기농법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유럽의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11일 “북한 과학원이 최근 북한에서 처음으로 ‘유기농법 안내서’ 수천 권을 제작해 평양 인민학습당과 김일성대학 등의 농업관련학과와 각 도의 협동농장에 비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 북한에서 농업지원을 했던 미국의 민간단체 관계자도 “살충제와 화학비료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에서는 유기농법을 꾸준히 적용하면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박사도 “북한이 경제난으로 외부에서 수입된 화학비료나 농약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북한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유기농 자재를 사용한 유기농법을 권장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힘.
연합뉴스, "北, 유기농법 관심..."안내서 전국에 배포", 2012.1.12

□ 김정은, 中위안화 사용 전면 금지

- 11일 대북 인권단체 ‘좋은벗들’이 발간하는 ‘오늘의 북한소식’(437호)에 따르면 중앙당은 주민들에게 외화를 북한 돈으로 바꾸도록 지시하고, 위안화로 거래하다 적발되면 물품과 지폐를 몰수당할 뿐 아니라 다시는 장사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중앙당의 한 간부는 “이번 정책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며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함.
- 위안화는 주로 탈북자 가족으로부터 유입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탈북자와 북한 주민 간 연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소식지는 전함.
- ‘좋은벗들’은 대북 소식통을 인용,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찾아 가도 미적거리던 중국이 최근 식량을 50만 톤이나 주겠다고 한 것은 새 지도부가 안착하기 전에 대중 의존도를 확실하게 높여 놓겠다는 심산”이라며 “그러나 중국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우려한 북한 새 지도부가 고민 끝에 이런 금지령을 내린 것”이라고 전함.

한국일보, "김정은, 中위안화 사용 전면 금지", 2012.1.12

□ 작년 남북교역 총액 전년대비 10% 감소

- 14일 한국무역협회의 남북교역통계에 따르면 작년도 남북교역액은 반출액과 반입액을 합쳐 총 17억 1,000만 달러로 2010년의 19억 달러에 비해 10% 감소함.

- 반출액은 8억 달러로 전년도 8억 6,000만 달러에 비해 7% 정도 줄었고, 반입액도 9억 1,000만 달러로 전년도 10억 4,000만 달러에 비해 12.5% 감소함.
- 남북교역액은 1995년 2억 8,000만 달러에 불과했다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매년 크게 증가함. 해마다 증가하던 교역액은 2008년 18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2009년 16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바 있음.

연합뉴스, "작년 남북교역 총액 전년대비 10% 감소", 2012.1.14

□ 북한 1인당 국민소득 1,074달러..남한과 19배차

- 2010년 북한과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19.3배 차이인 것으로 조사됨. 2009년에 비해 격차가 더 커졌음.
- 17일 통계청이 발간한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남한의 명목 국민소득(GNI)는 1조 146억 달러로 북한의 260억 달러보다 39배 많았음.
 - 1인당 GNI는 남한이 2만 759달러인 반면 북한은 1,074달러에 불과해 19.3배의 차이를 보임. 2009년에는 남한이 1만 7,193달러, 북한이 932달러로 18.4배 차이였지만 격차가 확대됨.
- 경제성장률은 남한이 6.2%, 북한은 -0.5%로 5.7%p 차이를 보였고 인구는 남한이 4,941만명, 북한은 2,418만 7,000명으로 조사됨.

머니투데이, "북한 1인당 국민소득 1,074달러..남한과 19배차", 2012.1.17

□ 北, 외화 사용 금지... “평양 간부들은 카드 사용”

- 북한에서 전국적으로 외화 사용을 금지한 가운데 평양지역의 간부들은 상점이나 외화 식당, 호텔 등을 이용할 때 외화 대신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18일 소식지에서 전함.
- 소식지는 그러나 “평양의 간부들은 은행에 최소 1,000달러 이상의 외화를 예금한 뒤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해 당장의 큰 불편은 없지만, 지방에서는 외화 사용이 자유롭지 못해 중국과의 거래에 지장을 받아 간부들은 재정 확충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것”이라고 전함.

- 전국 보안당국에서는 시장이나 상점들에서 인민폐와 달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돈을 몰수하고, 그 출처를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임.
 - 한편, 월스텐홈 북한주재 영국대사는 18일 북한 당국이 외화사용 금지조치를 취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북한은 원래 많은 소문이 있는 곳으로, 그러한 조치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우리는 여전히 외화를 사용하고 있고 위안화를 포함한 외화사용 금지와 관련된 어떤 증거도 보지 못했다”고 말함.
- 노컷뉴스, "北, 외화 사용 금지..."평양 간부들은 카드 사용", 2012.1.18

□ 北 10만호 건설 '올인'에 전력난·물가 급등

- 북한이 ‘강성대국의 해’로 선포한 올해 완공기로 한 평양 10만 호 건설에 주력하면서 전력과 용수난이 심화하고 있으며 물가도 급등한 것으로 알려짐.
- 19일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평양 시내 일반 가정에 하루 3시간의 전력만 공급되고 있으며 용수 공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최근 북한에서 나왔다는 한 화교는 “지난해 겨울부터 전력 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하루 3시간가량만 공급되고 있다”고 전함. 그는 “지난해 여름에는 적어도 평양만큼은 하루 온종일 전력이 공급될 만큼 여유가 있었다”며 “최근 수년 사이 최악의 전력난”이라고 평함.
- 물가 역시 급등하고 있음. 최근 평양에서 쌀 1kg이 북한 돈 5천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돼지고기 가격은 1kg에 1만2천원까지 올라 김 위원장 사망 이전보다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北 10만호 건설 '올인'에 전력난·물가 급등", 2012.1.19

□ UNDP, 올해 대북사업 식량문제 개선에 중점

- 유엔개발계획(UNDP)이 올해 대북사업을 ‘수확 후 손실 감소 사업’ 등을 통한 식량안보 개선에 중점을 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전함. 식량안보는 인구증가, 자연재난, 전쟁 등을 고려해 항상 일정량의 식량을 확보하는 것을 말함.
- UNDP는 북한의 식량안보 개선을 위해 ‘수확 후 손실 감소 사업’, ‘종자 생산

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둘 계획임. '수확 후 손실 감소 사업'은 탈곡기, 분쇄기 등 농기구와 곡물 저장시설을 재정비하는 활동을 포함함.

- UNDP는 평양의 삼옥구, 함경남도 요남군, 평안남도 문독군, 황해북도 고산군과 신계군의 협동농장 등의 농업 종사자와 전문가에게 현대화된 농업장비를 제공하고, 수확 후 곡식 탈수법, 탈곡기와 분쇄기 등의 사용법을 가르칠 예정임.
- 또 UNDP는 평양 강동군, 평안남도 석촌군 등에서 '종자생산 개선사업'을 통해 연간 종자 생산을 5~6% 늘리는 것을 목표로 올바른 종자 증식법도 보급할 계획임.

연합뉴스, "UNDP, 올해 대북사업 식량문제 개선에 중점", 2012.1.20

☐ 中, 北라진항 통한 석탄 남방운송 본격화

- 중국이 북한 원정리-라진항 구간 도로의 확·포장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라진항을 이용한 석탄의 남방 운송에 본격적으로 나섬.
- 지난 8일 훈춘창리(創立)해상운수물류유한공사가 상하이로 운송할 석탄 7천 톤을 훈춘(琿春) 취안허(圈河) 통상구에서 원정리를 거쳐 라진항으로 운송했다고 연변인터넷방송이 20일 보도함.
- 남방으로 갈 훈춘산 석탄이 라진항으로 운송된 것은 이번이 6번째며, 도로 보수 공사로 원정리-라진항 구간 도로가 폐쇄된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임.
- 중국은 라진항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월 원정리-라진항 구간 비포장도로의 2차로 확·포장 공사에 나서 지난해 말 개통했음. 도로 보수에 따라 원정리-라진항 통행 시간이 2시간에서 50분으로 단축됐으며 모든 구간이 정비되면 30분으로 앞당겨지게 됨. 중국은 라진항을 통해 연간 100만톤의 석탄을 남방으로 운송할 계획임.

연합뉴스, "中, 北라진항 통한 석탄 남방운송 본격화", 2012.1.20

☐ 北 근로자 수백명 러 아무르 건설공사 참여

- 북한의 건설 노동자 수백명이 올해 러시아 아무르주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올레그 코제미야코 아무르 주지사가 19일 밝힘.

- 아무르주 공보실에 따르면 코제미야코 주지사는 이날 나훔카에서 북한 심국련 총영사와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이들 노동자는 바이칼-아무르 철도 부근에 살고 있는 영세민 가옥 건설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특히 북한 주민들이 아카린스키 등 일부 지역 농장지대를 이용,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추가적인 협력확대 의사를 피력함.
 - 주지사는 이를 위해 심 총영사가 오는 2월초 러시아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북한인들에게 제공될 농장을 직접 둘러볼 것을 제안하면서 아무르주는 북한인들이 필요로 하는 연료와 종자의 절반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함.
- 연합뉴스, "北 근로자 수백명 러 아무르 건설공사 참여", 2012.1.20

□ 작년 개성공단 생산액 14.4% 증가

- 23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개성공단 생산액은 3억 6,986만 달러로 2010년 전체의 3억 2,332만 달러보다 14.4% 증가함. 아직 집계되지 않은 12월 치까지 더해지면 생산액 증가율은 더 커질 전망이다. 1~11월까지 생산액이 전년보다 25.7%나 늘어났기 때문임.
 - 개성공단 월평균 생산액은 올해 1월 3,105만 달러를 돌파한 뒤 2월(2,535만 달러)를 제외하고는 모두 3천만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 같은 생산액 증가는 노동집약적인 개성공단 특성상 꾸준히 증가하는 북측 근로자 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북측 근로자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4만 8,70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 중임. 2010년 말 4만 6,284명에서 거의 1년 사이에 2,424명이 늘어남.
- 연합뉴스, "작년 개성공단 생산액 14.4% 증가", 2012.1.23

□ 美, 작년 대북수출 승인 10배 상승

- 미국 정부가 2011 회계연도에 23건의 대북수출을 승인했으며 총 대북수출 규모가 1년 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전함.
-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전국(BIS)은 지난 20일 공개한 '2011 회계연도 연례 보고서'에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승인된 대북수출은 총 23건, 약 3천

830만 달러 규모로 전년도 310만 달러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었다고 밝힘.

- 보고서는 미국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물품 대부분은 인도주의 지원물자로 전체 규모의 99.8%인 3,826만 달러 상당은 식량 및 의약품이라고 강조함. 인도주의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0.2%(약 8만 7천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은 휴대용 발전기나 정보보안장치, 일반용 전기장치 등으로 BIS의 수출 심사를 통과하고 북한으로 수출됨.

연합뉴스, "美, 작년 대북수출 승인 10배 상승", 2012.1.24

☐ 유니세프 "北영유아 80% 이상 영양실조"

-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10명 중 8명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발표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전함.
- UNICEF는 북한 4개도(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에서 태어난 6개월 이상 영아부터 5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벌인 영양 실태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중 도별로 많게는 약 87%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UNICEF 동남아시아 사무소의 제프리 킬리 대변인은 이 방송에 “북한 4개도 25개 군에 사는 아동 약 21만 명 중 88%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며 “함경남도의 5세 미만 아동 중 87%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려 이 지역의 영양실조율이 가장 높았다”고 밝힘.
- UNICEF는 지난해 11월 말 북한 보건성의 협력 아래 이들 4개 도에 1천여 명의 의사를 파견,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중증 영양실조 실태를 조사함.

연합뉴스, "유니세프 "北영유아 80% 이상 영양실조"", 2012.1.25

☐ 北 "황해남도에 대규모 수로 건설 착공"

- 북한 황해남도에 대규모 ‘자연흐름식 물길(수로)’이 새로 건설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자연흐름식 물길은 취수장에서 정수장, 배수지 등으로 물을 보내는 과정에 가압펌프 등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방법임.
- 중앙통신은 “이 물길건설은 김정일 동지와 김정은 동지의 웅대한 구상을 실현

하는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대자연 개조사업"이라며 물길이 완성되면 웅진·강령·벽성군 등에 있는 농경지와 간석지, 논에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함. 또 수만 kW의 전력을 절약하고 재령강 일대의 수해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임.

- 북한은 2000년대 개천~대성호(150km), 백마~철산(270km) 등 규모가 큰 자연 흐름식 물길을 잇달아 건설한 바 있음.

연합뉴스, "北 "황해남도에 대규모 수로 건설 착공", 2012.1.26

□ 北 후진국형 무역구조로 후퇴

- 북한의 전체 수출입에서 1차 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등 무역구조가 후진국형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6일 전함.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최근 발표한 '2011년 통계핸드북'에 따르면 북한의 전체 수출에서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5년 11.5%에서 2010년에는 44.5%로 크게 증가한 반면 제조업 제품의 수출 비율은 69.3%에서 49.4%로 20%포인트 가까이 줄었음. 주요 무역상대국도 선진국 중심에서 개발도상국 위주로 변함.
- UNCTAD 보고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북한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1억 5,100만 달러라고 밝힘.

연합뉴스, "北 후진국형 무역구조로 후퇴", 2012.1.26

□ 北 휴대전화 가입자 100만 명 돌파

- 북한 내 휴대전화 사업자인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 텔레콤은 2일(현지시간) 공시를 통해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함.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는 작년 6월 말 시점에서 66만 명을 웃돌았고 3개월 지난 9월 말에는 80만 9천명으로 증가함.
- 오라스콤 텔레콤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2011년 3분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고려링크의 453개 기지국을 통해 평양과 14개 주요도시, 86개 소도시, 22개 주요도로 등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고, 북한 주민의 94%가 휴대전화망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합뉴스, "北 휴대전화 가입자 100만 명 돌파", 2012.2.3

☐ 北, 과일 180억원어치 수입

- 압록강 하구의 북-중 접경지대인 중국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 시를 통해 매년 북한으로 과일 1만 톤가량이 수출돼온 것으로 전해짐. 주로 특권층을 위한 과일 수입은 일반 국민의 극심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매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 한편 랴오닝 성 정부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단둥에 대북 과일 수출을 전담 관리하는 '변경무역 수출과일 시장구매센터'가 설립됐다고 발표함. 설립 목적은 북한에서 늘어나는 과일 수요를 맞추고 수출 과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나아가 무질서한 대북 과일 수출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임.
- 이 센터는 대북 과일 수출시장 전체를 통제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대북 과일 수출은 모두 이 센터를 통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고 한함. 이 센터는 단둥 시가 만든 국영기업인 단둥 귀핀(果品)유한공사 산하로 1,000만 위안(18억 5,000만 원)을 들여 과일의 선별과 냉장 보관, 포장, 검사, 운송 능력 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비했음.

동아일보, "北, 과일 180억원어치 수입", 2012.2.7

2. 식량 사정

☐ 北, "식량배급 정상화 준비 한창"

- 북한당국이 2012년부터 전체 주민에 대한 식량배급을 정상화 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북한 전 지역에서 주민 식량배급표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최근 중국을 방문한 평양에 사는 한 주민은 "지난 10월 초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양시간에 내년부터 식량배급을 정상화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구역별로 식량배급소와 인민반장들이 각 가구의 연령별 식구 수를 조사하고 있다"고 자유

아시아방송에 전함.

- 그러나 북한에 살다가 중국에 정착한 화교 장모 씨는 “그동안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이라고 선전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자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정상적인 식량 배급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 한편, 북한에서는 해마다 100만 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한 가운데 지난 10월에는 중국에서 지난 한 해 수입량 8만 7,000톤의 거의 절반에 해당 옥수수 4만 1,380톤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남.

노컷뉴스, 北, "식량배급 정상화 준비 한창", 2011.11.25

☐ 유엔보고서 "北주민 66% 끼니 걸러"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주민의 66%가 일주일에 최소 한끼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파악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9일 전함.
- 두 기구는 보고서에서 “주민 대부분이 식사에 물을 섞어 불려 먹고 곡물과 야채, 된장, 간장으로 된 식사를 주로 하고 있었다”고 전함. 또 도시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의 90%가 협동농장에 있는 친척에게서 식량지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고, 북한 주민이 식사량을 줄이는 경우가 과거보다 늘었다고 밝힘.
- 보고서는 “배급에 의존하는 주민보다 협동농장 구성원과 집안에 텃밭과 가축을 기른 이들의 식사가 훨씬 나았다”며 “올해 북한 주민이 곡물을 확보하는 데 국영상점, 농민시장이 아닌 장마당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함.
- 한편 유엔은 “북한에서 지난겨울 강추위로 씨감자를 비롯해 겨울과 봄에 심을 종자가 60%나 부족한 상황”이라며 “북한이 수입으로 부족한 종자를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함.

연합뉴스, "유엔보고서 "北주민 66% 끼니 걸러"", 2011.11.29

☐ 北 '식량절약' 홍보..."쌀밥보다 국수가 낫다"

- 최근 북한 당국이 조선중앙TV와 유선 라디오방송인 제3방송을 통해 ‘식량절약’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조선중앙TV는 매주 목요일 저녁 뉴스가 끝난 직후에 ‘사회문화 생활시간’이라는 제하의 프로그램을 이례적으로 편성해 방송하고 있음.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내용 대부분이 ‘식량절약’과 관련된 것이라는 소식임.
- 양강도 소식통은 23일 데일리NK에 “요즘 3방송과 텔레비전에 장철구평양상업대학 강좌장인 서영일 박사란 사람이 나와 식량절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전함.
 - 서 박사는 방송에서 “선군시대에 새 문화가 활짝 꽃피어나고 있는 오늘날, 식생활을 다양하게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요구”라면서 “흰쌀밥보다 감자밥, 나물밥, 김치밥, 비빔밥이 건강에 좋고 점심과 저녁에는 국수나 빵을 주식으로 먹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고 있음.
- 잦은 폭우로 농사작황이 나빠진데다 환율불안에 식량가격을 비롯한 물가도 대폭 오르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임. 때문에 당국이 매체를 통해 주민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우회적으로 식량절약을 선동하고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데일리NK, "北 '식량절약' 홍보..."쌀밥보다 국수가 낫다"", 2011.11.23

□ 北, 10월 중국서 옥수수 대량 수입

- 북한이 지난 10월에 중국에서 옥수수를 대량 수입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의 소리 방송은 23일 중국 해관통계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 10월 중국에서 수입한 옥수수는 4만 1,380톤으로 지난 한 해 수입량 8만 7천 톤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고 있다”고 전함.
 - 북한이 한 달에 단일 곡물을 이처럼 많은 양을 수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입가격은 1톤에 377달러로, 모두 1,563만 달러를 지불함.
- 북한농업 전문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부원장은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이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공언한 내년도를 위한 준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함. 또, “중국이 지난해부터 식량 수입국으로 바뀌면서 북한이 내년부터 중국으로부터 옥수수를 수입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사전에 수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풀이함.

노컷뉴스, "北, 10월 중국서 옥수수 대량 수입", 2011.11.24

□ 유엔, "올해 北 식량 생산량 늘어났다"

- 북한의 2011년도 식량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8.5% 늘어난 도정한 알곡 기준으로 466만 톤을 기록했다고 유엔이 밝힘. 유엔 식량계획(FAO)의 키산 군잘 박사는 25일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도정하기 전을 기준으로 550만 톤, 도정한 알곡 기준으로는 466만 톤으로 추정됐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함.
- 군잘 박사는 “북한이 올해 투입한 비료는 2010년 24만 7천 톤에서 74만 5천 톤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질소비료 투입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함. 또, “디젤 연료와 전력, 농업용 비닐 박막 등 농자재 투입이 늘어나 이처럼 수확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함.
- 올해 식량 생산은 곡물인 옥수수가 11%, 쌀이 2% 늘었고 특히 콩 생산은 지난해에 비해 60% 증가함. 군잘 박사는 “올 여름 곡창지대인 황해도에 홍수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다면,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더욱 늘었을 것”이라고 말함.
- 유엔은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8.5% 늘어남에 따라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수를 기존의 6백만에서 절반인 3백만으로 집계함. 따라서 2012년에는 지난해 대북 지원에 필요한 43만 4천 톤보다 줄어든 12만 톤의 영양강화식품과 식용유, 콩 등이 지원돼야 하며, 특히 북동부의 양강도, 자강도, 함경도, 강원도에 특히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고 권고함.

노컷뉴스, "유엔, "올해 北 식량 생산량 늘어났다", 2011.11.26

□ WFP, "北 11월 배급량 365g으로 증가"

- 북한 당국이 올 가을 수확 이후 주민들에 대한 식량 배급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세계식량계획(WFP)이 밝힘. 세계식량계획의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6일 “북한 당국으로부터 11월에 주민 한 명 당 하루 365g의 식량을 분배했다는 자료를 받았다”며 “주로 옥수수를 배급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함.
-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배급량은 7월부터 9월까지 200g에 머물다가 10월에는 355g으로 늘어났으며, 11월에는 다시 365g으로 늘어났다고 전함. 스카우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최근 배급량을 늘린 배경으로 가을 추수를 언급했다”고 말함.

-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11월 중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한 식량은 152만 명에게 3,957톤의 영양강화식품을 분배해 지난 10월의 6,400톤, 9월의 8,400톤보다 줄었다고 밝힘. 스카우 대변인은 12월 중에는 3만 2,700톤의 곡물이 북한에 도착할 것이라고 덧붙임.

노컷뉴스, "WFP, "北 11월 배급량 365g으로 증가"", 2011.12.7

☐ FAO, 北 식량부족국으로 재지정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이달에도 북한을 식량부족국으로 다시 지정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9일 전함.
- FAO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곡물 수확량이 늘었음에도 경제난과 농자재 부족으로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다며 외부 지원이 필요한 33개 식량부족 국가에 북한을 또 넣었음.
- 북한은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곡물 26만 7,700톤을 수입하고 5만 9,500톤을 지원받아 식량 부족분 108만 6천톤의 30% 가량인 32만 7,200톤을 확보했음.
- FAO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상황을 단·중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밀, 보리, 감자 등 이모작 종자와 비닐 박막을 지원해야 하고, 북한 당국은 개별 가구의 텃밭농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함.

연합뉴스, "FAO, 北 식량부족국으로 재지정", 2011.12.9

☐ FAO "北 수개월내 아사자 속출할수도"

- 북한은 올해 작황 개선에도 만성화된 겨울식량 위기로 수개월 내 아사자들이 속출할 수 있다고 유엔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전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23일 보도함.
- FAO는 '아시아 식량현황' 보고서에서 "올해 수확량이 작년보다 8.5% 늘었지만 주민들을 먹여 살릴 식량이 바닥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어서 외부 지원이 없으면 수개월 내 식량난 심화로 아사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함.
- 식량안보 분석가인 아리프 후세인은 RFA에 "작황 개선과 무관하게 주민들의 영양실조가 심각한 상태여서 내년에 약 300만 명이 외부의 식량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함.

- 덴마크 비정부기구(NGO)인 '미션 이스트'의 피터 드러몬드 스미스 사업국장도 “자체 식량생산으로 약 10개월 간 주민을 먹여 살릴 수 있고 확보된 수입 물량으로도 약 2주간 버틸 수 있다”며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사회적 동요까지 일어나면 식량 사정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함.
연합뉴스, "FAO "北 수개월내 아사자 속출할수도"", 2011.12.23

□ 北, "애도기간 소규모 식량 배급"

- 북한당국은 김정일 위원장 애도기간 중에 주민들에게 소량의 식량을 배급한 것으로 알려짐.
- 최근 북한을 방문한 중국인 왕 모 씨는 2일 “김 위원장 장례기간에 평양주민들에게 15일분의 식량배급을 실시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전함. 중국에서 만난 신의주 주민 류 모 씨는 “신의주의 경우, 애도기간 중 3일분의 식량이 공급됐다”고 밝힘.
- 소식통은 “북한이 식량난을 겪는 가운데 김정일 위원장의 애도기간 중에 주민들에 식량을 공급한 것은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함.
노컷뉴스, "北, "애도기간 소규모 식량 배급"", 2012.1.3

□ WFP "北 10월부터 식량 배급량 증가"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당국이 12월에 주민 1인당 하루 375g의 식량을 분배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4일 전함.
- WFP의 마커스 프라이어 아시아 담당 대변인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배급량이 7~9월 200g에 머물다가 4개월 만인 10월에 355g 11월 365g, 12월에는 375g으로 늘어났다고 밝힘.
- 북한 당국은 이처럼 식량배급량이 증가한 배경에 대해 가을 추수를 언급했으며 2012년에는 1인당 배급량을 380g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WFP는 소개함. WFP는 12월 중 북한 주민 310만 명에게 3만 5,208톤의 식량을 분배했음.
연합뉴스, "WFP "北 10월부터 식량 배급량 증가"", 2012.1.5

□ 北, 美에 "영양지원 규모 늘려달라" 요구

-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8일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추도기간이 끝나기 전인 지난달말 뉴욕채널을 통해 대북 영양지원 규모를 늘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양지원 뿐만 아니라 알곡도 포함시켜 달라고 했다”고 말함. 북한은 당초 24만 톤보다 늘어난 30만 톤 가까이 지원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 미국은 지원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짐. 미국은 그동안 2008년 북한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식량 50만 톤 가운데 미집행된 33만 톤 내에서 대북 지원규모를 검토해옴.
- 정부 소식통은 “북측의 요구가 지난달 16일 북미의 식량지원 협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새롭게 정리된 북측의 요구인지, 또 현장 실무자들의 제안인지 알기 어렵다”면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말함.

연합뉴스, "北, 美에 "영양지원 규모 늘려달라" 요구", 2012.1.8

3. 가격 추이

□ 北, 위안화 쌀값 폭등..."화폐교환 등 각종 소문 무성"

- 최근 북한에서 환율과 쌀값 등 생필품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은 출처를 알 수 없는 화폐개혁에 대한 유언비어와 위안화 폭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함경북도 소식통은 15일 “지난달 말 중국 인민폐 대 북한 돈 환율이 1:620원까지 폭등한 것은 평성시 일대에 퍼진 화폐교환 소문 때문”이라며 “아직까지도 소문이 가라앉지 않아 환율이 내리지 않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 북한 지역에는 또 가을걷이가 끝났는데도 쌀값이 1kg에 3,500원선을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쌀값 폭등도 위안화 상승과 함께 전력난으로 탈곡이 늦어지면서 햅쌀이 아직 북한 시장에 대량으로 거래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됨.

노컷뉴스, "北, 위안화 쌀값 폭등..."화폐교환 등 각종 소문 무성", 2011.11.16

□ 北, 환율 쌀값 폭등...'화폐개혁 후 최고치'

- 최근 북한의 쌀값과 환율이 폭등해 화폐개혁 이후 최대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북한 양강도 소식통은 28일 “북한의 쌀값과 환율이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해 현재 도내 쌀 1kg의 시장가격은 4,000원을 넘었고, 중국 위안화당 북한 환율은 720원 선을 기록했다”고 데일리NK에 전함.
- 소식통은 “27일 오후 4시 기준으로 혜산시장에서 1위안은 북한 돈 720원, 북한쌀은 1kg에 4,000원, 중국쌀은 3,200원, 참쌀은 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함.
- 소식통은 “위안화 가격이 1,000원까지 오르고 쌀값도 5,000원까지 뛴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쌀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을 팔지 않고 ‘더 비싸지면 팔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 식량을 준비하지 못한 주민들도 걱정이 많다”라고 전함.
-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강성대국 원년을 앞둔 북한당국이 그동안 벌여놓은 대형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한 외화 지출로 인해 외화 고갈로 이어진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고 주장함.

노컷뉴스, "北, 환율 쌀값 폭등...'화폐개혁 후 최고치'", 2011.11.29

□ 北, 환율 쌀값 연일 급등세...

- 북한의 환율과 쌀값이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7일 “7일 아침 920원대에서 출발한 중국 인민폐 대 북한 돈 환율이 신의주 지역에서 1,100대까지 올랐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단숨에 100원 넘게 급등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 소식통들은 “환율이 오르면서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쌀 1kg가격이 2천 원대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북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4,800원으로 뛰어 올랐다”고 전함.
- 이처럼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11월 초에 들면서 내년도 주민들에게 줄 선물을 마련하라는 후계자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무역기관들마다 개인 환전꾼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조건으로 외화를 마구 끌어 들였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주장함.

- 한편, 환율이 급등하면서 장사꾼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고, 농민들은 팔려고 내놓았던 식량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노컷뉴스, 北, "北, 환율 쌀값 연일 급등세...", 2011.12.8

☐ 천정부지로 치솟는 北쌀값...1kg 5,000원 돌파

- 12일 내부소식통들이 데일리NK에 전한데 따르면 현재 함북 회령과 무산, 양강도 혜산의 쌀 가격은 1kg에 5,000원선을 돌파함. 중국 위안화 대비 환율도 700원대 초반에서 혜산은 800원, 무산과 회령은 1000원 수준으로 급상승함.
- 장마당 (판)매대에서 장사를 하는 혜산 소식통은 "이미 설날에 떡 해먹기를 포기했다"며 "조선 쌀이 5,000원을 넘어서고 있고 중국 쌀도 3,800원이다. 가는 곳 마다 아우성 소리뿐이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함.
- 현지 주민들은 이처럼 쌀값이 급상승하는 이유로 중국 위안화 대비 환율상승을 꼽고 있음. 화폐개혁 이후 북한 돈에 대한 신뢰하락으로 중국 위안화(元)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면서 쌀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임.
-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장마당 내 쌀의 공급량은 이전에 비해 큰 차이가 없음. 따라서 시장 내 쌀의 수요와 공급과는 별개로 주거래 화폐인 위안화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쌀값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진단임. 이미 주민들 속에서는 위안화가 교환,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일상화 되고 있는 추세임.

데일리NK, "천정부지로 치솟는 北쌀값...1kg 5,000원 돌파, 2011.12.12

☐ 김정일 사망 北시장 물가에 영향 못 줘

- '김정일 사망'이라는 초대형 사태가 발생했지만 북한 시장물가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김정일 사망 후 시장이 재개되기까지 시장 폐쇄에 따른 소폭 가격상승만 나타났을 뿐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음.
- 북한 내 물가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 온 쌀(1kg) 가격의 경우, 김정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19일 함경북도 등 국경지역에서 4,000원 수준으로 전 주보다 1,000원 가량 하락했음. 김정일 사망으로 즉시 시장이 폐쇄되자 밀거래 가격은 5,000원이 됐으나 시장이 다시 열린 25일에는 4,500원으로 떨어짐.

- 소식통들은 “아직 예전 수준은 아니지만 장사가 재개되면서 쌀이 시장에서 유통되니까 자연스럽게 가격도 하락했다”라고 말함. 쌀값과 더불어 다른 생필품 가격도 더불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데일리NK, "김정일 사망 北시장 물가에 영향 못 줘", 2011.12.27

□ 北, "식량·환율 사상 최대 폭등"

-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국경경비 강화로 밀수가 막힌 데다 주민이동까지 금지되면서 식량가격과 환율이 폭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 양강도 소식통은 10일 “양강도의 중심시장이라고 하는 혜산장마당에서 쌀 1kg의 가격은 북한 돈 6,000원으로 폭등하고 환율은 중국 인민폐 1위안에 북한 돈 1,20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소식통은 “쌀장사꾼들의 경우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주민들에게 한 달 후에 1.5kg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강냉이(옥수수) 1kg을 꾸어주고 있고 돈 많은 장사꾼들이나 환전꾼들 역시 한 달에 50%의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고 전함.
- 한편, 북한 장마당에서 11월 초까지 식량가격은 쌀 1kg에 3,500원~4,000원 선을 유지했으며, 환율은 중국돈 1위안에 580원선에서 유지해 왔으나, 11월 25일에는 780원까지 오르고 12월 초에는 다시 1,100원선으로 급등했다가 12월 중순에는 600원선으로 폭락하기도 했음.

노컷뉴스, "北, "식량·환율 사상 최대 폭등"", 2012.1.11

4. 김정일 사망

□ 김정일, 중증급성 심근경색과 심장쇼크로 사망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증급성 심근경색과 심장쇼크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19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일 동지의 질병과 서거원인에 대한 의학적 결론서’ 제목의 보도를 통해 “겉썩인 정신육체적 과로로 지난 17일 야전열차 안에서 중증급성 심근경색이 발생되고 심한 심장성 쇼크가 합병됐다”며 “발병 즉시 모든

구급치료 대책을 세웠으나 17일 오전 8시30분에 서거했다”고 전함.

- 통신은 이어 “18일 진행된 병리해부 검사에서 질병의 진단이 완전히 확정됐다”고 덧붙임.

연합뉴스, "김정일, 중증급성 심근경색과 심장쇼크로 사망", 2011.12.19

□ 北, 김정은 위원장으로 232명 장의위원회 구성

-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19일 김 위원장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232명의 장의위원회를 구성함. 해당 장의위원회는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은이 전면에서 나서 눈길을 끌었음.
- 북한의 국가장의위원회는 공보를 내고 오는 29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외국 조의대표단은 받지 않기로 함.
- 또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을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하고, 17일부터 29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하며 20~27일 사이에 조객을 맞는다”며 “28일 평양에서 영결식을 거행한다”고 알림. 금수산기념궁전은 지난 1994년 사망한 김일성 주석이 묻힌 곳임.
- 이어 “김 위원장을 추모하는 중앙추도대회를 29일 연다”며 “중앙추도대회가 거행되는 시각에 평양과 각 도 소재지에서 조포를 쏘며 전체 인민이 3분 동안 묵도를 하고 모든 기관차와 선박이 일제히 고동을 울린다”고 전함.

마이데일리, "北, 김정은 위원장으로 232명 장의위원회 구성", 2011.12.19

□ 美-北, 김정일 사망후 첫 '뉴욕채널' 접촉

- 미국과 북한이 19일(현지시간) 뉴욕채널을 통해 실무접촉을 벌였다고 미 국무부가 밝힘.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된 ‘기술적 논의’를 전달 뉴욕채널을 통해 가졌다고 전함. 이는 김정일 사망 이후 미국과 북한간에 이뤄진 당국간 첫 공식 접촉임.
- 눌런드 대변인은 이 접촉에서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된 기술적 사안들만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좀 더 넓은 것을 논의했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것(접촉)은 실무 수준(technical-level)이었으며, (대북) 영양지원과 관련한 문제들을 명

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함.

- 그는 “(대북지원을 위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으며 이를 계속 논의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애도기간임을 감안할 때 우리가 새해 이전에 이들 문제에 대해 좀 더 명확히 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함.

연합뉴스, "美-北, 김정일 사망후 첫 '뉴욕채널'접촉", 2011.12.21

□ 北 김정은 명령1호.. "지도자 추인 상징"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전군에 ‘김정은 대장 명령 1호’를 하달한 것으로 밝혀져 그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김정은은 지난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전에 “훈련을 중지하고 소속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 1호를 하달했다고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이 21일 밝힘.
- 김 위원장 사망으로 명실상부한 북한의 새 지도자가 된 김정은이 북한군에게 내린 이 명령에 따라 동계훈련은 중지됐으며 각급 부대에서는 조기를 달고 김 위원장을 추모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군에 명령을 내린 것으로 미뤄 군권을 장악했으며 국정 전반을 지휘하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연합뉴스, "北 김정은 명령1호.. "지도자 추인 상징"", 2011.12.21

□ 北 "김정은 영도 따를 것" 강조

-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사흘째인 21일 북한 매체는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영도를 따를 것이라고 강조함.
-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의 주요 매체들은 이날 장송곡, ‘김정일 장군의 노래’ 등과 함께 전날 이뤄진 김정은 부위원장의 시신 참배 소식, 북한 전역에서 이뤄지는 조문 활동 등을 반복 보도함.
- 중앙TV는 “장군님의 심장은 고동을 멈췄지만 21세기는 영광스러운 김정일 세기로 빛날 것”이라며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받들어 새 세기 산업혁명 불길높이 경공업 제품의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나가겠다”는 김

병호 내각 경공업성 국장의 인터뷰를 내보냈음.

-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한 태양’ 제목의 보도에서 “자애로운 아버지, 인간사랑의 최고화신이였다”고 김 위원장을 칭송하며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앞길을 찬란한 영도의 빛발로 환히 밝혀주고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업을 승리로 이끌어준다”고 찬양함.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도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것이다’ 제목의 ‘반영’(반향)에서 “비애와 상실의 아픔이 클수록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더 굳게 새겨지는 것은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더욱 억세게 투쟁해 나갈 불같은 맹세”라고 강조함.

연합뉴스, "北 "김정은 영도 따를 것" 강조", 2011.12.21

□ 김정은 '조문정치' 시작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추모기간을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주민의 충성 다짐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 국제사회에는 북한이 ‘김정일 시대’에서 ‘김정은 시대’로 바뀌었음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고 있음.
- 김 부위원장은 20일 금수산기념궁전에 마련된 김 위원장의 빈소에서 고위인사들을 맞이하며 최고지도자로서 홀로서기를 시작한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면서 사실상 충성서약을 받았음.
- 북한의 언론매체에 등장하는 주민들이 김 부위원장에 대해 ‘영도자’, ‘계승자’, ‘위인의 풍모’ 등 찬양조의 발언을 쏟아내는 것도 북한 사회 전반에 충성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의 하나로 분석됨.

연합뉴스, "김정은 '조문정치' 시작", 2011.12.21

□ 中 수뇌부 9명 전원 조문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중국 수뇌부가 21일 오전 베이징(北京) 주재 북한 대사관을 방문해 단체로 조의를 표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함. 원 총리 외에 자칭린(賈慶林) 정협 주석, 리커창(李克強) 상무부총리, 허궈창(賀國強)·저우융강(周永康) 정치국 상무위원이 이날 북한 대사관을 찾음.

- 앞서 하루 전인 20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비롯해 우방궈(吳邦國) 전 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리창춘(李長春)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은 당·정·군 관계자들을 대동하고 조문함. 이로써 중국 권력을 균점한 9명의 상무위원이 모두 김정일 위원장의 빈소를 찾았음.
- 후 주석은 북한 대사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 당과 정부는 김정일 동지의 서거에 비통한 심정”이라며 “중국 인민은 조선의 위대한 영도자이자 중국 인민의 친밀한 벗인 그를 영원히 그리워할 것”이라고 말함.
- 후 주석은 이어 “우리는 조선 인민이 김정일 동지의 유지를 받들어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단결해 김정은 동지의 영도 아래에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中 수뇌부 9명 전원 조문", 2011.12.21

□ 北 노동당,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모임 지시"

- 북한 노동당(조직지도부)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애도기간이 끝나는데로 후계자 김정은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기 위한 집회와 모임을 가질 것에 대한 지시문을 하달했다고 대북 매체가 전함.
- 대북 매체인 자유북한방송은 23일 북한 내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22일 밤 10시쯤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각 도당과 군, 보위사령부, 인민보안부를 통해 지방 행정기관과 1급기업소, 인민군 대대와 중대정치지도원 등 세포조직(노동당 말단 조직) 책임자들에게까지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힘.
- 지시문은 “후계자 김정은 추대 집회와 모임은 12월 30일 10시부터 노동당 세포조직을 중심으로 공개 당 총회형식으로 하고 12월 31일에는 1급 기업소 이상, 도 행정위원회와 군을 포함한 중앙부처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김정은 추대 집회를 가질 것을 지시했다”고 말함.

연합뉴스, "北 노동당,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모임 지시'", 2011.12.23

□ 北,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시사

- 북한이 새 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할 것으로 보임. 노동신문은 24일 ‘우리의 최고사령관’이라는 장문의 정

론에서 “우리는 심장으로 선언한다”며 “김정은 동지를 우리의 최고사령관으로, 우리의 장군으로 높이 부르며 선군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것”이라고 밝힘.

- 노동신문은 “김정은 동지시여, 인민이 드리는 우리 최고사령관 동지의 그 부름을 안으시고 김일성 조선을 영원한 승리로 이끄시라”고 강조해 김 부위원장의 최고사령관직 승계가 추대형식을 통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함.
- 노동신문이 추대분위기를 만든 만큼 앞으로 군을 비롯한 북한의 각 계층에서 최고사령관직 승계 요구가 이어지고, 김 부위원장이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최고사령관에 오를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北,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시사", 2011.12.24

☐ 장성택 대장복차림 등장…軍집단지도 예고

-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대장 군복을 입고 등장해 김정은 체제가 군부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짐.
- 조선중앙TV는 25일 오전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는 장면을 전하면서 대장 계급장을 단 군복 차림의 장 부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장면을 내보냄. 군복 차림의 장 부위원장의 모습이 북한 매체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특히 장 부위원장은 김 부위원장의 우측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바로 옆에 서 군부 내 권력서열이 급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장 부위원장은 대장 칭호를 받은 적이 없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후 권력공백을 막으려고 내부적으로 서둘러 군사칭호를 준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북한은 김 부위원장을 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고 장 부위원장과 군부 고위인사들을 축으로 하는 군부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해 비상상황을 돌파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연합뉴스, "장성택 대장복차림 등장…軍집단지도 예고", 2011.12.25

☐ 北김정은 또 참배…"당·국가·군대 영도자" 호칭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을 또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김 부위원장의 참배는 지난 20일과 23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임.

-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꾼과 함께 김정일 동지의 영전에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들, 세계 진보적 인류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영생을 기원하시여 묵상하셨다”고 밝힘.
- 김 부위원장의 이날 참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망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조문을 맞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특히 중앙통신은 김 부위원장을 언급하면서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영명한 영도자’로 칭하기도 했음.
- 이날 참배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 수행함.

연합뉴스, "北김정은 또 참배..."당·국가·군대 영도자" 호칭", 2011.12.27

□ 김정일 영결식... '37년 절대권력' 종언

- 북한의 절대권력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이 사망 11일 만인 28일 오후 2시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열림. 영결식은 오후 5시까지 3시간 동안 눈 속에 진행됨.
- 조선중앙TV 등 북한 방송매체는 김 부위원장이 김 위원장의 시신을 실은 영구차를 호위하며 등장하는 장면부터 행사를 생중계함. 김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과 차남 김정철은 불참했고, 딸 김여정으로 추정되는 여성은 금수산기념궁전 주석단에 모습을 나타냄.
- 김 위원장의 대형 초상화를 실은 차량을 선두로 김 부위원장의 조화, 영구차, 주석단 순으로 이뤄진 운구행렬은 금성거리-룡흥 네거리-비파거리-보통문거리-천리마거리-통일거리를 거쳐 김일성광장으로 향함. 연도에 선 주민은 영구행렬이 지날 때 오열하는 모습을 보임.
- 영결식을 마친 김 위원장의 시신은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돼 영구보존되는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김정일 영결식... '37년 절대권력' 종언", 2011.12.28

□ 北 '영구차 호위 8인' 새 지도부 핵심주체 확인

- 2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에서 영구차를 호위한 8명이 '김정은 시대'를 이끄는 핵심인물임을 북한 매체가 확인함.
- 북한 노동신문은 29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이 날짜 노동신문에서 1면과 3면에 전날 촬영된 영구차 호위 장면 사진을 3장이나 실었음. 노동신문에 실린 이 사진에는 별도의 사진설명(캡션)이 없지만 사진을 캡처하거나 프린트를 하면 '김정은 시대를 이끄는 당·군 주요인물'이라는 설명이 함께 나옴.
- 전날 영결식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그 뒤에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최태복 비서가 서고, 건너편에는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춘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순으로 도열해 김 위원장 영구차를 호위했음.

연합뉴스, "北 '영구차 호위 8인' 새 지도부 핵심주체 확인", 2011.12.29

□ 北 '김정은 영도' 선언...대규모 추도대회

- 북한은 29일 김일성광장에서 중앙추도대회를 열고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최고지도자로 하는 새 시대의 개막을 선언함. 주석단 중앙에는 김 부위원장이 등장했고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도열해 '김정은 시대'를 과시함.
- 최태복 당 비서의 사회로 시작된 추도대회에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추도사를 통해 "우리의 전도에는 계승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서 계신다"며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 담력과 배짱을 이어받은 최고 영도자"라고 김 부위원장을 치켜세움.
- 김기남 노동당 비서도 연설자로 나서 "김정은 동지의 영도따라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함.
- 이날 행사에는 김일성광장의 옆 도로까지 인파로 채워져 10만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추정됨.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전날 김 위원장 영결식에 이어 이날 중앙추도대회도 생중계로 전함.

연합뉴스, "北 '김정은 영도' 선언...대규모 추도대회", 2011.12.29

□ 통일부, 北신년사설 "기존정책 노선 유지"

- 통일부는 1일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 대해 “김정일 유훈 통치에 따른 기존정책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밝힘.
 - 경제 부문에서는 주공 전선으로서의 경공업·농업 설정, ‘함남의 불길’ 확산 강조, 식량문제 해결 등을 주장하며 강성부흥 전략관철을 위한 총돌격 전을 강조했다고 분석함. 또 군사부문에서 선군혁명의 계승과 함께 강성국가 건설의 역할을 강조하고, 당 중심의 운영 시스템을 부각했다고 지적함.
 - 특히 대남관계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4년 만에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했다”고 평가함. 대외정책도 핵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기본적인 대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함.
 - 통일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방러 성과를 평가하면서 전통적인 자주·친선·평화 등의 선린 우호관계 입장을 견지했다”면서 “특이한 점은 2009~2011년까지 언급했던 ‘비핵화 실현’ 입장 등 핵 문제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밝힘.
- 연합뉴스, "통일부, 北신년사설 "기존정책 노선 유지"", 2012.1.1

□ 김정은 첫 공식활동으로 선군·체제안정 과시

-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첫 공식활동을 통해 선군노선의 계승의지와 체제안정을 과시함. 김 부위원장은 1일 선군정치 의 출발점이 된 ‘근위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을 방문하고 ‘혁명의 성지’라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함.
-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과 함께 1960년 8월25일 ‘근위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을 방문한 날을 ‘선군영도 개시일’로 정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은 생전에도 새해 첫 공식활동을 이 부대 시찰로 시작한 사례가 종종 있음.
- 105탱크사단 방문에는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 김정일 영구차 호위 8인방 중 3명이 대동함. 여기에는 황병서 당 부부장, 박재경·현철해 대장 등 북한의 국방업무를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실무 핵심실세가 수행함. 또 금수산기념궁전 참배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김영춘 인민무력

부장 등 당·정·군 고위인사들이 함께함.

- 선군노선의 계승과 더불어 북한은 김 부위원장의 첫 공식활동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음. 특히 김 부위원장의 새해 첫날 금수산기념궁전 참배는 3대 세습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효심을 강조함으로써 주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도 볼 수 있음.

연합뉴스, "김정은 첫 공식활동으로 선군·체제안정 과시", 2012.1.1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4

농업교류협력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10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11년 10월 중 남북교역액은 15,173만 달러로 전년 동월 16,600만 달러에 비해 8.4% 감소(전월 14,833만 달러 대비 2.3% 증가)
- 반입은 8,325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9,590만 달러에 비해 13.2% 감소(전월 7,906만 달러 대비 5.3%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42.9%, 전자전기제품 34.0%, 생활용품 9.1%, 기계류 7.0%, 화학공업제품 3.7% 등임.
- 반출은 6,849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6,970만 달러에 비해 1.7% 감소(전월 6,927만 달러 대비 1.1%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8.0%, 전자전기제품 33.5%, 기계류 7.0%, 생활용품 5.4%, 화학공업제품 4.5% 등임.

□ 10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11년 10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51.5만 달러로 전월 37.0만 달러 대비 39.2% 증가하고 10월 전체 반입액 8,325만 달러의 0.6%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28.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3%), 어패류 등 수산물이 23.4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3%)를 차지했음.

* 통일부에서 발간하는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과 통일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임.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11년 10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25.8만 달러로 전월 334.7만 달러 대비 32.5% 증가하고 10월 전체 반출액 6,849만 달러의 3.3%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200.7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2.9%), 분유 등 축산물이 3.7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합관 등 임산물이 1.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2%), 어패류 등 수산물이 19.8달러(전체 반출액의 0.3%)를 차지했음.

□ 1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11년 11월 중 남북교역액은 14,670만 달러로 전년 동월 15,148만 달러에 비해 3.2% 감소(전월 15,173만 달러 대비 3.3% 감소)
- 반입은 7,570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8,033만 달러에 비해 5.8% 감소(전월 8,325만 달러 대비 9.1%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8.5%, 전자전기제품 36.8%, 생활용품 9.6%, 기계류 7.6%, 화학공업제품 3.9% 등임.
- 반출은 7,100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115만 달러에 비해 0.2% 감소(전월 6,849만 달러 대비 3.7%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8.4%, 전자전기제품 27.6%, 기계류 7.7%, 생활용품 7.6%, 화학공업제품 5.9% 등임.

□ 1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11년 11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47.4만 달러로 전월 51.5만 달러 대비 8.0% 감소하고 11월 전체 반입액 7,570만 달러의 0.6%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25.9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3%), 어패류 등 수산물이 21.5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3%)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11년 11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55.0만 달러로 전월 225.8만 달러 대비 0.3% 감소하고 11월 전체 반출액 7,100만 달러의 3.6%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239.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3.4%), 분유 등 축산물이 1.5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2%), 합판 등 임산물이 3.5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5%), 어패류 등 수산물이 10.9달러(전체 반출액의 0.2%)를 차지했음.

□ 12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11년 12월 중 남북교역액은 14,193만 달러로 전년 동월 13,057만 달러에 비해 8.7% 증가(전월 14,670만 달러 대비 3.3% 감소)
- 반입은 7,453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432만 달러에 비해 0.3% 증가(전월 7,570만 달러 대비 1.5%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44.3%, 전자전기제품 31.7%, 생활용품 8.1%, 기계류 7.1%, 화학공업제품 4.4% 등임.
- 반출은 6,739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5,625만 달러에 비해 19.8% 증가(전월 7,100만 달러 대비 5.1%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9.2%, 전자전기제품 26.4%, 화학공업제품 8.0%, 기계류 7.6%, 생활용품 5.6%, 등임.

□ 12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11년 12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79.1만 달러로 전월 47.4만 달러 대비 66.9% 증가하고 12월 전체 반입액 7,453만 달러의 1.1%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33.9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5%), 어패류 등 수산물이 45.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6%)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11년 12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47.0만 달러로 전월 255.0만 달러 대비 3.1% 감소하고 12월 전체 반출액 6,739만 달러의 3.7%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229.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3.4%), 분유 등 축산물이 4.8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7%), 합판 등 임산물이 6.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어패류 등 수산물이 6.1달러(전체 반출액의 0.09%)를 차지했음.

표 1. 2011년 10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27,505	281	0.3	농산물	1,903,523	2,007	2.9
참깨	37,520	67		쌀	238	0	
들깨	14,750	25		감자	597	1	
고추	5,060	9		밀가루	1,312,760	561	
밤	32,400	104		참깨	86,030	83	
참기름	14,048	39		들깨	38,505	34	
들기름	6,137	15		기타채유종실	4,000	1	
기타유지가공품	13,590	23		사과	40	0	
박류	4,000	0		복숭아	9	0	
				오렌지	9	0	
				포도	20	0	
				멜론	20	0	
				기타화초	180	1	
				밤	16,800	25	
				은행	2,400	5	
				기타산식물	70	1	
				대두유	5,940	5	
				기타식물성유지	1	0	
				기타소스류	5	0	
				향신료	238	1	
				커피조제품	1,354	5	
				초코렛	38	1	
				녹차	4	0	
				제조담배	705	31	
				인삼류	91	14	
				소주	2,270	3	
				맥주	4,920	4	
				위스키	84	8	
				기타주류	30	1	
				정당	320	0	
				물	1,835	1	
				비스킷	15	0	
				곡류가공품	56,160	168	
				빵	106,511	385	
				면류	102,976	259	
				기타농산가공품	157,748	374	
				건	600	34	

(앞면에서 계속)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축산물	-	-	-	축산물	8,077	37	0.1
				닭고기	450	1	
				소시지	5,333	32	
				기타낙농품	2,294	4	
임산물	10	0	-	임산물	11,148	13	0.02
기타목재류	10	0	-	합판	1,588	4	
				섬유판	9,060	7	
				건축용목제품	263	1	
				목재틀	20	0	
				목제식탁용품	30	0	
				기타목재류	147	2	
				수목류	40	1	
수산물	257,490	234	0.3	수산물	249,140	198	0.3
미역	257,490	234		명태	532	1	
				툰	7,200	101	
				미역	241,406	97	
				어류통조림	2	0	
합 계	385,005	515	0.6	합 계	2,171,888	2,256	3.3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44호(2011.10.1~10.31).

표 2. 2011년 11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43,201	259	0.3	농산물	2,327,669	2,391	3.4
참깨	37,000	67		쌀	1,938	3	
들깨	22,190	37		밀가루	1,678,810	747	
고추	5,010	9		참깨	46,100	48	
밤	28,800	92		들깨	14,550	14	
은행	1,300	4		해바라기씨	210	0	
참기름	8,167	24		사과	874	3	
들기름	2,592	3		감	9	0	
기타유지가공품	14,142	22		오렌지	28	0	
박류	24,000	1		감귤	300	0	
				고추	5,420	6	
				국화	20	1	
				기타화초	330	0	
				밤	36,400	55	
				은행	14,400	29	
				대두유	29,776	27	
				들기름	7,136	12	
				기타식물성유지	40	0	
				식물성액즙	34	0	
				기타소스류	30	0	
				향신료	256	1	
				커피조제품	4,751	17	
				녹차	3	0	
				제조담배	1,500	50	
				소주	3,550	4	
				맥주	4,680	5	
				기타주류	30	1	
				정당	167	0	
				물	5,169	3	
				과일주스	3	0	
				비스킷	47	0	
				곡류가공품	59,650	193	
				빵	104,791	414	
				면류	109,575	302	
				기타농산가공품	195,492	411	

(앞면에서 계속)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견	600	35	
				면	1,000	7	
축산물	-	-	-	축산물	6,487	15	0.02
				소시지	4,442	11	
				기타낙농품	2,045	4	
임산물	0	0	-	임산물	21,917	35	0.05
				합판	1,670	6	
				섬유판	19,917	15	
				건축용목제품	141	14	
				기타목재생활용품	4	0	
				기타목재류	185	0	
수산물	233,636	215	0.3	수산물	38,660	109	0.2
미역	233,636	215		투스	6,800	95	
				미역	31,860	14	
합 계	376,837	474	0.6	합 계	2,394,733	2,550	3.6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45호(2011.11.1~11.30).

표 3. 2011년 12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53,200	339	0.5	농산물	1,752,841	2,293	3.4
참깨	44,610	81		쌀	1,798	3	
들깨	13,230	22		밀가루	1,056,890	488	
고추	5,510	10		참깨	60,070	62	
밤	48,600	156		들깨	15,550	15	
참기름	9,223	26		사과	19	0	
들기름	5,895	12		바나나	9	0	
기타유지가공품	20,532	33		오렌지	14	0	
박류	5,600	0		감귤	750	1	
				기타과실	65	0	
				토마토	2	0	
				마늘	1	0	
				고추	3	0	
				기타채소	90	1	
				기타화초	60	0	
				밤	86,000	129	
				은행	2,400	5	
				기타산식물	3,000	3	
				대두유	2,916	3	
				들기름	3,261	5	
				기타식물성유지	81	2	
				기타유지가공품	2	0	
				식물성액즙	20	0	
				간장	3	0	
				된장	5	0	
				고추장	3	0	
				기타소스류	1,245	3	
				향신료	199	1	
				커피조제품	12,570	47	
				코코아조제품	42	0	
				녹차	19	0	
				홍차	612	3	
				제조담배	90	4	
				인삼류	250	30	
				소주	2,270	3	
				맥주	3,960	3	
				위스키	2,555	91	
				기타주류	15	1	
				정당	171	0	
				물	2,326	2	
				과일주스	7	0	

(앞면에서 계속)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기타음료	213	0	
				비스킷	10	0	
				곡류가공품	80,399	250	
				빵	101,932	401	
				면류	100,849	279	
				기타농산가공품	208,435	412	
				견	660	36	
				면	1,000	9	
축산물	-	-	-	축산물	8,247	48	0.07
				닭고기	217	1	
				소시지	2,258	9	
				꿀	1	0	
				로얄제리	141	0	
				우유	1	0	
				분유	4,021	34	
				기타낙농품	1,608	4	
임산물	0	0	-	임산물	46,683	69	0.1
				합판	1,554	5	
				섬유판	15,560	12	
				건축용목제품	815	7	
				목재틀	100	0	
				기타목재생활용품	21	0	
				기타목재류	133	1	
				수목류	28,500	44	
수산물	119,929	452	0.6	수산물	4,337	61	0.09
툰	21,795	375		툰	4,334	61	
미역	98,134	78		기타해조류	2	0	
				기타수산가공품	1	0	
합 계	273,129	791	1.1	합 계	1,812,108	2,470	3.7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46호(2011.12.1~12.31).

□ 남북한 교역 통계

표 4.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건수	품목수	금액(A)	건수	품목수	금액(B)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186,592	△169,74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194,547	△158,049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287,291	△158,419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252,039	△112,761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308,339	△77,79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221,943	37,415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333,437	90,228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425,148	120,402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402,957	50,61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641,730	98,58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724,217	145,713
20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697,040	180,962
2005	9,337	381	340,281	11,878	712	715,472	1,055,754	375,191
2006	6,412	421	519,539	17,039	697	830,200	1,349,739	310,661
2007	5,027	450	765,346	26,731	802	1,032,550	1,797,896	267,204
2008	31,243	482	932,250	36,202	813	888,117	1,820,366	△44,133
2009	37,307	486	934,251	41,293	771	744,830	1,679,081	△189,421
2010	39,800	448	1,043,928	44,402	740	868,321	1,912,249	△175,607
소 계*	196,690	794	7,149,178	212,010	1,086	7,458,069	14,607,247	308,891
2011.1	2,785	207	70,022	3,368	411	57,274	127,295	△12,748
2011.2	2,170	175	70,918	2,586	357	51,471	122,389	△19,447
2011.3	3,073	192	80,510	3,674	423	75,798	156,308	△4,712
2011.4	2,635	197	70,465	3,034	391	58,534	128,999	△11,931
2011.5	2,887	195	81,277	3,393	431	67,914	149,191	△13,363
2011.6	2,853	196	76,198	3,602	413	72,406	148,604	△3,792
2011.7	2,861	214	74,846	3,503	411	73,316	148,162	△1,530
2011.8	2,870	200	76,895	3,395	424	67,327	144,222	△9,568
2011.9	2,748	182	79,055	3,252	396	69,271	148,326	△9,784
2011.10	3,000	193	83,247	3,285	408	68,486	151,732	△14,761
2011.11	3,037	185	75,697	3,612	428	71,004	146,701	△4,693
2011.12	2,843	202	74,534	3,452	454	67,392	141,926	△7,142
소 계	33,762	363	913,663	40,156	676	800,192	1,713,855	△113,471
총 계	230,452	803	8,062,841	252,166	1,090	8,258,261	16,321,102	195,420

주: 1)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2) 소계*는 1989~2010년까지의 교역실적을 합산한 것임.

3)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46호.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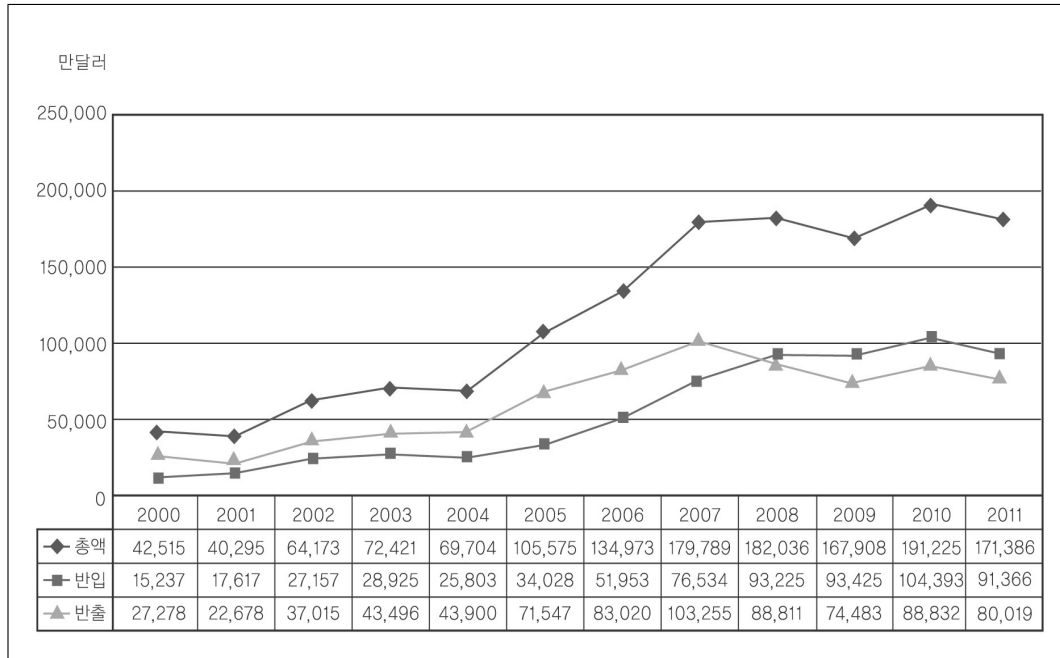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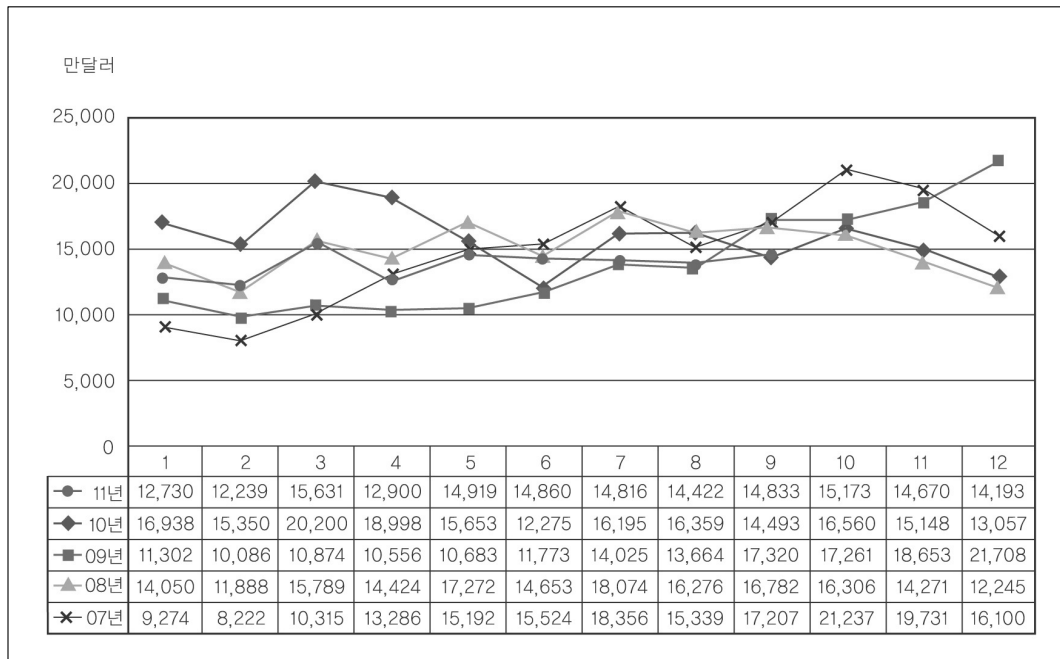


표 5.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 : 천 달러

연 도	반입					반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1993	6,916	-	4,221	879	12,016	63	-	-	6	69	12,085	△11,947
1994	5,315	-	7,212	2,723	15,250	3,220	-	-	97	3,317	18,567	△11,933
1995	13,506	-	6,003	2,810	22,319	8,879	-	273	154	9,306	31,625	△13,013
1996	11,853	-	2,014	9,588	23,455	6,044	-	57	613	6,714	30,169	△16,741
1997	7,871	-	4,902	14,553	27,326	16,525	-	116	383	17,024	44,350	△10,302
1998	7,895	-	3,526	13,377	24,798	18,732	-	510	398	19,640	44,438	△5,158
1999	15,057	-	4,484	28,327	47,868	15,682	-	1,796	189	17,667	65,535	△30,201
2000	23,352	-	7,014	41,566	71,932	23,910	-	1,005	464	25,379	97,311	△46,553
2001	38,703	78	5,717	45,316	89,814	26,939	2,157	424	2,977	32,497	122,311	△57,317
2002	28,881	395	95	70,531	99,902	103,080	5,079	1,102	934	110,195	210,097	10,293
2003	36,203	1,474	245	89,714	127,636	112,345	7,425	2,206	3,583	125,559	253,195	△2,077
2004	32,965	443	244	68,209	101,862	60,649	2,411	2,006	2,075	67,141	169,003	△34,721
2005	21,425	664	318	57,430	79,837	73,303	1,638	2,160	821	77,922	157,759	△1,915
2006	37,670	184	437	99,563	137,854	206,702	1,745	4,451	994	213,892	351,746	76,038
2007	58,207	64	406	115,436	174,113	127,906	1,329	4,848	1,297	135,380	309,493	△38,733
2008	70,653	-	183	137,058	207,913	65,516	1,669	6,278	4,685	78,238	286,151	△129,675
2009	49,845	15	283	151,851	201,994	30,127	1,055	1,398	3,144	35,723	237,717	△13,729
2010	25,001	-	113	63,141	88,255	36,324	1,513	794	2,661	41,292	129,547	△46,963
소 계*	514,536	3,317	51,145	1,020,774	1,589,792	937,627	26,021	29,424	25,475	1,018,636	2,608,428	△418,614
2011.1	392	-	0	57	450	1,604	6	13	0	1,623	2,073	1,173
2011.2	193	-	0	17	210	1,230	9	34	122	1,395	1,605	1,185
2011.3	265	-	0	119	384	1,715	5	26	359	2,104	2,488	1,720
2011.4	192	-	0	166	358	1,569	8	25	295	1,896	2,254	1,538
2011.5	228	-	0	226	453	1,981	166	30	276	2,452	2,905	1,999
2011.6	294	-	0	270	565	1,959	13	18	304	2,295	2,860	1,730
2011.7	271	-	0	261	532	1,997	146	22	230	2,393	2,925	1,861
2011.8	362	-	0	142	504	2,571	24	23	64	2,683	3,187	2,179
2011.9	267	-	0	104	370	3,023	164	10	149	3,347	3,717	2,977
2011.10	281	-	0	234	515	2,007	37	13	198	2,256	2,771	1,741
2011.11	259	-	0	215	474	2,391	15	35	109	2,550	3,024	2,076
2011.12	339	-	0	452	791	2,293	48	69	61	2,470	3,261	1,679
소 계	3,343	-	0	2,770	5,607	31,931	641	318	2,167	27,466	33,070	21,858
총 계	517,879	3,317	51,145	1,023,544	1,595,399	969,558	26,662	29,742	27,642	1,046,102	2,641,498	△396,756

주: 1)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소계*는 1989~2010년까지의 교역실적을 합산한 것임.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44~246, <http://www.unikorea.go.kr>

그림 3.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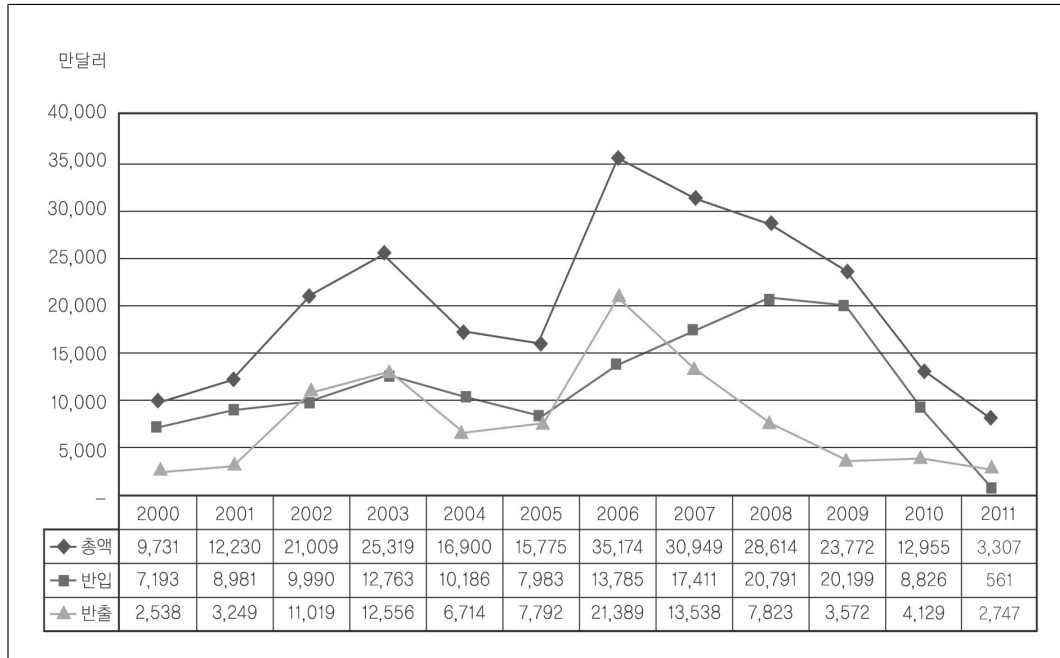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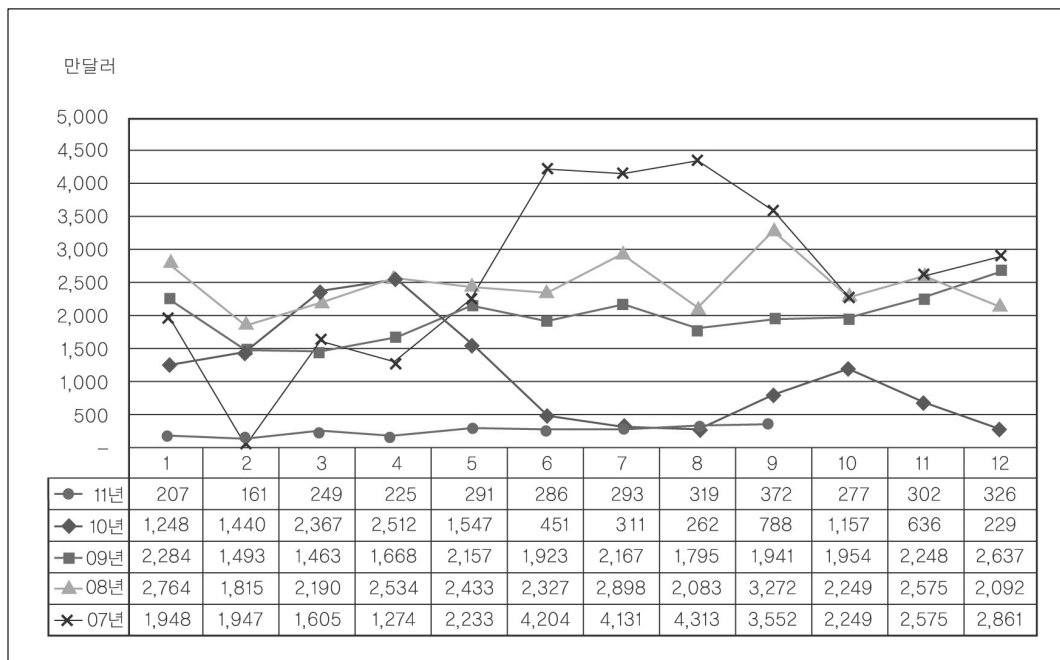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대북지원 동향

☐ 北어린이 100만 명 접종 간염백신 지원

- 최근 유엔 기구를 통해 1년 만에 대북지원을 재개한 정부가 북한 어린이 100만 명 이상에게 접종할 수 있는 B형 간염 예방백신도 최근 지원을 완료함. 정부가 북한에 간염 백신을 지원한 것 역시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처음임.
- 통일부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구호단체인 독일카리타스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이달 7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10억 6천 만원 상당의 B형 간염 예방백신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힘.
- 통일부 관계자는 “물품은 인천에서 배를 통해 중국 단둥을 거쳐 다시 육로를 통해 신의주에 전달됐다”며 “그동안 보건복지부 예산을 활용해 북한에 간염백신을 지원해왔고 이번에도 복지부 예산이 사용됐다”고 말함.
- 통일부는 “이번 사업은 5·24조치 틀 내에서 순수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함.

자료: <http://www.yonhopnews.com/> (연합뉴스, "北어린이 100만 명 접종 간염백신 지원" 2011. 11. 15)

☐ 평화대사協, 北에 밀가루 300톤 2차 지원

- 평화대사협의회가 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2차 대북 밀가루 300톤 지원 출발식’을 열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북한으로 출경함. 이번 지원 물품은 20kg짜리 밀가루 1,500포대로, 지난해 ‘평화의 쌀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마련됨.
- 평화대사협의회 관계자 7명이 방북해 평안북도 정주시 탁아소 3곳 등에 전달할 예정임. 이어 3일 협의회 관계자들이 다시 방북해 밀가루 분배 모니터링을 직접 실시함.
- 지난 11월 14일 평화대사협의회는 평북 정주에 밀가루 1차 지원분 300톤을 보냈으며 분배 모니터링을 위해 11월 25~29일 통일부 인도지원과장과 함께 방북함.

자료: <http://www.yonhopnews.com/> (연합뉴스, "평화대사協, 北에 밀가루 300t 2차 지원" 2011. 12. 1)

□ 남북협력기금에 '北재해 지원' 150억 원 첫 편성

-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12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에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용으로 5,448억 원이 편성됐고 이 가운데 '대북 자연재해 지원' 용으로 150억 원이 책정됐다고 통일부가 11일 밝힘.
- 이는 통일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대북 재난재해·환경협력 계획에 따른 편성이다. 그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수해지원을 해왔다는 점과 지난해 열린 백두산 화산 관련 전문가 회의와 산림협력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임.
- 당국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액인 5,298억 원에서 3,109억 원은 식량, 2,189억 원은 비료 지원용으로 쓰임. 대북 식량·비료지원 예산은 가격상승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약 200억 원 가량 증액되었음.

데일리NK, "남북협력기금에 '北재해 지원' 150억 원 첫 편성", 2012.1.11

□ 정부, 김정일 사후 인도지원물자 반출 첫 승인

- 통일부는 새해 들어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의 반출을 처음으로 승인했다고 10일 밝힘.
-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신청한 7,700만 원 상당의 북한 취약계층 지원 물자의 반출을 승인했다”며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곡수, 아동 의류(겨울용 점퍼) 등 지원물자가 중국 투먼을 거쳐 13일께 북한 함경북도 온성 지역의 유치원과 고아원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힘.
- 통일부는 지난 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조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민간의 방북 신청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승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자료: <http://www.yonhopnews.com/> (연합뉴스, "정부, 김정일 사후 인도지원물자 반출 첫 승인" 2012. 1. 13)

□ 김정일 사후 첫 대북 밀가루 지원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보류됐던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밀가루 지원이 재개됨.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평화재단이 27일 밀가루 180톤을 북측에 전달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을 오늘 자로 승인했다”고 밝힘.

- 남북평화재단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될 밀가루는 시가 1억 원 상당으로, 개성공단입주자협의회가 모금해 남북평화재단에 기탁한 기금으로 마련됨.
- 남북평화재단 관계자 8~9명은 27일 황해북도 개풍군·장풍군 등의 소학교와 탁아소 등을 방문해 밀가루를 전달할 예정임. 이 가운데 남북평화재단과 개성공단입주자협의회 관계자 각 1명은 모니터링을 위해 28일까지 현지에 남을 계획임.
- 김정일 사후 지난 13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국수, 아동의류 등이 전달된 바는 있지만, 우리 국민이 동행해 물자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통일부측은 밝힘.

자료: <http://www.yonhopnews.com/> (연합뉴스, "김정일 사후 첫 대북 밀가루 지원" 2012. 1. 20)

☐ 민간단체 대북 인도지원 재개 '기지개'

-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대북지원 단체인 남북평화재단은 개성공단입주기업대표 자회의로부터 기탁받은 기금으로 구입한 1억 원 상당의 밀가루 180톤을 27일 황해도 개풍군과 장풍군 등의 소학교(우리의 초등학교)와 탁아소 등에 전달할 예정임. 평화재단 일부 관계자는 28일까지 북한에 남아 분배 상황도 확인할 예정임.
-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국내의 한 민간단체가 지원한 국수와 아동의류(겨울용 점퍼) 등이 중국을 거쳐 함경북도 온성의 유치원과 고아원 등에 전달됨.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평안남도 안주시에 대한 밀가루 잔여분 지원과 모니터링을 재개하기 위해 북한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도 "경기도와 함께 하는 말라리아 방역지원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개성에서 만나자는 팩스를 이미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에 보냈다"며 "북한에서 초청장이 오는 대로 방북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자료: <http://www.yonhopnews.com/> (연합뉴스, "민간단체 대북 인도지원 재개'기지개'" 2012. 1. 24)

□ 작년 대북 인도적지원 51.5% 감소

- 통일부는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 총액이 196억원으로 전년의 404억원보다 51.5% 줄었다고 27일 밝혔다.
- 이 가운데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65억원과 131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8.1%와 34.5% 감소함. 정부 차원의 지원 65억원은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대북 영유아사업에 지원되었음.
- 민간차원에서는 35개 민간 지원단체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 밀가루, 의약품, 분유, 두유 등을 131억원 규모를 지원함. 이 가운데 지난해 민간단체의 대북 밀가루 지원량은 총 7,119톤으로, 금액기준으로 37억 9천만원에 이름.
-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지난 한 해 남북교역액은 17억 1,386만 달러로 전년의 19억 1,225만 달러보다 10.4% 줄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m/> (연합뉴스, "작년 대북 인도적지원 51.5% 감소" 2012. 1. 27)

3.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통일계정’ 설치 등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에 대한 정부 입장

(통일부, 2011.11.23)

-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통일계정’을 설치하는 등 정부 입장을 마련하였음.
- ‘남북협력기금법’ 개정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
 - 남북협력기금 내에 ‘통일계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용함. 이중 통일계정의 용도는 통일 이후 남북 지역 간의 안정적 통합 및 사회 안정을 위한 사업에 사용함.
 - 통일계정의 재원으로는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남북협력기금 불용액,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등으로 규정함. 이중 민간출연금은 개정법 공포 직후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률 시행 후 통일계정에 계상함.
 - 정부출연금과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의 적립 시기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함.

☐ UNICEF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등 남북협력기금 지원 의결

(통일부, 2011.12.5)

- 정부는 제24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다음 4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12.5)하였음.
- 개성공단 출퇴근버스 주차장 및 자동차검사소 설치사업 지원
 - 정부는 개성공단 출퇴근버스 주차장 부지 매입과 자동차검사소 설치 사업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남북협력기금 약 24억 원을 대출하기로 함.
 - 대출조건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연리 1%, 지연배상금 2%
- 개성공단 응급의료시설 건립사업 지원
 - 정부는 개성공단 우리측 근로자들에 대한 걱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응급의료시설 건립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남북협력기금 약 27억 원을 무상 지원하기로 함.

-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2차년 사업 지원
 - 정부는 1차년 사업에 이어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2차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약 69억 원을 무상지원하기로 함.
-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지원
 -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UNICEF를 통한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의약품 지원, 영양개선 사업 등에 약 65억 원(565만 달러)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무상 지원하기로 함.
 - 건강 사업 (백신 및 의약품 지원) : 281만2천 달러
 - 영양 사업(영양실조 아동 치료·예방, 영양상태 조사 등) : 246만4천 달러
 - * UNICEF 간접비 : 37만 달러

《 UNICEF 북한 영유아 지원 개요 》

- 수혜자 : 북한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등 총 146만 여명
-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금액
 - 건강사업
 - 백신확장프로그램 : 영유아·임산부 약 71만명 백신 접종 실시
 - 어린이 기초 의약품 제공 : 필수약품 키트 10,500개 제공
 - 영양사업 : 약 27만명 대상
 - 지역사회 기반 급성 영양실조 관리 : 영양실조 어린이들에게 즉석치료식품과 즉석 영양 보충식품 제공
 - 영양실조 예방 사업 : 철분, 엽산보충제, 영양제 등 제공
- 사업기간 : 2012.1~2012.12
 - '96년 이후 '09년까지 UNICEF를 통한 북한 영유아사업 지원액 : 2,095만 달러
 - 이번 지원결정 포함시 2,660만 달러

□ 통일부의 2012년 3대 목표와 8대 중점 추진 과제

(통일부, 2012.1.5)

- 통일부는 1월 5일 남북회담본부 대통령에게 ‘2012년 통일부 업무보고’를 하고 토론을 진행하였음.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재의 한반도 정세와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통일

정책을 통해 통일의 토대를 마련할 것임.

-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관리, 남북관계 정상적 발전, 실질적 통일미래 준비 등을 2012년 통일정책의 '3대 목표'로 설정함.
- '3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8대 중점 추진과제'도 제시함.

〈3대 목표와 8대 중점 추진과제〉

3대 목표	8대 중점 추진과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관리	① 한반도 정세 주도 - 남북당사자 주도와 주변국 협조 - 기민한 상황관리
	② 남북간 대화채널 구축 - 대화채널 개설 - 남북대화의 안정적 유지
남북관계 정상적 발전	③ 인도적 문제 해결 -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가시적 성과 거양 - 취약계층·지역 대상 인도적 지원 추진
	④ 평화·경제·민족공동체 구축 추진 - 평화공동체 : 정치·군사적 신뢰 증진 - 경제공동체 : 북한 경제회복 지원 - 민족공동체 : 동질성 회복 추진
실질적 통일미래 준비	⑤ 통일재원 마련 및 국민적 통일의지 결집 - 통일계정 설치 및 적립 개시 - 통일 당위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 자립·자활 지원 강화 - 정착교육 인프라 확대
	⑦ 미래세대 통일의지 고양 - 통일미래리더 참여 프로그램 확대 - 청소년 눈높이 교육과 소통 강화
	⑧ 통일외교 적극 추진 -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협력 확보 - 독일통일 경험 체계적 공유

□ 제2차 남북경협기업 및 남북교역기업에 대한 특별대출 공고

(통일부, 2012.1.10)

- 통일부는 1월 10일 남북경협기업 및 남북교역기업에 대한 제2차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음.

구분	상세 내용
대출 대상	- 정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대북 투자를 진행한 기업 중 '08.6~'10.5 간 남북간 물자 반출입 또는 운송 실적이 있는 기업 ※ 대출 제외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대출신청일 기준 휴업·폐업중인 기업(국세청 등록 기준) - 대출신청일 기준 남북협력기금 대출 연체중인 기업 - 대출신청일 기준 조세 체납중인 기업 - 대출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 5.24조치 이후 남북교류협력질서 저해 행위로 기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대출 한도	• 총 50억원 - 기업별 대출 한도 15억 원 * 1차 특별대출 수혜 기업은 12억 원
기업별 대출 금액	• 대북 투자액(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관련 투자액은 제외)의 40%에서 남북협력기금 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
대출 용도	• 차주 소유기업 경영 • 차주의 업종 전환 • 차주의 금융기관 부채상환 * 단 접대비, 주식 및 비업무용 부동산 구입, 사행성 오락 등 기업 경영과 직접 관계가 적은 자금은 제외하며, 대출용도 외 사용시 대출금 회수
대출 이율	• 연 2% (단, 담보 제공액 30% 미달시 1%p 가산)
대출 기간	• 1년 (단,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대출 신청기한	• 2012.1.10~2012.3.9 (2개월) * 단, 총 대출한도 소진시 신청 마감
대출 집행	• 대출승인액의 50%를 선집행, 대출금 사용 내역 확인후 잔여 50% 집행 (대출승인액 1억원 미만은 일시집행)

(계속)

구분	상세 내용
상환 방법	• 원금 및 이자 만기 일시 상환
채권 보전방법	• 담보 대출(30%) + 신용 대출(70%) - 담보제공액 30% 미달시, 이자율 1%p 가산하여 70%만 신용대출 * 신용대출시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지배자의 연대보증 • 담보 제공액이 대출금액의 30%에 미달할 경우 아래 해당 기업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 - 대출신청일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 - 3년('07~'09년) 연속 결손 기업 * 단, '10년 재무제표상 순이익 발생 기업은 대출대상에 포함 - '09년말 재무등급 7등급 이하 기업 또는 재무등급 미보유 기업 * 단, 재무등급 6등급 이상인 기업의 연대보증이 있거나 '09년 또는 '10년 재무제표상 순이익 발생 기업은 대출대상에 포함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경비 및 위탁사업비 등 남북협력기금 지원 의결

(통일부, 2012.1.31)

- 정부는 제24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경비 및 위탁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3건을 심의·의결(1.31)하였음.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이행기구인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북한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등 정부 위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비 및 운영경비 10억5백만 원을 무상지원하기로 함.
- 2012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분단으로 인한 남북의 언어 이질화를 극복하고 남북의 언어체계를 통합·정비하여 민족의 언어공동체 회복을 위해, 2012년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대한 소요경비 23억4천7백만 원을 무상지원하기로 함.

- 개성공단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경비 87억6천3백만 원을 지원
 - 무상지원 54억2천5백만 원, 대출 33억3천8백만 원
 - * 정부대행업무관련 경비(출입지원, 신변안전, 등록·인허가 등)는 무상지원
 - * 대출조건 : 대출이자율 1%, 지연배상금율 연2%(5년거치 15년 상환)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표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995.9~2011.12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¹⁾ (만달러)	목표 달성율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39	78.8	EU 86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등
3차 '97.4~'12	18,439	15,838	85.9	미국 4,537, EU 2,752, 일본 2,700, 한국 2,533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한국 1,087, EU 953, 덴마크 357, 캐나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호주 130 등
5차 '99.1~'12	29,208	18,989	65.0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31,376	15,310	48.8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등
7차 '01.1~'12	38,398	24,797	63.5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4, 스위스 222, 노르웨이 189 등
8차 '02.1~'12	24,684	22,001	89.1	미국 6,349,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덴 228, 영국 171, 노르웨이 144, 독일 135, 덴마크 101 등
9차 '03.1~'12	22,937	13,310	58.0	미국 3,152, 한국 1,683, EU 1,602,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52, 캐나다 437, 스웨덴 407, 독일 323, 노르웨이 284 등
10차 '04.1~'12	520,880	15,158	72.6	일본 4,660, 한국 2,509, 미국 1,906, EU 1,557, 스웨덴 910, 호주 797, 캐나다 477, 독일 426, 이탈리아 403 등

(계속)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¹⁾ (만달러)	실적율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1차 '05.1~12 ²⁾	-	4,523	-	유럽연합 1,322, 독일 777, 스웨덴 549, 이집트 388, 노르웨이 324, 핀란드 291, 네덜란드 132, 캐나다 132, 한국 107 등
12차 '06.1~12	-	1,915	-	한국 728, 스웨덴 498, 노르웨이 2,21, 호주 78, 아일랜드 70, 덴마크 69, 네덜란드 65, 독일 63, 핀란드 59 등
13차 '07.1~12	-	9,966	-	한국 2,437, 중앙간급구호자금 1,110, 호주 585, 스웨덴 532, 독일 506, 유럽연합 398, 이탈리아 377, 노르웨이 335 등
14차 '08.1~12	-	4,358	-	한국 1,149, 독일 499, 스위스 430, 스웨덴 415, 이탈리아 370, 유엔중앙간급구호자금 340, 노르웨이 309, 네덜란드 202 등
15차 '09.1~12	-	4,193	-	유엔중앙간급구호자금 1,900, 스웨덴 833, 노르웨이 470, 캐나다 330, 호주 261, 이탈리아 123, 한국 109, 스위스 69 등
16차 '10.1~12	-	2,178	-	유엔중앙간급구호자금 1,344, 스위스 302, 노르웨이 231, 스웨덴 85, 독일 79, 이탈리아 43, 프랑스 40 등
17차 '11.1~12	-	9,771	-	유엔기구 1,682, 유엔중앙간급구호자금 1,541, EU 1,429, 스웨덴 894, 스위스 838, 호주 705, 러시아 500, 브라질 402 등
총 계	-	188,260		

주: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실제 지원된 금액만을 집계한 것임.

2) 2005년부터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통합지원은 폐지되고 개별지원으로 전환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Dec. 31, 2011)

표 2. 2011년도 자원창구별 대북 지원 실적 (2011.1.1~12.31)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독일 카리타스 (DCV)	독일	640,000	사회적 취약자 지원(BMZ-No: 2011.1827.2)
Concern Worldwide	스웨덴	1,083,256	취약자 건강 개선
FAO	스웨덴	158,800	2010/11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안보지원 연계성 강화사업
	CERF	650,000	2011년 취약농가의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긴급지원 (CERF 11-FAO-013)
	CERF	400,000	취약 농가의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긴급지원 (CERF 11-FAO-021)
	CERF	890,735	구지역 방제를 위한 긴급 백신사업 (CERF 11-FAP-022)
	FAO	199,000	농업 및 식량안보 지원(미분류)
	이탈리아	211,460	농업 및 식량안보 지원(7개 도 58개 군)
		소계 2,509,995	
Fida International	핀란드	272,851	식량지원
독일	독일	390,987	깨끗한 음용수 공급, 기술 지원 및 위생훈련을 통한 위생조건 개선(BMZ-No. 2011.1858.7)
헝가리침례구호기구	헝가리	15,003	취약계층 의료지원
국제적십자연맹	노르웨이	1,592,075	2011년 국제적십자연맹사업(PRK-11/0001)
	노르웨이	183,688	2011년 국제적십자연맹사업(PRK-11/0001)-미분류
	스웨덴	480,571	식량분배, 주택개량, 안전한 음용수 공급, 보건위생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 긴급구호(스웨덴 적십자사)
	스웨덴	912,650	긴급구호 및 적십자사 능력배양(스웨덴 적십자사)
	캐나다	112,590	인도적 지원(M-013356)
	덴마크	191,763	홍수 피해자 인도지원(덴마크 적십자사)
	핀란드	682,128	홍수 피해자 지원
		소계 4,155,465	
PMU-Interlife	스웨덴	506,711	협동농장 내 식량안보사업
Premiere Urgence	프랑스	197,109	취약계층 식량지원
	프랑스	142,857	함경남북도, 황해도 취약계층 지원
	스웨덴	619,003	취약계층 건강 개선
		소계 958,969	
Save the Children	스웨덴	1,238,007	취약계층 건강개선
	ECHO	2,141,321	취약계층 긴급영양 지원 (ECHO/PRK/BUD/2011/01002)
		소계 3,379,328	

(계속)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TGH	프랑스	197,109	식량안보 강화
	프랑스	142,857	함경남북도, 황해도 취약계층 지원
		소계 339,966	
UN 및 NGO	ECHO	1,538	식량지원(ECHO/PRK/BUD/2011/01000)-미분류
UNICEF	CERF	500,000	4개도 어린이 질병예방(CERF 11-CEF-013)
	CERF	1,113,733	긴급 영양개선(CERF 11-CEF-027)
	CERF	427,131	25개 군 급성영양실조 지원(CERF 11-CEF-068)
	이탈리아	336,475	산모 및 신생아 지원사업
	스웨덴	2,231,740	취약계층 건강 개선
	호주	1,541,625	어머니와 어린이 영양부족 경감
	UNICEF/독일	126,740	인도지원
	UNICEF/독일	49,993	긴급영양지원
		소계 6,327,437	
UNPF	CERF	149,800	모성 보호사업(CERF 11-FPA-013)
WFP	ECHO	12,142,857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 (ECHO/PRK/BUD/2011/01001)
	스위스	3,430,696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스위스	941,536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7F-00972.14.01)
	스위스	580,046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여러 지원단체	19,541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스웨덴	1,600,512	취약계층 영양지원
	중국	1,000,000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룩셈부르크	308,261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룩셈부르크	334,672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이탈리아	429,18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
	아일랜드	356,125	생명구제와 고통경감(WFP DPRK EMOP)
	호주	5,512,679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리첸스타인	57,274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개인 및 단체	171,589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개인 및 단체	18,541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브라질	374,428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WFP	16,617,100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미분류)
	러시아	5,000,000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인도	1,000,000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브라질	3,642,288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남아공화국	142,878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노르웨이	884,486	식량지원(PRK-11/0002)
	CERF	3,199,829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사업(CERF 11-WFP-015)
	CERF	7,199,174	취약계층 긴급 식량지원(CERF 11-WFP-031)
		소계 64,963,697	

(계속)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스웨덴민간긴급 지원단(MSB)	스웨덴	103,888	건물 관리를 위한 부품 지원
스위스개발협력 및 인도지원청	스위스	3,430,645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7F-00972.13.01)
기타	이탈리아	422,535	조정 및 기술지원(AID 8704/02/1)
WHO	이월	6,900,000	2008-2010 여성 및 어린이 건강 증진
	CERF	500,154	산모 및 어린이 사망률 경감 지원 (CERF 11-WHO-016)
	이탈리아	281,690	도, 군, 마을 단위의 서비스 전달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보건체계 개선
	CERF	379,850	모자영양개선을 위한 보건체계 강화 (CERF 11-WHO-033)
		소계 8,061,694	
합 계		97,713,765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Dec. 31, 2011)

표 3. 2011년도 분야별 대북 지원 실적 (2011.1.1~12.31)

분 야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농업	스웨덴	FAO	158,800	2010/11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안보지원 연계성 강화사업
	이탈리아	FAO	211,460	농업 및 식량안보 지원(7개 도 58개 군)
	CERF	FAO	650,000	2011년 취약농가의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긴급지원(CERF 11-FAO-013)
	CERF	FAO	890,735	구제역 방제를 위한 긴급 백신사업 (CERF 11-FAP-022)
	CERF	FAO	4,000,000	취약 농가의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긴급지원(CERF 11-FAO-021)
	FAO	FAO	199,000	농업 및 식량안보 지원(미분류)
			소계 2,509,995	
식량	프랑스	TGH	142,857	취약계층 식량지원사업
	프랑스	TGH	197,109	식량안보 강화
	핀란드	Fida	272,851	식량지원
	스위스	SDC/SHA	3,430,645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7F-00972.13.01)
	스웨덴	PMU-Interlife	506,711	협동농장 내 식량안보사업
	프랑스	Premiere Urgence	197,109	식량안보 강화
	ECHO	UN/NGO	1,538	식량지원(ECHO/PRK/BUD/2011/01000)-미분류
	ECHO	WFP	12,142,857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 (ECHO/PRK/BUD/2011/01001)
	스위스	WFP	3,430,696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스위스	WFP	941,536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7F-00972.14.01)
	스위스	WFP	580,046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여러 지원단체	WFP	19,541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스웨덴	WFP	1,600,512	취약계층 영양지원
	중국	WFP	1,000,000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룩셈부르크	WFP	308,261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룩셈부르크	WFP	334,672	취약가구 식량지원(EMOP 200266)
	이탈리아	WFP	429,18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
	아일랜드	WFP	356,125	생명구제와 고통경감(WFP DPRK EMOP)
	호주	WFP	5,512,679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리첸스타인	WFP	57,274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개인 및 단체	WFP	171,589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개인 및 단체	WFP	18,541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계속)

분 야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식량	브라질	WFP	374,428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WFP	WFP	16,617,100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미분류)
	룩셈부르크	WFP	334,672	식량불안 가구에 대한 식량지원(EMOP 200266)
	러시아	WFP	5,000,000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인도	WFP	1,000,000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브라질	WFP	3,642,288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남아공화국	WFP	142,878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노르웨이	WFP	884,486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CERF	WFP	3,199,829	식량지원(PRK-11/0002)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사업(CERF 11-WFP-015)
	CERF	WFP	7,199,174	취약계층 긴급 식량지원(CERF 11-WFP-031)
			소계 69,855,374	
보건	이월	WHO	6,900,000	2008-2010 여성 및 어린이 건강 증진
	Save the Children-UK	ECHO	2,141,321	취약계층 긴급영양 지원 (ECHO/PRK/BUD/2011/01002)
	이탈리아	UNICEF	336,475	산모 및 산생아 지원사업
	CERF	UNICEF	500,000	4개도 어린이 질병예방(CERF-11-CEF-013)
	CERF	WHO	500,154	산모 및 어린이 사망률 경감 지원 (CERF 11-WHO-016)
	CERF	UNPF	149,800	모성 보호사업(CERF 11-FPA-013)
	스웨덴	UNICEF	2,231,740	취약계층 건강 개선
	이탈리아	WHO	281,690	도, 군, 마을 단위의 서비스 전달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보건체계 개선
	스웨덴	Premiere Urgence	619,003	취약계층 건강 개선
	헝가리	헝가리	15,003	취약계층 의료지원
	참례구호기구			
	CERF	UNICEF	1,113,733	긴급 영양개선(CERF 11-CEF-027)
	CERF	WHO	379,850	모자영양개선을 위한 보건체계 강화 (CERF 11-WHO-033)
	UNICEF/독일	UNICEF	49,993	긴급영양지원
	UNICEF	CERF	427,131	25개 군 급성영양실조 지원(CERF 11-CEF-068)
			소계 15,645,893	

(계속)

분 야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지뢰제거	노르웨이	국제적십자연맹	1,592,075	2011년 국제적십자연맹사업(PRK-11/0001)
미분류	독일	독일 카리타스(DCV)	640,000	사회적 취약자 지원(BMZ-No: 2011.1827.2)
	스웨덴	Concern Worldwide	1,083,256	취약자 건강개선
	스웨덴	Save the Children	1,238,007	취약계층 건강개선
	노르웨이	국제적십자연맹	1,592,075	2011년 국제적십자연맹사업(PRK-11/0001)
	노르웨이	국제적십자연맹	183,688	2011년 국제적십자연맹사업(PRK-11/0001)
	스웨덴	국제적십자연맹	480,571	식량분배, 주택개량, 안전한 음용수 공급, 보건위생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 긴급구호
	스웨덴	국제적십자연맹	912,650	긴급구호 및 적십자사 능력배양
	캐나다	국제적십자연맹	112,590	인도적 지원(M-013356)
	덴마크	국제적십자연맹	191,763	홍수 피해자 인도지원(덴마크 적십자사)
	핀란드	국제적십자연맹	682,128	홍수 피해자 지원
			소계 7,193,018	
물 및 위생	독일	독일	390,987	깨끗한 음용수 공급, 기술 지원 및 위생훈련을 통한 위생조건 개선(BMZ-No. 2011.1858.7)
조정 및 지원 서비스	이탈리아	여러 단체	422,535	조정 및 기술지원(AID 8704/02/1)
	스웨덴	스웨덴민간긴급지원단(MSB)	103,888	건물 관리를 위한 부품 지원
			소계 526,423	
합 계			97,713,765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Dec. 31, 2011)

표 4. 2011년도 원조국별 대북 지원 실적 (2011.1.1~12.31)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유엔 미분류	FAO	199,000	농업 및 식량안보 지원
	WFP	16,617,100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소계 16,816,100	
호주	UNICEF	1,541,625	어머니와 어린이 영양부족 경감
	WFP	5,512,679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소계 7,054,304	
브라질	WFP	374,428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WFP	3,642,288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소계 4,016,716	
캐나다	WFP	112,590	인도지원(M-013356)
중앙긴급구호 기금(CERF)	WHO	500,154	산모 및 어린이 사망률 경감 지원 (CERF 11-WHO-016)
	FAO	400,000	취약 농가의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긴급지원(CERF 11-FAO-021)
	UNICEF	500,000	4개도 어린이 질병예방(CERF-11-CEF-013)
	WFP	3,199,829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사업(CERF 11-WFP-015)
	FAO	650,000	2011년 취약농가의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긴급지원(CERF 11-FAO-013)
	FAO	890,735	구제역 방제를 위한 긴급 백신사업 (CERF 11-FAO-022)
	UNPF	149,800	모성 보호사업(CERF 11-FPA-013)
	WHO	379,850	모자영양개선을 위한 보건체계 강화 (CERF 11-WHO-033)
	UNICEF	1,113,733	긴급 영양개선(CERF 11-CEF-027)
	UNICEF	427,131	25개 군 급성영양실조 지원(CERF 11-CEF-068)
	WFP	7,199,174	취약계층 긴급 식량지원(CERF 11-WFP-031)
		소계 15,410,406	
중국	WFP	1,000,000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덴마크	국제적십자 연맹	191,763	홍수 피해자 인도지원(덴마크 적십자사)
유럽위원회	WFP	12,142,857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 (ECHO/PRK/BUD/2011/01001)
	유엔 및 NGOs	1,538	식량지원(ECHO/PRK/BUD/2011/01000)-미분류
	Save the Children-UK	2,141,321	취약계층 긴급영양 지원 (ECHO/PRK/BUD/2011/01002)
		소계 14,285,716	
핀란드	Fida	272,851	식량 지원
	International 국제적십자연맹	682,128	홍수 피해자 지원
		소계 954,979	

(계속)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프랑스	TGH	142,857	함경남북도, 황해도 취약계층 지원
	Premiere Urgence	142,857	함경남북도, 황해도 취약계층 지원
	TGH	197,109	취약계층 식량지원
	Premiere Urgence	197,109	취약계층 식량지원
		소계 679,932	
독일	독일	390,987	깨끗한 음용수 공급, 기술 지원 및 위생훈련을 통한 위생조건 개선(BMZ-No. 2011.1858.7)
	독일 카리타스	640,000	사회적 취약자 지원(BMZ-No: 2011.1827.2)
		소계 1,030,987	
인도	WFP	1,000,000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아일랜드	WFP	356,125	생명 구출 및 고통경감(WFP DPRK EMOP)
이탈리아	UNICEF	336,475	산모 및 신생아 지원사업
	WHO	281,690	도, 군, 마을 단위의 서비스 전달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보건체계 개선
	WFP	429,18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
	FAO	211,460	농업 및 식량안보 지원(7개 도 58개 군)
	여러 체	422,535	조정 및 기술지원(AID 8704/02/1)
		소계 1,681,345	
리첸슈타인	WFP	57,274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룩셈부르크	WFP	308,261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WFP	334,672	취약가구 식량지원(EMOP 200266)
		소계 642,933	
노르웨이	국제적십자연맹	1,592,075	2011년 국제적십자연맹사업(PRK-11/0001)
	국제적십자연맹	183,688	2011년 국제적십자연맹사업(PRK-11/0001)
	WFP	884,486	식량지원(PRK-11/0002)
		소계 2,660,249	
스웨덴	FAO	158,800	2010/11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안보지원 연계성 강화사업(OSRO/DRK/901/SWE)
	PMU-Interlife	506,711	협동농장 내 식량안보사업
	Premier Urgence	619,003	취약계층 건강 개선
	UNICEF	2,231,740	취약계층 건강 개선
	Concern	1,083,256	취약자 건강 개선
	Worldwide		
	WFP	1,600,512	취약계층 영양지원
	Save the Children	1,238,007	취약계층 건강개선
	국제적십자연맹	912,650	긴급구호 및 적십자사 능력배양(스웨덴 적십자사)
	국제적십자연맹	480,571	식량분배, 주택개량, 안전한 음용수 공급, 보건위생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 긴급구호(스웨덴 적십자사)
	스웨덴민간긴급지원단(MSB)	103,888	건물 관리를 위한 부품 지원
		소계 8,935,138	

(계속)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스위스	WFP	941,536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7F-00972.14.01)
	WFP	580,046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SDC/SHA	3,430,645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7F-00972.13.01)
	WFP	3,430,696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소계 8,382,923	
헝가리	헝가리 침례구호기구	15,003	취약계층 의료지원
개인 및 단체	UNICEF	126,740	인도지원
	UNICEF	49,993	긴급영양지원
	WFP	171,597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WFP	18,541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소계 366,863	
기타	WFP	19,541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러시아	WFP	5,000,000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남아공화국		142,878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이월	WHO	6,900,000	2008-2010 여성 및 어린이 건강 증진
합 계		97,713,765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Dec. 31, 2011)

2.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기구 동향

가. 국제기구

☐ EU, "北 감자역병 연구 60만 달러 지원"

- 유럽연합이 북한의 감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감자역병 등을 연구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바게닝겐 대학에 추가로 45만 유로(미화 약 6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함.
- 네덜란드의 바게닝겐 대학의 마텐 용스마 박사는 “유럽연합이 전염병에 저항력이 강한 씨감자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통합감자질병관리 연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도 추가로 10만 유로를 지원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함.
- 농업과학 연구로 잘 알려진 이 대학에는 지난해 5월 북한의 농업과학성 소속 과학자 두 명이 유학하고 있으며,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 감자 역병(late blight) 등 질병에 강한 감자의 품종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음.
- 용스마 박사는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유럽연합 1차 지원금으로는 감자 곰팡이 균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 이번에 승인이 난 2차 지원금으로는 해충으로 인한 감자의 질병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EU, "北 감자역병 연구 60만 달러 지원", 2011.11.19)

☐ 스위스 개발협력처, “북한서 식수사업 시작”

- 스위스 개발협력처(SDC)는 내년부터 북한 황해북도 지역에서 식수와 위생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힘. 스위스 개발협력처 평양사무소 마틴 와이어스플러 소장은 22일 “안전한 식수는 주민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함.
- 와이어스플러 소장은 “식수, 위생 사업과 관련해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식수 전문가가 이달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북한 현지를 답사하며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함. 또 “식수 사업 외에 분유 제공과 경사지 관리

법 전수 활동도 계속할 것”이라며, “2012년 대북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550만 달러에서 650만 달러 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2012년에도 북한 어린이들에게 예년과 같이 650톤의 분유를 제공하게 됨.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스위스 개발협력처, "북한서 식수사업 시작"", 2011.11.23)

□ 국제적십자 수년만에 대북식량지원…수재민용

- 국제적십자사(IFRC)가 수일 내에 수해용 긴급 식량을 북한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함. RFA에 따르면 적십자는 며칠 안에 황해남도 청단, 연안, 봉천군의 6천 가구 2만 4천명의 수재민에게 쌀, 옥수수 등 긴급 식량 290톤을 지원할 예정임.
- 지원 식량은 무주택자,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공급되며, 적십자는 수재민이 하루에 쌀 또는 옥수수 400g씩 두 달간 먹을 분량을 지원할 계획임. 이번 식량지원 결정과 관련, 적십자는 북한 당국이 올해 유난히 많은 기부국에 적극적으로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힘.
- RFA는 주로 나무심기, 주택 건설 등을 중심으로 재난 복구 사업을 펼쳐온 국제적십자사가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하는 것은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국제적십자 수년만에 대북식량지원…수재민용", 2011.11.24)

□ WFP, "11월 북 주민 152만 명에 식량지원"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11월 한 달 동안 북한 주민 152만 명에 식량을 제공했다고 밝힘. 세계식량계획의 나나 스카우 북한 지원 담당관은 2일 “지난 11월에 북한 주민 152만 명에 지원한 식량 4천여 톤은 지난 10월 주민 145만 명에 약 6,400톤의 식량을 지원했던 것 보다 주민의 수는 늘었지만, 지원한 식량의 규모는 약 40% 줄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스카우 담당관은 “식량 원료가 부족해 12곳의 식품가공공장에서 만드는 혼합식

품과 영양과자의 생산량이 한 달 전보다 줄었다”고 설명함. 또한 “곡물 확보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식량계획(WFP)의 지원 대상인 북한 주민 세 명 중 한 명꼴만 식량을 지원하는 실정”이라고 밝힘.

- 스카우 담당관은 “내년 3월까지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60살 이상의 노인 등 350만 명에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약 2억 1천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약 6,600만 달러만 모금해 전체 예산의 약 32% 수준에 그친다”고 덧붙임.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WFP, "11월 북 주민 152만 명에 식량지원"", 2011.12.3)

□ WFP 내년 대북지원 예산 8천만 달러

-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12년 대북지원 사업의 예산을 8천만 달러로 책정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함.
- WFP의 내년 대북지원 예산은 긴급식량지원 사업비 약 3,500만 달러와 구호사업비 4,300만 달러로 나뉨.
- WFP는 내년 3월까지 벌이는 긴급식량지원 사업을 통해 31만 톤의 곡물을 북한주민 224만 명에게 공급할 예정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WFP 내년 대북지원 예산 8천만 달러", 2011.12.8)

□ 유엔, 北영양실조 아동 긴급지원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이 북한의 중증 영양실조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아동기금(UNICEF)에 42만 7천 달러를 긴급 제공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5일 전함.
- UNICEF는 CERF가 제공한 이 자금으로 1월부터 3월까지 북한의 중증 영양실조 아동 치유, 필수약품 조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유니세프의 제프리 킬리 아시아 대변인은 “함경남북도와 량강도, 강원도 내 25개 군의 중증 영양실조 어린이들이 영양강화 우유와 고단백 비스킷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유니세프는 이번 지원에 앞서 작년 10월 세계식량계획(WFP), 영국의 비정부기

구인 세이브 더 칠드런과 함께 북한 115개 군에서 5세 미만 아동들의 중증 영양실조 여부를 조사했음. 유니세프는 올해도 이 기구와 5세 미만 아동의 영양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인 실태 조사를 할 예정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유엔, 北영양실조 아동 긴급지원", 2012.1.6)

☐ 유엔, "상반기 대북예산 1,100만 달러 배정"

- 유엔 산하 중앙긴급구호기금은 10일 “올해 상반기 예산으로 다양한 유엔 기구들이 대북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1,100만 달러를 배정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함.
- 유엔 산하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이번 1,100만 달러는 ‘자금부족 지원금’ 즉 국제사회의 지원감소에 따른 자금 부족 지원금 명목으로 책정됨.
- 유엔 인도주의조정국은 “아직 올해 상반기 할당된 1,100만 달러가 어떤 대북 사업에 지원될지 구체적 내역은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의 식량 안보가 가장 긴급한 사안인 만큼 예년처럼 세계식량계획에 가장 많이 할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함.
- 올 상반기 중앙긴급구호기금이 북한에 배정한 1,100만 달러는 분기별로 비교할 때 가장 큰 규모이며, 2011년에는 상반기에 ‘자금 부족 지원금’ 500만 달러가 책정됐으나 하반기에는 아예 배정되지 않았음.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유엔, "상반기 대북예산 1,100만 달러 배정"", 2012.1.11)

나.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 올 국제사회 대북지원 9,700만 달러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2011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약 9,7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함.
- 이는 지난해의 2,400만 달러의 네 배에 달하는 액수임. 지원국 수도 작년 9개국에서 올해는 20개국과 유럽연합(EU)으로 늘었음.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가운데 유엔의 지원이 17.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EU가

14.7%를 차지함. 개별국가 중에는 스웨덴의 지원액이 893만 달러로 가장 많았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올 국제사회 대북지원 9,700만 달러", 2011.12.29)

□ 스위스 정부 올해 520만 달러 대북지원

- 스위스 정부가 올해 대북지원 사업으로 500만 스위스프랑(520여만 달러)을 책정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함. 이는 스위스 정부가 지난해 대북지원에 사용한 600만 스위스프랑에서 100만 스위스프랑이 줄어든 것임.
- 스위스 개발협력청(SDC)의 북한사업 담당관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스위스 정부는 올해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을 중단하지만 새로운 인도적 지원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경사지 관리사업을 하는 황해북도에서 식수위생 사업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함.
- SDC는 올해부터 40여만 달러를 들여 식수위생 사업을 진행하고 유엔기구를 통한 대북 분유지원 사업도 계속할 계획임. SDC가 올해 중단한 대북지원 사업은 평양에 비즈니스스쿨을 개설해 경영관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과 유럽연합(EU)이 시행하게 된 통합해충관리 프로그램 등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스위스 정부 올해 520만 달러 대북지원", 2012.1.7)

□ 스위스 민간단체, 유아식 12만병 北지원

- 스위스의 민간단체 아가페 인터내셔널이 최근 북한의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유아식 12만병을 지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이 단체는 작년 12월 북한 주재 스위스 대사관으로부터 북한에 식량과 유아식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함흥을 포함한 함경남도과 자강도 일대 병원과 고아원에 유아식 12만병과 500컬레의 목이 긴 신발을 지원함.
- 이 단체는 북한이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평양에 대체에너지 연수원 건설을 추진 중이며 조만간 북한의 대체에너지 전문가 5명을 중국에 보내 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건축법 등에 대한 선진 기술을 배우도록 할 계획이라고 방송은 전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스위스 민간단체, 유아식 12만병 北지원", 2012.1.14)

□ 中 홍십자회, 北에 라면 6천 상자 지원

- 중국 홍십자회(한국의 적십자사 해당)가 지난 16일 북한에 30만 위안(약 5,400만원) 어치의 라면을 보냈다고 밝힘. 홍십자회는 당시 라면 6천 상자를 대형트럭 2대에 싣고 압록강 대교를 넘어가 신의주에서 북한 적십자회에 인도했음.
- 이번 홍십자회의 식량 지원은 북한 적십자회의 요청에 따른 것임. 북한 적십자회는 지난해 심각한 홍수피해로 식량 수확에 차질을 빚자 홍십자회에 식량 지원을 요청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中 홍십자회, 北에 라면 6천 상자 지원", 2012.1.20)

□ 北 식량난 해소될 듯..."중국 대규모 식량지원"

- 도쿄신문이 30일 복수의 중국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김 국방위원장의 사망 발표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20일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주재한 최고지도부 회의에서 북한에 식량 50만 톤과 원유가 25만 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박사는 "올해 북한의 식량 수입 예상량을 32만 5천 톤으로 예상하면 식량 부족량은 40여만 톤으로 줄어들며, 중국이나 미국, 유엔 기구로부터의 식량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경우 식량부족은 거의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힘.
- 따라서 중국이 북한에 식량 50만 톤을 지원할 경우 올해 식량난을 무사히 넘기고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해인 올해 강성국가 건설 주요 현안의 하나가 해결되면서 김정은 부위원장의 권력장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北 식량난 해소될 듯..."중국 대규모 식량지원", 2012.1.30)

□ 北, 작년 중국서 곡물 37만 톤 수입

-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이 37만 톤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됨.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한국무역협회 자료 등을 토대로 북한이 지난해 1년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이 37만 6,431톤이라고 밝힘. 이는 2010년 31만 3,695톤보다 20.0% 늘어난 수치임.
- 또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비중은 옥수수가 36.1%로 가장 많고 밀가루 33.2%, 쌀 24.5%, 콩 5.4% 등 순이었음. 2010년 밀가루 36.4%, 옥수수 27.9%, 쌀 26.8%, 콩 8.2%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옥수수 비중이 크게 늘어난 셈임.
- 북한이 작년 중국에서 곡물을 수입하는 데 지출한 금액은 1억 6,619만 달러로 2010년 1억 1,516만 달러보다 44.3% 늘었음. 한편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는 35만 5,036톤(중량 기준)으로 2010년 28만 7,303톤에 비해 23.6% 늘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北, 작년 중국서 곡물 37만 톤 수입", 2012.2.1)

3. 북중 교역 동향

● 북한의 곡물 수입 동향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10~2011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11. 1	-	147	6,304	155	737	288	7,631
2	-	136	146	0	122	90	496
3	-	2,718	543	0	5,392	172	8,825
4	-	3,002	2,069	80	5,585	84	10,820
5	1	8,347	2,778	39	6,852	12	18,029
6	0	2,995	1,702	0	3,392	6,420	14,509
7	0	3,118	2,406	122	1,723	163	7,532
8	0	4,706	5,396	0	7,166	4,521	21,789
9	0	3,726	2,709	0	6,856	1,556	14,847
10	0	15,636	2,469	900	4,375	78	23,458
11	0	697	21,109	119	4,171	19	26,115
12	0	651	7,417	120	3,927	33	12,148
2011.1-12	1	45,879	55,048	1,535	50,298	13,436	166,197
2010. 1	0	806	4,420	46	97	932	6,301
2	332	79	806	88	25	151	1,481
3	17	1,199	2,350	23	2,881	47	6,517
4	4	1,704	1,390	63	4,120	8,024	15,305
5	0	4,205	1,902	93	4,184	2,831	13,215
6	0	2,416	1,154	21	4,718	1,576	9,885
7	0	3,396	2,459	0	1,219	0	7,074
8	0	2,541	2,088	0	953	33	5,615
9	0	1,488	4,922	35	4,103	808	11,423
10	0	1,314	5,270	39	5,715	496	12,834
11	7	2,459	3,656	0	6,343	86	12,551
12	0	1,902	5,002	78	5,836	150	12,968
2010.1-12	360	23,509	35,439	468	40,241	15,134	115,169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10~2011

단위 : 수입량(톤)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11. 1	-	600	10,815	240	1,951	480	14,086
2	-	470	312	0	295	145	1,222
3	-	9,050	1,117	0	13,692	265	24,124
4	-	9,819	3,937	123	14,069	130	28,078
5	1	27,491	5,410	60	17,348	18	50,328
6	0	9,544	3,603	0	8,543	9,645	31,335
7	0	10,012	4,703	195	4,243	231	19,384
8	0	13,286	10,417	0	17,458	6,817	47,978
9	0	10,200	4,981	0	16,785	2,236	34,202
10	0	41,380	4,707	2,500	10,662	120	59,369
11	0	1,946	29,800	184	10,216	30	42,176
12	0	1,953	12,440	0	9,701	55	24,149
2011.1-12	1	135,751	92,242	3,302	124,963	20,172	376,431
2010. 1	0	3,448	8,425	104	304	1,553	13,834
2	955	324	1,908	200	75	255	3,717
3	50	4,951	5,978	52	8,682	75	19,788
4	6	6,569	3,604	154	12,373	13,741	36,447
5	0	16,122	4,490	222	12,591	4,846	38,271
6	0	9,351	2,916	47	14,318	2,706	29,338
7	0	12,203	6,223	0	3,601	0	22,027
8	0	9,047	4,831	0	2,787	58	16,723
9	0	5,764	11,830	60	11,573	1,222	30,449
10	0	4,770	12,933	60	15,815	915	34,493
11	10	8,546	9,231	0	17,374	145	35,306
12	0	6,536	11,578	120	14,818	250	33,301
2010.1-12	1,021	87,631	83,947	1,019	114,311	25,766	313,695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수확이 끝난 10월 이후에도 북한은 많은 양의 곡물을 중국에서 수입하였음.
 - 2011년 10월 북한은 59,000여 톤의 곡물을 수입하였으며 이어 11월에는 42,000여 톤, 12월에는 24,000여 톤의 곡물을 수입하였음.
 - 2011년 4/4분기에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총량은 125,700톤으로 2010년 4/4분기와 비교할 때 20% 이상 더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년의 이전 분기와 비교해서도 수입량이 증가함.
 - 북한이 한 분기에 이처럼 많은 양의 곡물을 수입한 것은 드문 일이며 금년도 가을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확 이후 여전히 많은 양의 곡물을 수입한 것은 특이한 현상임.
- 2011년 한 해 동안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의 총량은 376,431톤으로 2010년에 비해 20% 증가하였음.
 - 2011년 한 해 동안 북한이 중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에 지출한 비용은 1억 6,62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44.3% 증가하였음.
 - 2011년 1~12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곡종별 비중은 옥수수 36.1%, 쌀 24.5%, 밀가루 33.2%, 콩 5.4%임. 2010년의 경우 각각 27.9%, 26.8%, 36.4%, 8.2%였음.
 - 2010년과 비교할 때 2011년에는 옥수수, 쌀, 밀가루의 수입량이 증가하였으나 수입 비중 면에서는 옥수수만 증가하였을 뿐 그 외의 곡물은 비중이 감소함.
- 2011년 1~12월 한 해 동안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전체 곡물의 톤당 평균 도입 가격은 441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평균 수입 가격 367달러에 비해 20% 상승하였음.
 - 2011년 1~12월 한 해 동안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곡종별 톤당 평균 수입 단가는 쌀 597달러, 옥수수 338달러, 밀가루 403달러, 콩 666달러로 전년과 비교할 때 모든 곡종의 가격이 상승하였음.
 - 지난해와 비교할 때 쌀 가격은 41.4% 상승하였으며 옥수수, 밀가루, 콩 가격은 각각 26.0%, 14.3%, 13.4% 상승하였음.

● 북한의 비료 수입 동향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10~2011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11. 1	72	-	0	-	72
2	2,651	-	0	-	2,651
3	1,667	-	0	41	1,708
4	4,772	4	1	2	4,779
5	13,870	0	0	0	13,870
6	16,714	0	0	88	16,802
7	53,557	0	0	1,300	54,857
8	747	0	0	250	997
9	0	0	0	0	0
10	134	0	0	2	136
11	0	0	6	0	6
12	3	0	0	2	5
2011.1-12	94,188	4	7	1,684	95,883
2010. 1	5,492	0	0	0	5,492
2	7,772	0	0	0	7,772
3	23	0	0	4	27
4	0	0	0	7	7
5	5,105	0	0	11	5,116
6	2,122	0	0	5	2,127
7	17,436	0	0	0	17,436
8	2,221	0	0	1	2,222
9	331	0	0	3	334
10	3	0	0	0	3
11	288	0	0	0	288
12	398	0	0	0	398
2010.1-12	41,191	0	0	29	41,224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10~2011

단위 : 수입량(톤)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11.01	151	-	1	-	152
2	15,064	-	-	-	15,064
3	10,151	-	0	99	10,250
4	21,755	40	1	3	21,799
5	67,067	0	0	0	67,067
6	75,844	0	0	220	76,064
7	156,934	0	0	3,463	160,397
8	3,365	0	0	555	3,920
9	0	0	0	0	0
10	300	0	0	5	305
11	0	0	5	0	5
12	11	0	0	3	14
2011.1-12	350,641	40	7	4,348	355,036
2010. 1	16,979	0	0	0	16,979
2	23,529	0	0	0	23,529
3	161	0	0	8	169
4	0	0	0	12	12
5	41,280	0	0	19	41,299
6	17,599	0	0	1	17,600
7	160,553	0	0	9	160,562
8	19,771	0	0	1	19,772
9	3,105	0	0	5	3,110
10	5	0	0	0	5
11	961	0	0	0	961
12	3,305	0	0	0	3,305
2010.1-12	287,246	0	0	53	287,299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2011년 7월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한꺼번에 16만 톤의 화학비료를 수입하더니 그 후 연말까지 비료 수입 실적이 미미함.
- 이와 같은 북한의 비료 수입 행태는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며 이는 중국의 비료 수출관세 부과와 무관치 않음.
- 중국은 비료 수출을 억제할 목적으로 요소 등 일부 비료에 대해서는 중국의 비료 수요가 많은 계절에 높은 세율의 계절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특히 2011년에는 요소의 경우 1~6월, 11~12월에는 특별관세까지 부과하여 75%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며 나머지 계절에는 7%의 기준관세를 부과함. 따라서 북한이 중국에서 요소비료를 수입할 때는 높은 계절관세를 피하기 위하여 7월에 집중적으로 비료를 수입하고 있음. 이와 같은 중국의 관세 정책은 2012년에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 2011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총 355,036톤(중량 기준)의 비료를 수입하였으며 수입액은 9,588만 달러에 달함.
- 2010년 북한은 중국에서 총 287,303톤의 비료를 수입하였으며 수입액은 4,122만 달러였으므로 수입량은 23.6%, 수입액은 132.6% 증가하였음.
- 2011년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는 유안(Ammonium sulphate) 254,892톤, 요소(Urea) 95,749톤 등 주로 가격이 저렴한 유안 위주로 수입하였음. 2010년 북한은 중국에서 유안 242,367톤, 요소 44,814톤을 수입하였음.
- 요소는 유안에 비해 성분함량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같은 양의 비료를 사용하더라도 증수 효과는 훨씬 큼. 비료의 성분 함량을 고려할 경우 2011년 한 해 동안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질소질 비료의 성분량은 97,572 톤으로 지난해의 71,511톤에 비해 36.4% 증가하였음.
- 북한은 한 해 27만 여 톤(성분함량 기준)의 질소질 비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2011년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질소질 비료는 연간 소요량의 36%를 충족하는 양임.
- 2011년 한 해 동안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유안 비료의 평균 수입 단가는 톤당 192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110달러와 비교하면 74.5% 상승하였음.

- 2011년 1~12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요소(Urea)의 평균 수입 단가는 톤당 473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5달러와 비교하면 45.5% 상승하였음.
- 2011년 들어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요소의 도입 단가가 2월에는 600달러를 넘어섰으나 4월부터 6월까지 340달러 대로 떨어졌다가 7월에는 520달러로 다시 상승하는 등 가격 변화가 많았음. 유안의 도입 단가는 6월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임.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5

북한의 농업관련연구



콩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방도 ¹⁾

김 승 택

- 콩은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작물의 하나로서 콩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콩생산을 늘리는 것은 인민생활향상과 강성국가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 최근 여러 곳에 현대적인 기초식품공장과 닭공장, 오리공장, 양어장이 많이 건설 되었음. 이것이 제대로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콩을 많이 생산하여 원료와 먹이를 원만히 보장해야 함. 콩은 씨앗뿐만 아니라 그 부산물인 콩깻묵과 콩짚에도 단백질과 기름, 비타민이 많이 들어 있음.
- 콩은 또한 토지이용률을 높이는데 중요한 작용을 함. 콩은 생물학적질소고정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력이 낮은 밭에 콩을 재배하면 토양 안에 질소성분이 많이 축적되어 지력이 높아짐.
- 콩은 이 외에도 사이그루와 앞뒤그루재배로 토지이용률을 늘릴수 있음. 콩은 생육적산온도가 그리 높지 않고 여우는 시기에 서늘한 기후조건을 좋아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밀, 보리 등 올곡식을 심었던 밭에 뒤그루로 심어도 잘 됨.
- 콩정보당수확고를 높이는 것은 콩생산을 늘리기 위한 기본방법임. 이를 위해서는 좋은 콩종자를 선택하여 콩적지에 심으며 콩재배기술과 방법을 개선해야 함.
 - 최근 우리나라에서 새로 육종되어 생산에 도입되고 있는 다수확품종의 콩은 정보당수확고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품종의 콩보다 단백질과 기름함량이 많음.
 - 적지적작의 원칙에 따라 콩재배적지를 바로 정해야 함. 우선 콩밭을 콩을 심었던 밭에 심지 말며 강냉이, 감자, 밀보리, 담배, 남새를 심었던 밭에 심어야 함.

1)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57권 제4호, 2011.

콩을 해마다 같은 땅에 심으면 땅이 산성화되고 토양 안에 살균이 늘어나서 뿌리썩음병에 걸릴 수 있음.

- 콩재배기술과 방법을 개선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콩농사를 전문화해야 함.
- 콩수확고를 높이자면 유기질비료를 정보당 20톤 정도 주어야 함. 유기질비료는 거름을 생산하는 방법으로도 풀 수 있고 흙보산비료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풀수도 있음. 또한 이와 더불어 농약문제를 제때에 풀고, 관수를 잘해야 함. 또한 이동식탈곡기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보다 능률적인 기계로 완성하며 콩심는 기계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공급해야 함.

사회주의농촌에서 지대들사이의 차이를 해결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²⁾

최 기 호

- 김정일은 산간지대에서 산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며 자체소득을 끊임없이 늘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국가적 지원을 옹계 배합하며 축적과 소비와 상호관계를 옹계 규정하는 것을 사회주의농촌에서 지대들사이의 차이를 해결하는데서 견지해야 할 원칙으로 제시함.
- 산간지대에서 산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경제를 발전시킬 데 대한 원칙은 산간지대의 자연경제적 조건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생산조건이 불리한 산간농촌에서도 별방지대 못지않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농민의 생활을 높일 수 있게 함.
- 산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경제를 발전시킬 데 대한 원칙은 산간지대의 특성에 맞게 농업생산을 다각적으로 조직하며 산을 지방공업의 종합적인 원료기지, 농촌주민들의 종합적인 부업기지로 이용할 것을 요구함.
- 산간지대의 특성에 맞게 농업생산을 다각적으로 조직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알곡과 인민경제적 의의가 크고 지대조건으로 보아 가장 유리한 부문을 주도적 부문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농업생산부문을 옹계 결합시켜 발전시키는 것임.
 - 특히 산을 종합적인 집짐승먹이기지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함. 이는 산에 있는 자연먹이 풀판을 개량하며 새로운 먹이풀을 계획적으로 심고 가꾸어 산을 축산업 발전을 위한 공고하고 안전한 먹이원천지로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산림자원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산을 지방공업의 항구적인 원료산지로 만들어야 함. 산을 이용하여 자연원료기지와 재배원료

2) 경제연구, 누계 제133호, 2011년 제4호.

기지로 이용하게 되면 군안의 농촌주민들의 소비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음.

- 산을 종합적인 부업기지로 이용해야 함. 협동농장에서 자기지대의 자연경제적 특성에 맞게 부업반을 조직하고 운영하며 협동농민이 공동경리의 생산에 참가하고 남은 시간에 부업을 하게 한다면 협동농장의 자체소득과 농민의 개인소득이 빨리 늘어날 수 있음.
- 사회주의농촌에서 지대들 사이의 차이를 해결하는데서 견지해야 할 중요한 원칙은 다음으로 매개 지대에서 자체소득을 끊임없이 늘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국가적 지원을 옹계 배합하는 것임.
 - 산간지대를 비롯한 뒤떨어진 협동농장에서는 공동경리운동을 통하여 수입을 늘리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여기에 부업도 옹계 배합하도록 하여 협동농장의 경제토대와 농민의 생활을 별방지대 수준으로 빨리 높여야 함.
 - 국가적지원과 혜택은 협동농장의 농업생산토대를 강화하고 농민들의 실질수입을 늘릴 수 있게 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농민의 생활수준 상의 균형을 보장하는 중요한 공간임.
 - 사회주의국가는 지대적조건과 협동농장의 경제토대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격, 신용, 재정공간을 산간지대 농장에 유리하게 적용해야 함.
- 사회주의농촌에서 지대들 사이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한 산간지대 협동농장에서 축적에 비한 소비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이 설정해야 함.
 - 산간지대는 별방지대에 비해 축적과 소비의 원천인 협동농장 소득규모와 농호당 분배수준이 떨어짐. 하지만 소비품은 비슷하게 요구됨. 따라서 산간지대 농민의 생활수준을 별방지대 농민에게 접근시키려면 축적에 비한 소비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이 설정하여 분배 몫의 규모를 늘려야 함.

E02-2011-04 KREI 북한농업동향 제13권 제4호

찍 은 날	2012. 1	펴낸날	2012. 1
발 행 인	이 동 필		
펴 낸 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 은 곳	크리커뮤니케이션 (代)2273-1775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